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연구

2021. 11. 17.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협력연구센터

제 출 문

강원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협력연구센터
총괄책임자: 김주원센터장
연 구 원: 김진천 교수
차영환 교수
구지현 교수
박지은 위촉연구원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 7

4. 연구수행 절차 ····· 8

제2장 정책변화와 분석방향 검토 ····· 9

1. 코로나19시대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논의 ····· 10

1.1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문제 인식변화와 특성 ····· 10

1.2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개념 세분화 ····· 12

1.3 전국 소상공인 현황 ····· 17

1.4 강원도 소상공인 현황분석(2017~2019) ····· 18

1.6 코로나19와 소상공인 피해현황 ····· 36

2. 코로나19시대 소상공인 국외 대응사례와 시사점 ····· 37

2.1 프랑스 코로나19 발생 동향 ····· 37

2.2 일본 코로나 19 발생 동향 ····· 40

3. 코로나19시대 소상공인 정책변화와 전망 ····· 46

3.1 코로나 이전 소상공인 정책변화 ····· 46

3.2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정책변화 ····· 48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 55

3.4 소상공인 경영지원제도 ····· 59

3.5 소상공인 컨설팅 ····· 60

3.6 무료법률구조 지원 ····· 62

3.7 정부 민생경제장관회의 (2021.07.29.) ····· 64

제3장 운영 실태조사와 시사점 ····· 65
1.전국대비 강원도 정책운영 현황 ····· 66
1.1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업무 내용 비교 ····· 66
1.2 기타 지원정책 ····· 68
1.3 시도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업무 내용 비교 ····· 69
2. 코로나 전후 소상공인 지원실태조사 비교 분석 ····· 75
2.1 코로나전후 지원정책 재난 비교: 2015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 75
2.2 코로나 19 소상공인 실태조사 ····· 79
2.3 코로나 19 2020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시사점 ····· 101
3. 시사점과 대응방향 ····· 113
3.1 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정책 수립 ····· 113
3.1 코로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본 요소 ····· 115
3.3 임대료 부담완화 정책 추진 필요 ····· 117
3.4 심리회복 지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 필요 ····· 119
3.5 시·도별 특성화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확대 경향 ····· 122
제4장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 125
1. 기본 방향 ····· 126
1.1 정부 소상공인 정책변화와 강원도 지원조직 기능 강화필요 ····· 126
1.2 지원 생태계 조성으로서 정부-지자체협력,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132
1.3 소상공인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자치분권기능강화 ····· 134
1.4 소상공인거버넌스 운영주체, 소상공인지원 중간지원조직 설립필요 ····· 135
2. 코로나19상황 단기 프로그램 운영 ····· 139
2.1 코로나19 심리상담코너 운영 ····· 139
2.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경영상담 통합 TF 운영과 사회혁신타운연계 ····· 140
2.3 폐업 소상공인 전직 훈련 프로그램 운영 ····· 140
3. 지역맞춤형 리빙랩 운영방향 ····· 142
3.1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리빙랩 개념과 적용방향 ····· 142

3.2 강원지역 리빙랩 플랫폼 구축과 사업 추진 흐름도 ····· 143
3.3 강원지역 리빙랩 사업 구상과 사례 ····· 143
3.4 강원지역 리빙랩 효율적 전략 ····· 144
4. 강원도 리빙랩 지역맞춤형 실용화 방안 ····· 144
4.1 리빙랩 모델 도입에 의한 ICT 기반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방향 ····· 144
4.2 소상공인 리빙랩 도입을 위한 ICT 기반 소상공인 ····· 146
제5장 결론: 정책제안 ····· 156
참고문헌 ····· 159

<표 차례>

<표 1-1> 주오 20개국(G20)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출 ····· 3

<표 1-2> 기업별 소상공인 현황 ····· 4

<표 1-3>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 4

<표 1-4>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 4

<표 2-1> 소상공인관련법류 ····· 11

<표 2-2> 용어 정의 및 특징 구분 ····· 12

<표 2-3> 소상공인 여부 ····· 13

<표 2-4>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 14

<표 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15

<표 2-6>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16

<표 2-7> 기업별 소상공인 현황 ····· 17

<표 2-8>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 17

<표 2-9>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 18

<표 2-10> 전국 사업체 비율(전체 사업체) : % ····· 19

<표 2-11> 전국 사업체 종사자 비율(전체 사업체) : % ····· 20

<표 2-12> 전국 사업체 매출 비율(전체 사업체) : % ····· 21

<표 2-13> 지역별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율 : % ····· 22

<표 2-14>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 23

<표 2-10> 전국 사업체 비율(전체 사업체) : % ····· 19

<표 2-11> 전국 사업체 종사자 비율(전체 사업체) : % ····· 20

<표 2-12> 전국 사업체 매출 비율(전체 사업체) : % ····· 21

<표 2-13> 지역별 사업체 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율 : % ····· 22

<표 2-14>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 23

<표 2-15> 지역별 사업체 매출액에서 소상공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24
<표 2-16> 지역별 인구 대비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 % ····· 25
<표 2-17> 지역별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수(전체 사업체) ····· 26
<표 2-18> 지역별 인구 대비 사업체수(소상공인) ····· 27
<표 2-19> 지역별 인구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수(소상공인) ····· 27
<표 2-20> 강원도 업종별 비율(전체 사업체) ····· 28
<표 2-21> 강원도 업종별 비율(소상공인) ····· 29
<표 2-22> 체감과 전망의 차이분석 (대응 t-검정) ····· 32
<표 2-23> 2021년 5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 ····· 33
<표 2-24> 강원지역 시군별 소상공인 및 종사자수 현황(최근5년간) ····· 34
<표 2-25> 강원지역 시군별 사업체/종사자수 현황(2018년 말 기준) ····· 35
<표 2-26>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 ····· 36
<표 2-27-1> 국외 COVID-19 환자발생 수 현황(유럽) ····· 38
<표 2-27-2> 국외 COVID-19 환자발생 수 현황(아시아) ····· 41
<표 2-28>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49
<표 2-2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50
<표 2-30>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51
<표 2-3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51
<표 2-3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2
<표 2-33> 소상공인 회복자금 ····· 53
<표 2-34> 소상공인 손실보상 ····· 54
<표 2-35> 상생소비지원금 ····· 55
<표 2-36>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지원요건 ····· 56
<표 2-3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 57
<표 2-38>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원내용 ····· 60
<표 2-39> 소상공인컨설팅 지원내용 ····· 60
<표 2-40> 무료법률구조 지원내용 ····· 60

<표 2-41> 소상공인 긴급 경영컨설팅 지원내용 ····· 61
<표 2-42> 소상공인 창의 육성 컨설팅 지원내용 ····· 61
<표 2-43> 소상공인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 61
<표 2-44>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주요내용 ····· 62
<표 2-45>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절차 ····· 62
<표 2-46>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내용 ····· 63
<표 3-1> 수도권과 대도시 소상공인 지원내용 ····· 66
<표 3-2> 비수도권과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내용 ····· 67
<표 3-3>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 76
<표 3-4>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 77
<표 3-5>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 78
<표 3-6> 소상공인 2019 조사개요 ····· 79
<표 3-7> 2019설문조사 강원도 성별 구분 ····· 80
<표 3-8> 2019설문조사 강원도 연령대 구분 ····· 80
<표 3-9> 산업분류별 사업종류 ····· 81
<표 3-10> 시도별 창업형태 ····· 81
<표 3-11> 사업장이전 경험여부 ····· 83
<표 3-12> 사업장이전 사유 ····· 85
<표 3-13> 창업횟수별 사업장이전 사유 ····· 88
····· 89
<표 3-14> 시도별 창업준비활동 여부 ····· 90
<표 3-15> 창업준비활동의 중요도 ····· 91
<표 3-16> 창업 시 어려운 점 ····· 92
<표 3-17> 시도별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 ····· 93
<표 3-18> 시도별 사업장 점유형태 ····· 94
<표 3-19>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 N(%) ····· 95
····· 97

<표 3-20> 정부의 지원정책 (다중응답) : N(%) ····· 97
<표 3-21> 창업형태별 정부의 지원정책 ····· 98
<표 3-22> 노후준비 ····· 99
<표 3-23> 조사설계개요 ····· 101
<표 3-24> 코로나19와 일상생활 방해 정도 비교 ····· 103
<표 3-25>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 110
<표 3-26>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우선순위_1+2순위 ····· 112
<표 3-27> 2차 재난지원정책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 ····· 113
<표 3-28> 폐업의도 관련 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116
<표 3-29>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 ····· 120
<표 3-30> 전국 광역시.도 운영 소상공인센터 및 소공인 센터 현황 ····· 124
<표 4-1>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디지털화 위기극복 업무 ····· 130
<표 4-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안정화 시스템 업무 ····· 131
<표 4-3> 소상공인 안정망 확충,취업·재창업 지원 ····· 131
<표 4-4> 소상공인상권회복프로젝트 추진 주요내용 ····· 131
<표 4-5> 거버넌스 개념의 변화 ····· 133
<표 4-6>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요약) ····· 138
<표 4-7>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방안 추진 방향 ····· 150
<표 4-8>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 150
<표 4-9> 소상공인 Digitization 지원사업 예 ····· 154
<표 4-10> 소상공인 Digitalization 지원사업 예 ····· 154
<표 4-11> 소상공인 Digital Transformation 지원사업 예 ····· 15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 7
[그림 1-2] 연구수행 절차 ····· 8
[그림 2-1] 소상공인 현황 ····· 30
[그림 2-2] 체감과 전망 ····· 31
[그림 3-1] 시도별 소상공인 신규창업비율 ····· 82
[그림 3-2] 시도별 소상공인 인수창업비율 ····· 82
[그림 3-3] 시도별 가업승계 비율 ····· 83
[그림 3-4] 시도별 사업장이전 경험 비교 ····· 84
[그림 3-5] 소상공인 사업장이전 사유중 '사업확장'항목 시도별 비교 ····· 85
[그림 3-6] 소상공인 사업장이전 사유중 '임대료 부담'항목 시도별 비교 ····· 86
[그림 3-7] 소상공인 사업장이전 사유중 '사업확장'항목 시도별 비교 ····· 87
[그림 3-8] 창업횟수 ····· 87
[그림 3-9] 창업횟수별 사업장이전 사유 ····· 88
[그림 3-10] 창업 동기 ····· 89
[그림 3-11] 창업준비활동 여부 ····· 90
[그림 3-12] 창업준비활동의 중요도 ····· 91
[그림 3-13] 시도별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 ····· 93
[그림 3-14] 시도별 사업장 점유형태 ····· 95
[그림 3-15]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 N(%) ····· 96
[그림 3-16] 정부지원정책 지원경험 여부 ····· 97
[그림 3-17] 정부의 지원정책 (다중응답) : N(%) ····· 98
[그림 3-18] 창업형태별 정부의 지원정책 ····· 99
[그림 3-19] 노후준비 ····· 100
[그림 3-20] 타 재난 대비 코로나19 일상생활 영향 정도 ····· 101

[그림 3-21] 코로나19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 ····· 102
[그림 3-22]코로나19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 비교 ····· 103
[그림 3-23]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화율 및 감소비율 ····· 104
[그림 3-24]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시간 변화율 및 감소비율 ····· 105
[그림 3-25]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일수 변화율 및 감소비율 ····· 105
[그림 3-26] 코로나19가 사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친 시기_우선 순위 ····· 106
[그림 3-27] 업종별 코로나19가 사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친 시기_종합분석 ····· 107
[그림 3-28]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부담이 큰 사업체 고정비용 ····· 108
[그림 3-29]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경험 ····· 108
[그림 3-30]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 109
[그림 3-31]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우선 순위 ····· 111
[그림 3-32] 2차 재난지원정책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 ····· 114
[그림 3-33] 소상공인재난지원정책 지원금액 ····· 115
[그림 3-34] 소상공인정책 지원금 사용처 및 지원 정책 우선 순위 ····· 117
[그림 4-1]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업무 조직도 ····· 127
[그림 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업무 조직도 ····· 128
[그림 4-3] 사회혁신주도 리빙랩 주요기능과 개념 ····· 142
[그림 4-4] 이해관계자 구성 및 리빙랩 사업추진 흐름도 ····· 143
[그림 4-5]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 도시 리빙랩 사업 ····· 143
[그림 4-6]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적용범위 ····· 149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수행절차

1. 연구의 배경

□ 세계 코로나 대응 경향

- IMF 세계 재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추가로 지원한 재정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대비 3.4%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15번째로 나타남
-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대출이나 유동성공급 등 금융지원은 우리나라는 10.2%(1660억달러. 약196조원)로 21개국 가운데 7번째였음
- 국내 총생산 대비 3.4%는 21개국 가운데 15번째이고 주요국 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1개국(스페인 포함)에서는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음
-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6.7%로 가장 많았고 영국(16.3%, 호주(16.2%), 일본(15.6%), 캐나다(14.6%), 독일(11%) 등이 두 자릿수 재정지출 규모를 보였음
- 그 밖에 프랑스(7.7%), 이탈리아(6.8%), 스페인(4.1%), 유럽연합(3.8%) 등의 순임
- 신흥국인 브라질(8.3%), 중국(4.7%), 남아프리카공화국(5.5%), 아르헨티나(3.8%) 등도 한국보다 재정지출이 많았음
- 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이나 유동성공급 등 금융지원은 한국이 10.2%(1660억달러. 약196조원)으로 21개국 나라 가운데 7번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재정지원보다 가계나 소상공인, 기업 등 민간이 부담을 지는 금융지원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해 전면봉쇄가 없어 재정지출을 줄인 측면과 재정 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측면 양쪽을 다 보여주고 있음
- 올해 경제회복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표1-1> 주요 20개국(G20)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출 (단위:%,달러)[1)]

나라	GDP대비 재정 지원 비율(금액)	GDP대비 금융 지원 비율(금액)
호주	16.2(2180억)	1.8(240억)
캐나다	14.6(2400억)	4.0(660억)
유럽연합	3.8(4870억)	6.8(8710억)
프랑스	7.7(1980억)	15.8(4050억)
독일	11.0(4180억)	27.8(1조540억)
이탈리아	6.8(1270억)	35.5(6630억)
일본	15.6(7820억)	28.4(1조4280억)
한국	3.4(560억)	10.2(1660억)
스페인	4.1(520억)	14.4(1840억)
영국	16.3(4410억)	16.1(4370억)
미국	16.7(3조5030억)	2.4(5100억)
아르헨티나	3.8(150억)	1.9(80억)
브라질	8.3(1180억)	6.2(880억)
중국	4.7(7110억)	1.3(1930억)
인도	3.1(810억)	5.1(1340억)
인도네시아	2.7(290억)	0.9(90억)
멕시코	0.7(70억)	1.3(140억)
러시아	2.9(420억)	1.5(220억)
사우디아라비아	2.2(150억)	0.8(60억)
남아프리카공화국	5.5(160억)	4.3(120억)
터키	1.1(80억)	9.0(640억)

*스페인은 G20 영구 초청국

□ 코로나 대응 우리의 현실과 특성

❍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

-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체 수의 84.4%(329만 개), 종사자 수의 36.9%(662만 명)가 소상공인임
-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는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2)]

1) 국제통화기금'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IMF Fiscal Monitor updates)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기준 소상공인 현황_사업체 기준

<표1-2> 기업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구 분	전체	소상공인	비중	소기업	비중	중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	3,874,410	3,285,574	84.8	3,748,004	96.7	121,636	3.1	3,869,640	99.9
종사자	17,934,571	6,617,527	36.9	11,797,105	65.8	4,276,745	23.8	16,073,850	89.6
매출액	50,006,344	6,805,236	13.6	12,484,496	25.0	14,071,325	28.1	26,555,821	53.1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재편 · 가공

<표1-3>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중
전(全) 산업	3,285,574	100.0	6,617,527	100.0	6,805,236	100.0
도.소매업	879,108	26.8	1,616,919	24.4	2,847,246	41.8
숙박.음식점업	665,785	20.3	1,407,896	21.3	687,869	10.1
제조업	366,026	11.1	1,186,840	17.9	1,583,837	23.3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96,057	9.0	414,037	6.3	128,279	1.9
기타	1,078,598	32.8	1,991,835	30.1	1,558,005	22.9

- 사업체 수 비중은 도소매업(26.8%)과 숙박·음식점업(20.3%), 개인서비스업(9.0%) 등이 약 56.1%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 밀접형 업종의 비중이 높음

<표1-4>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3,285,574	637,437	232,568	173,858	163,210	97,138	94,377	69,878	13,376
비중	100.0	19.4	7.1	5.3	5.0	3.0	2.9	2.1	0.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	723,504	116,373	105,043	137,804	119,517	125,768	191,878	231,336	52,509
비중	22.0	3.5	3.2	4.2	3.6	3.8	5.8	7.0	1.6

- 강원권에는 116,373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전국 대비 3.5% 비중임

❍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법이 2021년 초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공전하다가 7월 1일(2021) 코로나 발생 1년 반 만에 통과되었음

- 논란이 되었던 소급적용은 제외되었지만, 행정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손실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음
- 지원 방안으로 논의되는 두 가지 방식 중 손실보상 등 **자금지원방식**은 법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영지원방식**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한 현장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함

□ 연구의 목적

❍ **코로나 상황 강원도 소상공인 정부 정책변화와 대응책 마련**: 강원도의 전통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2000년대 초반까지 유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국내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더 큰 위기에 봉착하였음

- 더구나 이들 영세 상권은 시설 노후화와 유통 현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까지 상실한 상황임
- 이번 연구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강원도 소상공인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코로나 전후 소상공인 전국실태조사결과와 강원도 시사점 도출**:
2020년 2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소상공인의 성장, 보호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강원도가 과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한계와 틀을 벗어나 미래의 소상공인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함

❍ **코로나 후 강원도 소상공인 정책 방향과 지역 특성별 대응책**:
강원도는 대도시가 없고 중소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폐광지역, 접경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이 상존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더 효율적이고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소상공인 정책대응 Living Lab 시스템 구축**:
지역 소상공인 현장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지역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문제 해결형 리빙랩을 통한 지원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2. 연구 내용

□ 이 연구에서는『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연구』를 수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제를 수행함

<주요연구내용>

❍ 정책변화와 분석 방향 검토
- 코로나 시대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논의
-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국외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부 정책변화와 전망

❍ 운영 실태조사와 시사점
- 전국대비 강원도 정책운영 현황
- 코로나 전후 소상공인 지원실태조사 비교분석
- 시사점과 대응방향

❍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 기본 방향
- 코로나19 상황 단기 프로그램 운영
- 지역맞춤형 리빙랩 운영방안
- 강원도 리빙랩 지역맞춤형 실용화 방안

❍ 결론 및 정책제고
- 법제도 정책방향 전환에 따른 강원도 대응책

3. 연구 방법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연구」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림 I-1]과 같이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소상공인실태조사 코로나 전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등의 간접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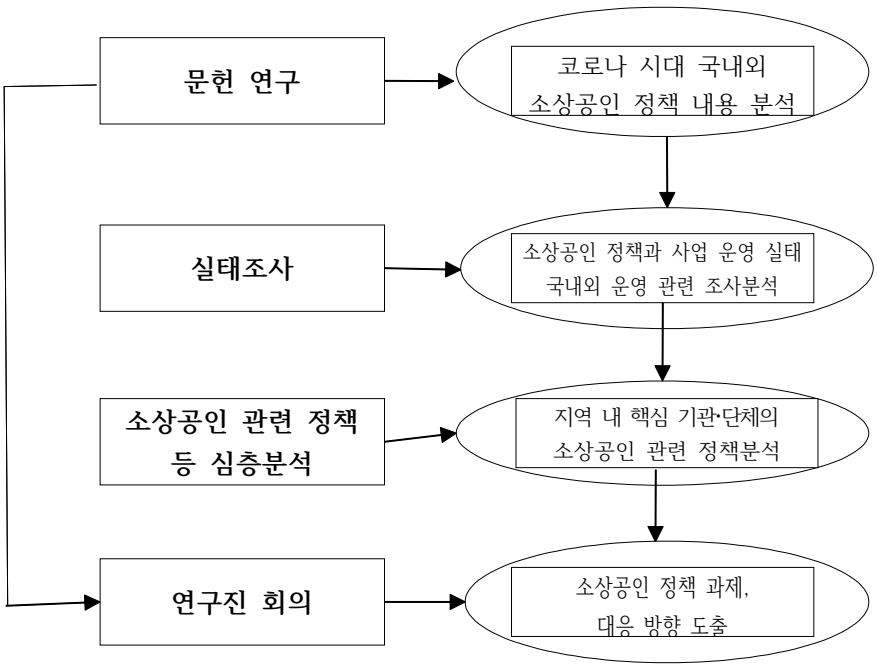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 문헌 연구는 소상공인 정책의 필요성 및 개념, 국내외 사례 소상공인 추진실적, 국내 소상공인 운영사례를 분석

○ 코로나19 대응 관련 강원도와 지리적으로 사정이 비슷한 유럽(프랑스 등)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소상공인 정책과 그 변화 동향에 관하여 문헌 연구를 시행

○ 코로나19 전후 도내 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정부발표자료토대로 작성

4. 연구수행 절차

○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 절차는 [그림 I-2]와 같음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연구」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연구 방향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보고서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각 내용에 따른 연구 일정과 연구 방법을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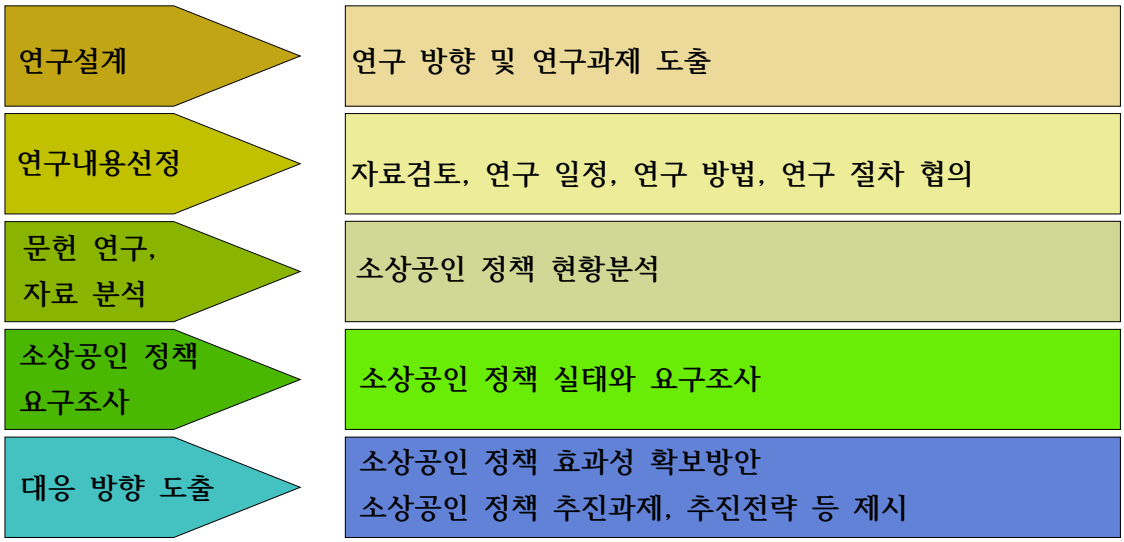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수행 절차

○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기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전후로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른 광역시도와 강원도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강원도에 적합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정책변화와 분석방향 검토

1. 코로나19시대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논의
2. 코로나19시대 소상공인 국외 대응사례와 시사점
3. 코로나19정부 정책변화와 전망

1. 코로나19시대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논의

1.1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문제 인식변화와 특성

□ 소상공인 정책 인식변화와 법제도화 과정

- ❍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구체화된 헌법 제 12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정책을 규율하고 있음
- ❍ 국가는 우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함
- ❍ 뿐만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그러나 중소기업은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있음
- ❍ 또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에만 의존하다보니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곧 경제적 약자이며 경제적 약자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다루어져왔음
- ❍ IMF외환위기 이후 실업증가, 비정규직의 양산,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대폭증가하여 중소기업법을 모법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의 제개정이 있었음
-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소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신설(4.10), 2000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2.26), 2015년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28)으로 이어졌음
- ❍ 이외에도 현행 소상공인과 관련한 개별법률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도시형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협동조합기본법,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음
- ❍ 실제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은 기본법제정을 추진해왔으나 2019년에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근본적인 소상공인대책이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피

해보상 등이 논란이 되면서 더 강화되고 있음

<표2-1> 소상공인관련법률

성격	법률	제정년도	주무부처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1966.12.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2019.11.19.	중소벤처기업부
개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8.	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1.12.29.	법무부
	유통산업발전법	1997.4.10.	산업통산자원부
	대숭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2006.3.3.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9.12.30.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4.5.28.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기본법	2012.1.26.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18.6.12.	중소벤처기업부

□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변화와 특징

❍ 위 표에서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적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 이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2019.11.19.일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2020.1.9.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 이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소상공

인보호 및 육성을 위한 추진기관의 조직 및 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기금, 소상공인연합회, 그 밖의 사항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은 애초에 관련 법안들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의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1.2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 개념 세분화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함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함

○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로 정의함

<표2-2> 용어 정의 및 특징 구분[3)]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정의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임원미포함)	근로자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사업자 등록자 중 개인사업자
법적 근거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없음	부가가치세법
통계 산출	통계청 경제총조사(5년) 및 전국사업체 조사(연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월별)	국세청, 국세 통계 연보(연간)
조사 방법	조사통계 -전체 사업자 중 분류	조사통계 -표본추출(3만 명 내외)	행정통계(신고자료)
특징	-개인사업체+법인사업체 -상시 근로자 및 매출액으로 분류 -비영리 제외,복수사업자 존재 -고용(종사자) 파악	-사업자등록증 보유 (법인 제외) 또는 무등록사업자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로 구분 -월별 및 농어민 포함으로 계절성 존재	-법인 제외 -복수사업자 존재 -임금근로자의 주택임대 사업자 포함

○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5인 미만, 제조, 광업 등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은 비록 그 규모가 작지만,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김영순, 양인선, 이진우, 이연동. 2020. "소상공인 임대료 실태조사 및 부담 완화 대책". 「중점정책연구 현안 연구」. 1-59.

❍ 소상공인 대상 정책은 1999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음

❍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정책, 고용·사회안전망 정책, 소비자정책, 지역경제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일원으로서 소상공인의 정책지원은 순조로운 창업, 성장, 도산·폐업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됨

❍ 고용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비 증가·사회불안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의 국가부담 경감을 의미함

❍ 소비자 측면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의미함

<표2-3>소상공인 여부[4)]

소상공인 여부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업종이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인 경우 10인 미만 가능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미만[5)]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6)] - 영업 중(휴 폐업 중 제외)

4) <표2-2> 용어의 정의 및 특정 구분 참조, 소상공인 여부 참조

<표2-4>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표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표2-6>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2) <표2-4>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참조
3) <표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1.3 전국 소상공인 현황

□ 전국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84.4%(329만 개)이고, 소상공인 종사자 수의 36.9%(662만 명)로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음[7)]

<표2-7> 기업별 소상공인 현황[8)]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전체	소상공인	비중	소기업	비중	중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	3,874,410	3,285,574	84.8	3,748,004	96.7	121,636	3.1	3,869,640	99.9
종사자	17,934,571	6,617,527	36.9	11,797,105	65.8	4,276,745	23.8	16,073,850	89.6
매출액	50,006,344	6,805,236	13.6	12,484,496	25.0	14,071,325	28.1	26,555,821	53.1

<표2-8>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중
전(全) 산업	3,285,574	100.0	6,617,527	100.0	6,805,236	100.0
도,소매업	879,108	26.8	1,616,919	24.4	2,847,246	41.8
숙박,음식점업	665,785	20.3	1,407,896	21.3	687,896	10.1
제조업	366,026	11.1	1,186,840	17.9	1,583,837	23.3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96,057	9.0	414,037	6.3	128,279	1.9
기타	1,078,598	32.8	1,991,835	30.1	1,558,005	22.9

○ (업종별) 사업체 수 비중은 도소매업과 26.8%)과 숙박·음식점업(20.3%), 개인서비스업(9.0%) 등 약 56.1%를 차지하는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음

---

7) <표1><표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기준 소상공인 현황_기업별 기준

8)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재편·가공

<표2-9>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3,285,574	637,437	232,568	173,858	163,210	97,138	94,377	69,878	13,376
비중	100.0	19.4	7.1	5.3	5.0	3.0	2.9	2.1	0.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체	723,504	116,373	105,043	137,848	119,517	125,768	191,878	231,336	52,509
비중	22.0	3.5	3.2	4.2	3.6	3.8	5.8	7.0	1.6

❍ (지역별) 수도권(서울 19.4%, 경기 22.0% 인천 5.0%)에 46.4%가 소재

○ 강원지역은 사업체수 105,043개로 전국대비 약 3.5%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1.4 강원도 소상공인 현황분석(2017~2019)[9)]

○ 강원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으며 소상공인 수도 전국(3,285,574명)대비 강원 116,373개로 약 3.5%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 춘천, 강릉 및 홍천군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업태별로는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순으로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대부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열악하고 연령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지원기관으로부터 이격되어 있으므로 정부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9)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2017~2019년도 자료를 강원도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임

□ 전국 비율(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표 2-10> 전국 사업체 비율(전체 사업체) : %

지역	사업체 수(%)		
	2017	2018	2019
전체	100%(4,019,872)	100%(4,103,172)	100%(4,176,549)
서울특별시	20.47	20.07	19.72
부산광역시	7.13	7.04	6.95
대구광역시	5.21	5.13	5.05
인천광역시	4.89	4.94	4.94
광주광역시	2.95	2.92	2.96
대전광역시	2.87	2.87	2.86
울산광역시	2.09	2.09	2.08
세종특별자치시	0.34	0.39	0.43
경기도	21.85	22.15	22.37
강원도	**3.48**	**3.50**	**3.52**
충청북도	3.14	3.17	3.20
충청남도	4.14	4.20	4.23
전라북도	3.69	3.68	3.69
전라남도	3.81	3.82	3.88
경상북도	5.62	5.65	5.67
경상남도	6.83	6.87	6.87
제주특별자치도	1.49	1.53	1.58

❍ 강원도의 사업체는 전국 사업체 중에서 3.52%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대비 낮은 비율임

<표 2-11> 전국 사업체 종사자 비율(전체 사업체) : %

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2017	2018	2019
전체	100%(21,626,904)	100%(22,234,776)	100%(22,723,272)
서울특별시	23.67	23.44	23.00
부산광역시	6.59	6.49	6.45
대구광역시	4.36	4.35	4.26
인천광역시	4.78	4.81	4.81
광주광역시	2.78	2.77	2.78
대전광역시	2.80	2.78	2.79
울산광역시	2.41	2.37	2.35
세종특별자치시	0.46	0.52	0.55
경기도	22.91	23.27	23.34
강원도	**2.85**	**2.88**	**2.95**
충청북도	3.15	3.21	3.26
충청남도	4.15	4.17	4.29
전라북도	3.15	3.12	3.17
전라남도	3.27	3.30	3.41
경상북도	5.07	5.03	5.06
경상남도	6.38	6.24	6.28
제주특별자치도	1.21	1.25	1.26

❍ 강원도 사업체의 종업원은 전국 종업원 중에서 2.95%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대비 낮은 비율임

<표 2-12> 전국 사업체 매출 비율(전체 사업체) : %

지역	사업체 매출액(%)		
	2017	2018	2019
전체	100%(5,836,148,173)	100%(6,033,068,539)	100%(6,195,097,953)
서울특별시	29.02	28.70	29.93
부산광역시	5.08	4.86	4.84
대구광역시	3.04	3.04	2.99
인천광역시	4.54	4.55	4.39
광주광역시	2.29	2.27	2.29
대전광역시	2.14	2.09	2.10
울산광역시	4.27	4.37	4.31
세종특별자치시	0.50	0.55	0.57
경기도	21.62	21.84	21.25
강원도	**1.71**	**1.74**	**1.75**
충청북도	3.04	3.26	3.20
충청남도	5.32	5.40	5.28
전라북도	2.35	2.32	2.31
전라남도	3.66	3.85	3.74
경상북도	5.30	5.19	5.09
경상남도	5.35	5.19	5.18
제주특별자치도	0.79	0.77	0.78

❍ 강원도 사업체의 매출액은 비중이 가장 낮은 순으로 제주, 세종 강원 순이며 전국 매출액 중에서 1.75%를 차지하고 있음

□ 강원도 소상공인 비율(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표 2-13> 지역별 사업체 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율 : %

지역		사업체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		
		2017	2018	2019
전체	사업체수(%)	79.31	78.87	78.67
서울특별시	100%	78.15	77.32	77.39
부산광역시	100%	80.81	80.39	80.10
대구광역시	100%	82.99	82.52	82.42
인천광역시	100%	79.78	79.43	79.13
광주광역시	100%	79.35	78.74	78.52
대전광역시	100%	79.70	79.10	78.89
울산광역시	100%	80.63	80.54	80.27
세종특별자치시	100%	74.07	73.21	74.14
경기도	100%	77.92	77.33	77.43
강원도	**100%**	**80.28**	**80.03**	**79.27**
충청북도	100%	79.41	79.25	78.67
충청남도	100%	78.65	78.60	78.01
전라북도	100%	78.50	78.34	77.57
전라남도	100%	78.81	78.60	77.69
경상북도	100%	81.33	81.34	81.03
경상남도	100%	81.11	81.17	80.67
제주특별자치도	100%	78.99	79.30	79.44

❍ 강원도 지역의 사업체 수 기준으로 그 비중은 2017(80.28%)년부터 2019년(79.27%)도 약간씩 감소했음

<표 2-14>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지역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수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수(%)		
		2017	2018	2019
전체	100%	29.43	28.89	29.12
서울특별시	100%	24.35	23.31	23.56
부산광역시	100%	32.07	31.76	31.73
대구광역시	100%	35.34	34.35	35.01
인천광역시	100%	30.48	29.95	30.19
광주광역시	100%	30.88	30.02	30.52
대전광역시	100%	28.97	28.38	28.59
울산광역시	100%	24.91	24.92	25.32
세종특별자치시	100%	21.06	20.53	21.73
경기도	100%	30.09	29.43	29.71
강원도	**100%**	**34.56**	**34.15**	**33.70**
충청북도	100%	29.14	28.57	28.58
충청남도	100%	28.69	28.57	28.63
전라북도	100%	32.21	32.13	31.98
전라남도	100%	33.07	32.64	32.00
경상북도	100%	32.47	32.74	32.97
경상남도	100%	31.97	32.35	32.56
제주특별자치도	100%	34.74	34.40	35.75

❍ 강원도 지역의 사업체 종사자 중 33.70%(2019년 기준)는 소상공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그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임

<표 2-15> 지역별 사업체 매출액에서 소상공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지역	사업체 매출액(%)	사업체 매출액 대비 소상공 매출액(%)		
		2017	2018	2019
전체	100%	0.12	0.11	0.11
서울특별시	100%	0.08	0.08	0.07
부산광역시	100%	0.15	0.16	0.15
대구광역시	100%	0.19	0.18	0.18
인천광역시	100%	0.13	0.13	0.13
광주광역시	100%	0.14	0.14	0.14
대전광역시	100%	0.14	0.14	0.13
울산광역시	100%	0.05	0.05	0.05
세종특별자치시	100%	0.07	0.07	0.07
경기도	100%	0.14	0.13	0.14
강원도	**100%**	**0.17**	**0.16**	**0.16**
충청북도	100%	0.11	0.11	0.11
충청남도	100%	0.09	0.08	0.08
전라북도	100%	0.15	0.15	0.15
전라남도	100%	0.10	0.09	0.10
경상북도	100%	0.12	0.12	0.12
경상남도	100%	0.14	0.14	0.13
제주특별자치도	100%	0.17	0.16	0.16

❍ 강원도 지역의 사업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0.16%로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임 (2019년기준)

□ 인구 대비 강원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사업체)

<표 2-16> 지역별 인구 대비 사업체 수(전체 사업체) : %

지역	인구(%)	인구 대비 사업체 수(%)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100%	8.45	8.51	8.54
부산광역시	100%	8.39	8.51	8.61
대구광역시	100%	8.54	8.61	8.68
인천광역시	100%	6.72	6.90	6.99
광주광역시	100%	7.91	8.03	8.30
대전광역시	100%	7.56	7.78	7.98
울산광역시	100%	7.25	7.45	7.61
세종특별자치시	100%	4.94	5.08	5.34
경기도	100%	6.83	6.94	7.02
강원도	100%	9.21	9.44	9.66
충청북도	100%	7.84	8.02	8.19
충청남도	100%	7.69	7.90	8.07
전라북도	100%	8.12	8.31	8.52
전라남도	100%	8.55	8.76	9.06
경상북도	100%	8.45	8.68	8.88
경상남도	100%	8.21	8.41	8.57
제주특별자치도	100%	9.36	9.55	9.94

❍ 지역별로 인구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가 9.7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이나 소상공인 수는 줄어든 데 비해 사업체 수의 인구 대비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7> 지역별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전체 사업체)

지역	인구(%)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100%	52.56	53.87	54.22
부산광역시	100%	41.68	42.47	43.45
대구광역시	100%	38.45	39.57	39.83
인천광역시	100%	35.35	36.46	37.01
광주광역시	100%	40.17	41.36	42.42
대전광역시	100%	39.70	40.91	42.26
울산광역시	100%	45.07	45.83	46.62
세종특별자치시	100%	36.09	37.00	37.09
경기도	100%	38.55	39.49	39.87
강원도	**100%**	**40.51**	**42.05**	**44.09**
충청북도	100%	42.33	44.01	45.51
충청남도	100%	41.52	42.55	44.50
전라북도	100%	37.33	38.21	39.84
전라남도	100%	39.50	40.99	43.32
경상북도	100%	40.95	41.82	43.10
경상남도	100%	41.21	41.44	42.65
제주특별자치도	100%	40.94	42.07	43.05

❍ 지역별로 인구 대비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44.09%을 차지하며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인구 대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소상공인)

<표 2-18> 지역별 인구 대비 사업체 수(소상공인)

지역	인구(%)	인구 대비 소상공 사업체 수(%)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100%	6.60	6.58	6.61
부산광역시	100%	6.78	6.84	6.90
대구광역시	100%	7.08	7.11	7.15
인천광역시	100%	5.36	5.48	5.53
광주광역시	100%	6.28	6.32	6.52
대전광역시	100%	6.03	6.15	6.30
울산광역시	100%	5.84	6.00	6.11
세종특별자치시	100%	3.66	3.72	3.96
경기도	100%	5.32	5.36	5.44
강원도	**100%**	**7.39**	**7.55**	**7.66**
충청북도	100%	6.22	6.35	6.45
충청남도	100%	6.05	6.21	6.30
전라북도	100%	6.37	6.51	6.61
전라남도	100%	6.74	6.89	7.04
경상북도	100%	6.87	7.06	7.19
경상남도	100%	6.65	6.82	6.91
제주특별자치도	100%	7.39	7.57	7.90

❍ 지역별로 인구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가 7.6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17년기준)

<표 2-19> 지역별 인구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수(소상공인)

지역	인구(%)	인구 대비 소상공 종사자 수(%)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100%	12.80	12.56	12.78
부산광역시	100%	13.37	13.49	13.79
대구광역시	100%	13.59	13.59	13.95
인천광역시	100%	10.78	10.92	11.17
광주광역시	100%	12.40	12.42	12.95
대전광역시	100%	11.50	11.61	12.08
울산광역시	100%	11.22	11.42	11.81
세종특별자치시	100%	7.60	7.60	8.06
경기도	100%	11.60	11.62	11.84
강원도	**100%**	**14.00**	**14.36**	**14.86**
충청북도	100%	12.34	12.57	13.01
충청남도	100%	11.91	12.16	12.74
전라북도	100%	12.02	12.27	12.74
전라남도	100%	13.06	13.38	13.86
경상북도	100%	13.30	13.69	14.21
경상남도	100%	13.18	13.40	13.88
제주특별자치도	100%	14.22	14.47	15.39

❍ 지역별로 인구를 고려하여 소상공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가 14.8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2017년기준).

□ 강원도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

1) 강원도의 업종별 비율

<표 2-20> 강원도 업종별 비율(전체 사업체)

대분류 / 연도	2017	2018	2019
소계	100%(140,058)	100%(143,475)	100%(146,815)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22	0.24	0.25
B. 광업(05~08)	0.12	0.12	0.12
C. 제조업(10~34)	5.96	5.98	6.0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0.09	0.11	0.16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6~39)	0.33	0.34	0.35
F. 건설업(41~42)	4.74	4.94	5.12
G. 도매 및 소매업(45~47)	23.63	23.24	22.96
H. 운수 및 창고업(49~52)	7.58	7.45	7.49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7.22	27.31	27.12
J. 정보통신업(58~63)	0.56	0.55	0.55
K. 금융 및 보험업(64~66)	1.14	1.11	1.06
L. 부동산업(68)	2.45	2.53	2.5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85	1.92	2.02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4~76)	1.82	1.88	1.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57	0.56	0.54
P. 교육 서비스업(85)	4.26	4.26	4.2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3.26	3.21	3.2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3.27	3.27	3.28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5~96)	10.93	10.98	10.97

❍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7.12%, 도매 및 소매업 22.96%로 나타났으며(2019년기준),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3년간 지속적으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표 2-21> 강원도 업종별 비율(소상공인)

대분류 / 연도	2017	2018	2019
소계	100%(112,441)	100%(114,821)	100%(116,373)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05	0.08	0.09
B. 광업(05~08)	0.08	0.09	0.08
C. 제조업(10~34)	6.29	6.33	6.4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0.04	0.06	0.1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6~39)	0.17	0.16	0.17
F. 건설업(41~42)	4.55	4.71	4.93
G. 도매 및 소매업(45~47)	26.27	25.79	25.42
H. 운수 및 창고업(49~52)	8.96	8.86	8.98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1.07	31.04	30.72
J. 정보통신업(58~63)	0.30	0.29	0.32
K. 금융 및 보험업(64~66)	0.19	0.20	0.20
L. 부동산업(68)	2.14	2.26	2.2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51	1.57	1.65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4~76)	1.60	1.69	1.75
P. 교육 서비스업(85)	3.59	3.59	3.5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0.99	0.94	0.8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3.29	3.27	3.22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5~96)	8.92	9.07	9.15

❍ 소상공 경우,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30.72%, 도매 및 소매업 25.42%로 나타났으며(2019년기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년간 지속해서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강원도 소상공인 현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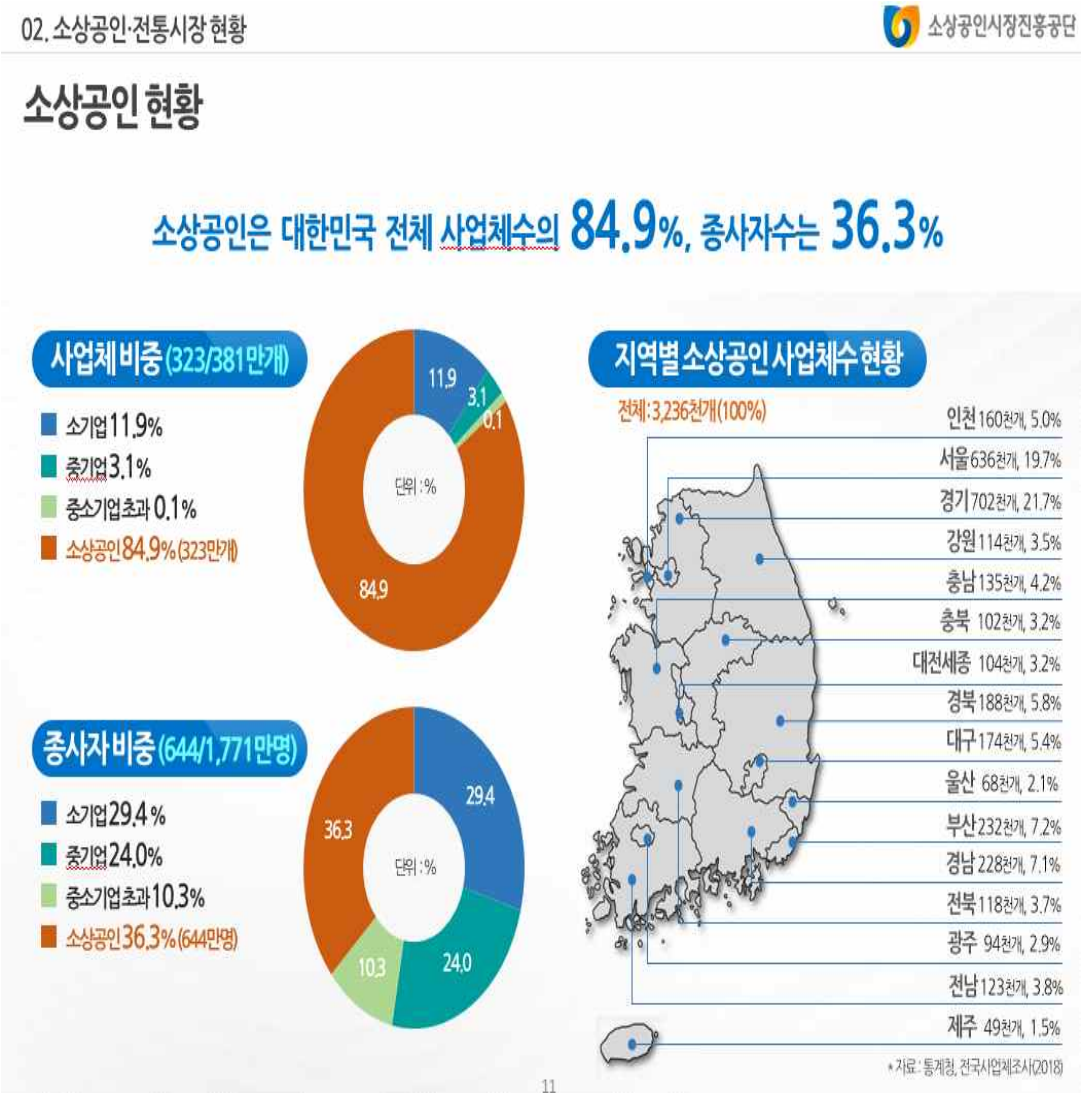

[그림 2-1] 소상공인 현황

❍ ‘18년 말 기준 통계적으로 전국의 전체 사업체 수는 약 381만개(종사자 수 1,771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전국의 소상공인(사업자)은 약 323만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644만 명으로 약 36.3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현황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국 전체 사업체 수 약 381만개 중 소기업이 11.9%, 중기업이 3.1%, 중소기업 초과(대기업)가 0.1%를 점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상공인 수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84.9% 약 323만개를 보여주고 있음

❍ 종사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 약 1,771만명 중 소기업 29.4%, 중기업 24.0%, 중소 기업초과가 10.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가 나머지 36.3%인 644 만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702천개로 21,7%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전체 323,6천개 중 636천개로 19.7%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강원도의 경기동향 : 체감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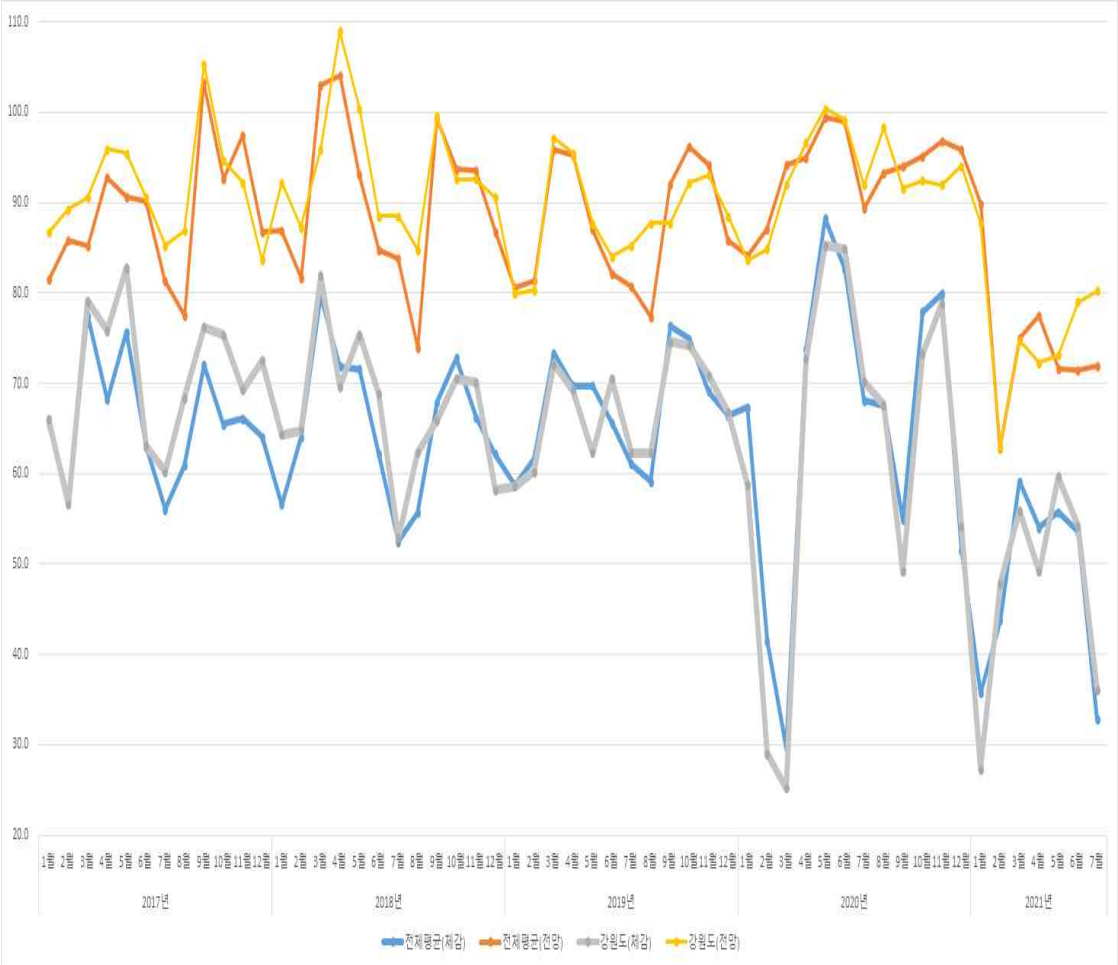

[그림2-2] 체감과 전망

<표 2-22> 체감과 전망의 차이분석 (대응 t-검정)

		Mean	N	S.d.	Mean	S.d.	t	p-value
전체평균(체감)	전체평균(체감)	63.63	55	11.932	-24.413	10.239	-17.682	.000
-전체평균(전망)	전체평균(전망)	88.04	55	9.059				
강원도(체감)	강원도(체감)	64.26	55	13.322	-25.280	11.628	-16.124	.000
- 강원도(전망)	강원도(전망)	89.54	55	8.176				
전체평균(체감)	전체평균(체감)	63.63	55	11.932	-.629	4.623	-1.009	.317
- 강원도(체감)	강원도(체감)	64.26	55	13.322				
전체평균(전망)	전체평균(전망)	88.04	55	9.059	-1.496	4.104	-2.704	.009
- 강원도(전망)	강원도(전망)	89.54	55	8.176				

❍ 전체평균 체감과 전체평균 전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전망보다는 체감이 낮음

❍ 강원도에서의 체감과 전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전망보다는 체감이 낮음

❍ 전체평균 체감과 강원도에서의 체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p>0.05$)

❍ 전체평균 전망과 강원도에서의 전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전체평균 전망보다는 강원도에서의 전망이 낮음

□ 소상공인 [10]BIS(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

❍ BIS(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란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표 2-23> 2021년 5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11]

*최근 1년간 소상공인 부문별 BSI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체감	88.3	82.6	68.1	67.6	54.9	78.0	79.9	51.6	35.8	43.8	59.2	54.0	55.8	-
전망	99.5	98.9	89.4	93.2	94.1	95.2	96.8	95.9	89.8	62.8	75.0	77.5	71.6	71.5

(체감) 5월 체감 BSI는 55.8로, 전월 대비 1.8P 상승

(전망) 6월 전망 BSI는 71.5로, 전월 대비 0.1P 하락

□ 강원도 소상공인 시군별 현황

❍ 강원도의 경우는 114천개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수 3,236천개 대비 약 114천개로 3,5%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은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경제규모의 경우도 대략 약 3%대 중반쯤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수도 전국대비 약 3.5%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북, 충남, 경남, 전남, 전북지역보다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북 대전 세종시, 제주지역보다 약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10) 기업가들로부터 향후 경기 동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주로 단기적인 경기예측 지표로 사용된다.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정보*

<표 2-24> 강원지역 시군별 소상공인 및 종사자수 현황(최근 5년간)[12]

시도	시군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강원	춘천시	16,430	30,301	16,737	31,611	16,724	31,639	17,012	32,092	17,868	34,040
	원주시	21,195	40,484	21,773	41,798	21,851	41,006	22,447	42,033	23,859	45,612
	강릉시	16,311	31,287	16,275	31,070	15,920	29,947	16,320	30,894	16,970	32,770
	동해시	6,763	12,416	6,775	12,566	6,368	11,742	6,475	11,926	6,604	12,306
	태백시	3,489	6,296	3,485	6,539	3,454	6,327	3,501	6,486	3,586	6,886
	속초시	6,579	12,130	6,792	12,700	6,777	12,632	6,985	13,092	7,296	13,769
	삼척시	4,868	9,165	5,038	10,017	5,097	9,461	5,257	9,811	5,352	10,048
	홍천군	4,564	8,200	4,839	8,705	4,921	8,911	4,949	8,890	5,053	9,286
	횡성군	2,638	5,034	2,967	5,612	2,979	5,693	2,988	5,821	3,138	6,124
	영월군	2,760	5,139	2,864	5,296	2,806	5,303	2,843	5,407	2,970	5,631
	평창군	3,578	6,848	3,752	7,132	3,639	6,746	3,521	6,588	3,781	7,197
	정선군	2,934	5,210	3,133	5,864	3,087	5,493	3,130	5,473	3,203	5,505
	철원군	2,908	5,534	2,985	5,539	2,989	5,431	3,000	5,489	3,132	5,753
	화천군	1,468	2,790	1,573	3,048	1,620	3,054	1,663	3,042	1,780	3,445
	양구군	1,344	2,619	1,419	2,944	1,477	2,883	1,475	2,907	1,607	3,401
	인제군	2,437	4,601	2,663	4,992	2,722	4,983	2,774	2,051	2,804	5,110
	고성군	2,135	4,241	2,224	4,421	2,239	4,381	2,325	4,620	2,415	5,054
	양양군	2,983	5,740	3,021	5,804	3,049	5,618	3,130	5,646	3,403	6,350
합계		105,384	198,035	108,315	205,658	107,719	201,250	109,795	202,268	114,821	218,287

❍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소상공인 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 및 강원지역 도시별 소상공인 및 종사자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3년 105,384개에서'18년 114,821개로 약 9,437개 증가, '13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매년 1,500~2,00여개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됨

❍ 종사자의 경우도 '13년 198,035명에서 '18년 218,287명으로 증가, 매년 약 3,375명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됨

❍ 강원지역 도시별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순으로 사업자수 및 종사자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상공인 및 종사자수가 증가현상을 살펴보면, 결국 사업장의 고용시장 불안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실업자들이 생계형 창업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됨

12) 중기부통계시스템 '2018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표 2-25> 강원지역 시·군별 사업체/종사자수 현황 (2018년 말 기준)[13]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소계	129,069/439,941	114,821/218,287	126,842/355,293	2,180/70,295	129,022/425,588	100%	47/14,353
춘천시	20,678/74,599	17,868/34,040	20,289/59,845	381/13,496	20,670/73,331	100%	8/1,268
원주시	27,625/106,866	23,859/45,612	26,915/81,869	696/21,556	27,611/103,425	100%	14/3,441
강릉시	19,206/63,719/	26,970/32,770	18,855/53,982	247/9,176	19,202/63,158	100%	4/561
동해시	7,391/23,922	6,604/12,306	7,261/20,278	123/2,549	7,384/22,827	100%	7/1,095
태백시	3,913/11,804	3,586/6,886	3,866/10,500	47/1,304	3,913/11,804	100%	0
속초시	8,139/24,685	7,296/13,769	8,003/21,487	136/3,198	8,139/24,685	100%	0
삼척시	5,901/19,823	5,352/10,048	5,821/15,907	77/3,012	5,898/18,919	100%	3/904
홍천군	5,598/19,245	5,064/9,286	5,503/14,452	92/3,185	5,595/17,637	100%	3/1,608
횡성군	3,455/12,612	3,138/6,124	3,387/9,047	65/9,075	3,452/12,126	100%	3/486
영월군	3,273/10,062	2,970/5,631	3,236/9,129	35/968	3,271/10,097	100%	2/0
평창군	4,094/13,091	3,781/7,197	4,046/10,257	47/2,212	4,093/12,469	100%	1/0
정선군	3,457/14,628	3,203/5,505	3,424/7,870	32/3,196	3,456/11,066	100%	1/0
철원군	3,401/9,133	3,132/5,753	3,374/8,123	271,010	3,401/9,133	100%	0
화천군	1,897/4,637	1,780/3,445	1,894/4,605	3/32	1,897/4,637	100%	0
양구군	1,738/4,815	1,607/3,401	1,733/4,726	5/89	1,738/4,815	100%	0
인제군	3,043/7,093	2,804/5,110	3,021/7,422	22/481	3,043/7,903	100%	1
고성군	2,636/8,448	2,415/5,054	2,615/7,259	20/888	2,635/8,147	100%	1
양양군	3,624/9,409	3,403/6,350	3,599/8,545	5/864	3,624/9,409	100%	0

13) 통계청'2018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1.6 코로나19와 소상공인 피해현황

❍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직접적 피해를 경험함

❍ 특히,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은 유동 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고객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음

<표 2-26>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14)]

(N=1,070)

구분	매우 감소하였다	감소하였다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변동 없음
매출액	77.3%	20.3%	0.2%	0.5%	1.8%
방문객	71.2%	26.5%	0.5%	0.3%	1.5%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여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97.6%(매우 감소하였다 77.3%, 감소하였다 20.3%)로 대부분을 차지함

❍ 매출액 감소 비율은 5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30%에서 50% 감소는 28.7%, 15% 이내 감소는 2.8%를 차지함

❍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방문객이 급속도로 감소함

❍ 방문객 변화 비율의 경우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97.7%(매우 감소하였다 71.2%, 감소하였다 26.5%)로 대부분을 차지함

❍ 방문객 감소 비율은 5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5.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30%에서 50% 감소 27.5%, 15%에서 30% 감소 21.3%, 15% 이내 감소 4.1%로 조사됨

14)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2. 코로나19시대 소상공인 국외 대응사례와 시사점

2.1 프랑스 코로나19 발생 동향

2.1.1 프랑스 코로나19 전개 상황

- ❍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유럽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고, 사망자 수는 세 번째로 많음(2020. 8월 기준)
- ❍ 2020년 2월말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리고 중환자 치료 병상수가 1만명당 8.93개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여 프랑스 정부는 인적이동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음
- ❍ 2020년 3월17일부터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자, 이에 따라 모든 비필수 사업의 영업이 중단되고 국민들의 국내외 이동이 전면 통제되었음
- ❍ 봉쇄조치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대비 13.8%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였음
- ❍ 프랑스 인구의 상당수의 가처분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음
- ❍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기존제도의 수혜대상이 아닌 이들을 위한 여러 비상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 ❍ 복지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조차 취약집단의 소득감소 및 실업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많은 학자들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과 최하위 소득가구가 겪고 있는 고충을 강조하고 있음
- ❍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이 부차적 제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청년층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 ❍ 다수의 소득 및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리되어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사회정책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음
- ○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
- ○ 프랑스는 작년 크리스마스 방학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 2021년 2월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임
- ○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프랑스인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실제 접종률과 접종 의지가 낮은 편임
- ○ 1월 18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요양보호시설의 장애인과 이곳에서 일하는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

<표2-27>국외 COVID-19 환자발생 수 현황

국가	환자발생수(사망)
이탈리아	4,826,738명 (사망 132,551)
독일	4,894,250명 (사망 97,198)
프랑스	7,017,897명 (사망 115,613)
영국	9,406,005명 (사망 142,338)
스페인	5,038,517명 (사망 87,6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250,875,563명 (사망 5,067,194 명) (11.12. 09시 기준)[15)]

2.1.2 프랑스 코로나 19 대응정책

❍ 기존소득보장제도 수혜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적정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는 다수의 이례적인 정책을 폈으며, 이는 주로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정책을 추진함

□ **일회성 지원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연대기금은 2020년3월 소득(전년동기대비) 50% 이상 감소한 소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전문직사업자를 위해 마련되었음

❍ 이 기금은 노동자 10인 미만으로 매출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함(위기 기간 동안 매출이 80%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 산업의 기업일 때 적용 범위가 노동자 20인 미만, 매출 200만 미만으로 확대됨)

❍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 최대 1천500유로(약 204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과 이를 보완하며 2천~5천 유로(약 272만~680만 원)까지(단, 우선 지원 사업 기업은 최고 1만 유로(1천360만 원))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임

❍ 코로나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학생과 청년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6월 한 달간 200유로(약 27만 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80만 명에게 지급)

❍ 견습직 학생들과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이들도 이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됨(단 이미 부분 실업 수당을 받는 근로 학생들은 수혜대상에서

15) *중앙사고수습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제외)

- ❍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중앙정부는 5월 한 달 동안 일회성 연대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
- ❍ 수당지급액은 가구 구성 및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수당(가령, RSA, 주거급여 등)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님
- ❍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최고 150유로(약 20만 원)이며 가구구성원 수 증가에 따라 최대 550유로(약 74만 8천 원)까지 지급됨

□ 가족 및 육아수당

- ❍ 봉쇄조치가 시작된 시점부터 16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육아를 이유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 노동자의 경우 유급 병가는 부분 실업제도로 대체되었음(하지만 이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계속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EU 차원 일자리 보호(SURE)

- ❍ 2020년 5월19일, EU는 실업위험 완화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였음
- ❍ 이제는 EU 회원국에게 최고 1천억유로(136조 20억원)를 제공하여 코로나 19위기 동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임
- ❍ 모든 회원국은 EU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임

□ 연대기금 조성[16)]

- ❍ 2020년 3월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대기금을 조성한 뒤 시행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
- ❍ 일정 한도 안에서 기준 매출액 대비 감소 매출액 전액 또는 80%를 지원함
- ❍ 한시적 운영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시행령을 고쳐가며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 ❍ 연대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기구가 70억유로(약 9조6천억원)를, 260개 보험사들이 모인 보험협회가 4억유로(약 5000억원)를 내어 조성함

16)코로나에도 취업자 수 회복…프랑스 '연대기금' 눈길, 한겨레, 2021.10.0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3852.html

❍ 2020년 3~4월에는 고용 노동자 10인 이하 및 매출 100만유로(약 13억7천만원) 이하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에 따른 매출 감소액을 월 1500유로(206만원) 한도로 전액 보상
❍ 이후 7월에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50% 감소한 곳이라면 지원함
❍ 10월에는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 노동자 50인 이하 기업으로까지 지원을 확대
❍ 2021년 지원을 연장하며, 쇼핑센터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향시킴

2.1.3 프랑스 코로나19 전반적 평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을 보면, 프랑스는 2019년 4분기에 비해 국내총생산 규모는 -3.2%지만, 취업자 수는 1.8% 늘어남
❍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코로나19 위기 동안 실시된 비상대책들은 많은 노동자의 소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가 취한 조치와 달리 프랑스의 대응책들은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연령·성별·고용계약 유형이 다양한 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임
❍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제도는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소득감소 및 실업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코로나19 위기는 소득과 사회보장에서의 핵심 노동자 집단 및 주변 노동자 집단 간의 불평등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강화됨[17)]

2.2 일본 코로나 19 발생 동향

17) Patrick Emmenegger, Siljia Häusermann, Bruno Palier, & Martin Seeleib-Kaiser(2012), M.(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UP: New York.

2.2.1 일본 코로나 19 전개 상황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이전의 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글로벌 팬데믹(pandemic)”을 불러옴
- ❍ 이러한 상황 속 일본은 국가적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이었으므로 팬데믹의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음
- ❍ 일본은 세계적으로 노년층이 많은 장수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숙련된 의료진, 풍부한 의료자원을 갖추고 있음
- ❍ 또한, 재난 관련 대비체계가 철저하며 전국 곳곳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감염병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일본이 전염병 대응에 대한 지식과 자원, 제도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 위기 “초반부” 일본 정부의 대응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됨
- ❍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함
- ❍ 크루즈선 집단감염 대응문제에서 시작하여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 검사 부족 등은 국제적인 비판을 받음

<표2-28>국외 COVID-19 환자발생 수 현황

국가	환자발생수(사망)
중국	98,099명 (사망 4,636)
홍콩	12,377명 (사망 213)
대만	16,465명 (사망 848)
마카오	77명
일본	1,724,718명 (사망 18,318)
싱가포르	227,681명 (사망 5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250,875,563명 (사망 5,067,194 명) (11.12. 09시 기준)[18)]

2.2.2 일본 코로나19 대응정책

- ❍ 2021년 1월 16일 일본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함

18) *중앙사고수습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 이후 3차례의 대규모 확산기가 있었음

□ 미즈기와 대책[19)]

❍ 일본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보고된 것은 2020년 1월 16일임

❍ 당시 「대책본부」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된 논의사항은 중국 우한 내 일본 교민 귀국 지원, 코로나19 관련법 제정(지정감염증 지정 등), 그리고 중국 후베이성 체류 및 발급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제한 함

❍ 일본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기반하여 항공, 항구 등에서의 검역·검사 강화, 입국제한, 도항중지 권고 등 국내로의 감염원 차단에 주력함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대응

❍ 2월 3일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이하, 크루즈선)의 선내 감염이 확산됨

❍ 크루즈선 문제를 감염증법 및 검역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이 강조됨[20)]

❍ 이 과정에서 선내 비감염자의 하선을 검토하거나, 선내에서의 감염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오히려 크루즈선 문제의 해결보다는 미즈기와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본토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 1차 '긴급사태선언' 발령(2020.04.07.)

❍ 아베 총리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본부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함(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한 달간 외출 자제를 강하게 요청)

❍ 기본적 대처방침 개정(4.7), 긴급경제대책(4.7,108조 엔 규모) 등이 발표

❍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16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함 (기간은

19) 물가에서 적을 퇴치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본 국내 유입 차단 조치함
20) 「대책본부」 5차 회의(2020.2. 5.)

2020년 5월 6일까지/ 홋카이도, 아이치현, 교토부 등은 도쿄도와 같은 정도로 만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점적인 대처가 필요한 '특정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

- ❍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 5월 4일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긴급사태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 실시 구역은 일본 전체로, 2020년 5월 14일 시점에서 감염자수와 의료 제공 체제의 핍박 상황 등을 분석·평가해 가능하면 5월말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
- ❍ 2020년 5월 25일 일본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
- ❍ 도도부현 간 이동자제요청 2020년 6월 18일과 이벤트 개최 제한 2020년 7월 10일 완화됨

□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실시**

- ❍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행장려캠페인을 시행함
- ❍ 사회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며, 방역과 경제 양립을 목표로 한 방안이 제시됨
- ❍ 싱가포르(2020.9.18)를 시작으로, 한국(2020.10.8) 등 11개국과 비즈니스 트랙을 통한 왕래가 시행되었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대한 입국제한이 완화됨

□ **2차 긴급사태선언(2021.1.8.)**

- ❍ 2020년 11월 중순 들어 감염자 수가 급증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제언을 함
  - ① 클러스터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른 보다 강력한 대책
  - ② 감염방지를 위한 알기 쉬운 정보 발신
  - ③ 직장 등에서의 감염방지책 실현
  - ④ 국제적 인적 왕래재개에 대한 대처 강화
  - ⑤ 감염대책검증을 위한 유전자분석 추진
- ❍ 이후 감염자 수 급증에 따른 강한 위기감과 더불어 병상 수 부족, 전문의 부족 등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 속, 의료제공체제와 보건소의 부

담을 막기 위한 각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이 강조됨

❍ 경제활성화 대책이었던 고 투 캠페인이 일시 중단(12.28-1.11)되었고, 급기야 2021.1.7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를 대상으로 2차 긴급사태가 선언(2021.1.8.-2.7)되었으며, 2021.1.14에는 도치기, 기후,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가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으로 추가됨

❍ 2차 긴급사태에서는 감염리스크가 높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①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② 저녁시간 외출 자제, ③ 재택근무 실시, 이벤트 개최요건 강화 등이 제시됨

□ **매월 지원금**

❍ 2020년 4월 이후 비상 사태 선언 또는 확산 방지 등에 중점 조치에 따라 음식점의 휴업, 노동 시간 단축, 영업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건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

① 응급조치 또는 확산 방지 등에 중점 조치에 따른 음식점의 휴업 노동시간 단축 영업 또는 외출자제 등의 영향을 받음

② 2021년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원 대비 50% 이상 감소함

❍ 월 별 법인 20만엔/개인 10만엔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사업재개 보조금**

❍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야 전개, 업태·업종 전환, 구조 조정 등의 도전을 지원하는 보조금

❍ 비상사태선언의 영향으로 2021년 1월~8월 중 월 매출 30% 이상 감소한 경우, 보조율을 75% 상향시킴

□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 소규모 사업자 등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직면하는 경영상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 또는 상공 회의소의 조언 등을 받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최대 100만엔 보조하는 제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특별 대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최근 1개월'의 매출이 이전 3년 중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특별 대출

2.2.3 일본 코로나19 전반적 평가

❍ 일본의 경우 긴급사태로 인한 피해(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지원함 (큰 피해를 입은 업체에 맞게 더 큰 금액 지원)-한국과의 비교되는 부분

❍ 일본의 상반기 경제는 코로나19에 좌우되어 긴급사태 발령시기에 내수가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감염 진정세 및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 사태의 진정세에 따라 올림픽 개최관련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 대회 개최 중지로 인한 경제손실은 피한 것으로 보임

3. 코로나19시대 소상공인 정책변화와 전망

3.1 코로나 이전 소상공인 정책변화

3.1.1 1단계: 정책 도입기(1999~2001)

- ❍ 1999년부터 2001년까지로 1997년 말 불거진 외환위기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실업 급증과 불안한 경제 저변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이 도입되었음
- ❍ 주요 내용: 실업 해소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실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마련하였음
- ❍ 법적 기반 마련: 기존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소상공인 부문을 추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함
- ❍ 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 추진되었고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대량실업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였음

3.1.2 2단계: 정책 정착기(2002~2007)

- ❍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 조정과 대량실업의 문제가 해소되고 경제가 회복국면을 맞이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되었음
- ❍ 주요 내용: 디지털경제의 대두에 발맞추어 상권 분석 정보시스템 개통, 소상공인의 교육과 해외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제도적으로는 2006년 중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과 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이 이루어졌음. 가장 큰 특징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점임
- ❍ 법적 기반 마련: 2002년부터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지원정책을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자영업자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이기도 함
- ❍ 특징: 1단계에 중점을 두었던 고용 측면의 중요성을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안전망 측면의 중

요성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면서 중소기업 측면에서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음

3.1.3 3단계: 정책 확장기(2008~2011)

- ❍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발생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고 지원사업들이 분화되는 시기로 볼 수 있음
- ❍ 주요 내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대책(2008.3),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실시(2009.1), 영세자영업자 금융 및 취업지원(2009.4),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2010.5) 등이 추진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원사업의 분화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음. 소상공인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확충, 전용 케이블방송 시작,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와 맞춤형 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전통시장의 경우 공동마케팅사업 추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시행, 온누리 상품권 발행, 골목슈퍼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이 각각 시행되었음. 소상공인 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 점임
- ❍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
- ❍ 특징: 2단계의 중소기업과 사회안전망 측면의 중점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지역경제 관련 측면이 더해지는 시기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SSM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문화를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을 꼽을 수 있음

3.1.4 4단계: 정책 활황기(2012~2018)

- ❍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미국과 중국과의 FTA 체결이 이루어졌음. 이 기간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음.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을 별도로 신설하였었음
- ❍ 주요 내용: 이 기간에 한미, 한중 FTA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사업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

❍ 법적 기반 마련: 지원법도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수정하였음.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시행하였는데 2014년에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2015년 1월에는 기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기업 부분은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통합하였음. 이로써 소상공인관련 전용법이 만들어졌음. 소상공인과 관련되어서는 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 5월 제정하였음

3.1.5 5단계 : 정부 제1차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2017~2019)

❍ 법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6년 11월 제1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수립 발표

❍ 주요 내용: 소상공인의 생존율 및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전략 1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광역단체: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함. 특히 각 지자체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중요함

3.2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정책변화

❍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침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에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위기 극복 정책을 시행함

3.2.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재난지원금)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 현금 지원 정책을 말함

<표2-28>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구 분	지급 시기	대상자	지원금액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총 150만 원 (50만 원×3개월)
2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9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50~15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이미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	50만 원 추가 지급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3월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경영 위기 업종	200~3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8월	2020년 8월 이후 1회 이상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음 혹은 여행업, 경영위기 업종	100~900만 원
6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검토중		

3.2.2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 ❍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됨
- ❍ 2020년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임
- ❍ 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9월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함

<표2-29>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특별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집합 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업종	150만 원

- ❍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됨
- ❍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함
- ❍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면 새희망자금 중복 지급이 불가함
- ❍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함

3.2.3 버팀목자금

- ❍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금임
-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함
- ❍ 1차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4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가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6,000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액수임
- ❍ 1차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이뤄짐
- ❍ 이후 2021년 1월 25일부터는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15만 6,000명에 대한 추가 지급이 시작됨
- ❍ 2021년 3월부터는 지원 유형을 7개로 분류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이 이뤄짐

<표2-30>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집합 금지	300만 원
	영업 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2020년 연 매출 4억 이하/ 2020년 대비 매출 감소)		100만 원

3.2.4 버팀목자금 플러스+

❍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함

<표2-3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특별피해업종		연장된 집합 금지업종	500만 원
		완화된 집합 금지업종	4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 매출액 감소	300만 원
일반업종	**경영 위기 업종**	매출액 60% 이상 감소	300만 원
		매출액 40% 이상 감소	250만 원
		매출액 20% 이상 감소	200만 원
	그 외 일반업종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매출액 감소	100만 원

3.2.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표2-32>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 요건	신청 및 지급 기간	신청절차
1인당 25만원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온라인) 9.6~10.29 ▪ (오프라인) 9.13~10.29 ▪ (이의신청) 9.6~11.12 ▪ 첫 주 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3.2.6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표 2-33>소상공인회복자금

지원 금액	대상요건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최대 2,000 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30일~ 확인지급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최대 900 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 만원	▪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3.2.7 소상공인 손실보상

<표2-3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대상요건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약 80만 곳)	▪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오프라인) 11월 3일~ * 확인보상 11.10~ ▪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 (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3.2.8 상생소비지원금

<표2-35>상생소비지원금

지원 금액	대상요건	신청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캐시백 (두달간 최대 20만원)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신청) 10.1~11.30 ▪ (지급) 신청 익월 15일 ▪ (사용기한) ▪ ~2022.6.30. * 첫주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10.1, 금) 2,7(10.5, 화) 3,8(10.6, 수) 4,9(10.7, 목) 5,0(10.8, 금) *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전화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 ▪ 방문신청 : 카드 연계은행 영업점 * 전담카드사(총9개)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지원함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함

3.3.1.1 융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표2-36>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지원요건[21]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 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 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동화설비)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성장촉진 자금	(직접·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스마트 설비도입	(직접대출) 스마트공장으로 지정된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혁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창업초기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여성가장	(여성가장)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사업전환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위기지역지원	(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저신용자(CB 또는 SOHO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사회적경제기업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청년특별1)'21년 청년근로자(만 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청년특별2)'21년 청년근로자(만 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표2-3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22)]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반) 연 2.33%
		(자동화) 연 2.13%
	성장촉진자금 (직접, 대리)	(일반) 연 2.13%
		(자동화) 연 2.13%
	스마트설비도입	연 1.93%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 1.93%
경영안정 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연 2.33%
		(창업초기) 연 2.33%
		(여성가장) 연 2.33%
		(사업전환) 연 1.9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 2.33%
	특별경영 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연 2% (고정금리)
		(위기지역지원) 연 2%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 연 2% (고정금리)
		(재도전특별자금) 연 4% (고정금리)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 연 2% (고정금리)
		(사회적기업) 연 2.13%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 (고정금리)

		(청년고용특별자금) 연 2.13%
		(청년고용특별자금1) 연 1.93%
		(청년고용특별자금2) 연 1.83%

❍ 대출한도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대리대출)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 가능

❍ 대출 취급은행(19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22) '21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1.4.10.부터 적용)

3.4 소상공인 경영지원제도

3.4.1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 ❍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지역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함
- ❍ 월 최대 60만 원으로 4월~9월 청구요금인 6개월분의 전기요금이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됨

3.4.2 예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천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 500명 선발(연2회), 사업화 자금의 일부 무상지원(참여기업 50% 자부담)

□ 생활혁신형형 창업지원(성공불융자)

- ❍ 사업개요: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 지원규모: 1000명 내외(예산 5.18억원)
-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 지원내용: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000만원 성공불융자지원* 융자 신청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 ❍ 21년 주요 변경내용: 신청제외대상 일부 변동(추후 공고문 참조) 생활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지원후 성공시 5년간 상환, 실패시 상환의무 없음)
- ❍ 1,000명 내외 선발(2월부터 접수 시작)

3.4.4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소상공인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 ❍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함

<표2-38>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방법 및 문의처	소상공인컨설팅 : 온라인 신청(www.sbiz.or.kr)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 132(대한법률구조공단)

<표2-39>소상공인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지원분야	마케팅 및 영업홍보	SNS,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발굴, 인테리어, VMD(상품진열 등)	4일 (1일 4시간 이상)
	경영관리	직원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재무관리, 손익계산, 자금지원 활용, 업종전환 등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기술전수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사업지원서비스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표2-40>무료법률구조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 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3.5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3.5.1 긴급 경영 컨설팅

– 지원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표2-41>소상공인 긴급 경영컨설팅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일		1~4일
지원분야	경영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표2-42>소상공인 창의 육성 컨설팅 지원내용

창의 육성 컨설팅	
지원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바우처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바우처로 제공

<표2-43>소상공인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자부담 무료조건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연매출 8,000만원 미만)
3.	백년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
4.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5.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6.	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상공인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7.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8.	예비창업자

<표2-44>소상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제작, 상품 기획 등	최대 200만원 이내
판로 창출	SNS 마케팅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최대 2개까지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바우처 제공 가능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국비지원>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 컨설팅 비용: 120만원(1일 30만원), 12만원 자부담 발생,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 무료(국비 100%)로 지원함		

<표2-45>소상공인 컨설팅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소상공인
2. 사전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운영기관)
3.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
4.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5. 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팅 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운영기관)

3.6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함

- 지원대상: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 사건

-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표2-46>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시)
변호사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3.7 정부 민생경제장관회의 (2021.07.29.)

희망회복자금	• 추경: 총 34조 9천억원 • 지급일: 8월17일부터 •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우선적 신속집행 요청 •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영 요청 • 코로나19로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 경제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함 • *코로나 취약업종*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당부함
손실보상법	• 10월시행-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 •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 10월시행: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 (추진)
정책서민금융 확대	•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 요청함: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
전 세계적 물가상승 우려	•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 요청 • 2021년 7월 27일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 함
백신접종확대	•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
기타	•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함

제3장

운영 실태조사와 시사점

1. 전국대비 강원도 정책운영현황
2. 코로나 전후 소상공인 지원실태조사 비교분석
3. 시사점과 대응방향

1.전국대비 강원도 정책운영 현황

1.1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업무 내용 비교

❍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3-1> 수도권과 대도시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정책자금			자금 금융지원
컨설팅	현장체험(멘토링) 창업컨설팅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경영 컨설팅 정보	창업지원 사업화지원 R&D지원 바이오지원 정책연구지원	소상공인, 서비스산업지원 컨설팅 지원
상권정보 안내	자영업클리닉	-	상권정보 시스템
기타	자영업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 등행 프로젝트 시설개선(골목상권)지원사업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지역밀착 종합지원 사업 지역화폐(제로페이)	마케팅 지원 현장애로지원/인증 지역특화지원 [독립센터로 운영] 이지비즈 바이오센터 3D프린팅 통합센터 지역화폐(제로페이)	창업지원 소상공인 교육 행복안전망지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마케팅 지원 지역화폐(제로페이)
사이트	서울시청(25개 구청)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청 각 시·군청 인천시 서민복지금융센터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희망센터 부산시청

<표3-2> 비수도권과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정책자금	자금/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컨설팅	교육 컨설팅	기업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창업 교육 교육컨설팅	마케팅(디자인, 수출, 환경개선지원)
상권정보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기타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국 내외 판로지원 기업애로지원 마케팅지원 마을기업지원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교육] 창업기본교육 전문기술교육 분야별 경영개선 교육 창업.경영개선 아카데미 운영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운영] 창업아이템 실현 사전진단 긴급 경영해결 온라인 진출	국내마케팅지원 해외시장 개척 소상공인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일자리 지원 인력지원 [독립센터운영]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전라남도청년센터	밀키트 제작 지원사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자원개발 지원 폐공간조성 및 창업지원 사업 관광융복합지원 자원개발 창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협력지원
사이트	충북 소상공인지원센터 충청도 중소기업 지원 충청도 소상공인지원 각 시·군청(충북도청,충남도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각 시·군청 (전북도청, 전남도청)	강원경제진흥원 각 시·군청 강원도청

□ **타 지역 비교와 특성**

❍ 지역적 다양한 특색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기관도 기능도 미약

- 강원도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50만이상 도시가 없고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위한 센터 및 기관이 부족하고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편임

❍ 소상공인지원정책 정보 제공이나 공유기능 미약

- 더군다나 강원도 내의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안내 사이트가 미흡 함

❍ 지원정책프로그램 미약:

- 강원도 소상공인에 대하여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1.2 기타 지원정책

□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리**

❍ 강원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 금융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NH농협은행 등 6개 기관과 「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 강원도, 산불 피해 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 산불 피해로 인한 긴급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을 신규로 지원

❍ **착한 임대인 운동:** 춘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감면, 지방세 감면

❍ **강원상품권 : 제로페이 / 10% 할인판매 (1인 30만원한도)**

❍ **꽃 소비 축소에 따른 꽃 '강원 꽃 소비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양한 행사 축소 취소(졸업식 입학식 결혼식 사회단체 연시총회 등 각종 행사 비대면 전환)

❍ **2021년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쇼핑 트렌트가 온라인으로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마케터"에게는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도내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시장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노점상도 소상공인에 포함될까요?)**: 사업자 등록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해당)

❍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도**: 기존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풍수해보험 강원전역으로 확대 시행

❍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도내 기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 기부금을 통해 저소득층과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보험료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는 제도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방역관련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 **착한배달앱** 「일단시켜」운영으로 비용부담 줄임: 소상공인은 각종 수수료가 무료인 「일단시켜」 앱을 통한 주문으로 비용부담을 줄임

❍ **백신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 소상공인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소상공인 백신자금」지원

1.3 시도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업무 내용 비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창업컨설팅, 현장체험, 자영업 협약화, 사업정리&재기지원, 고용보험지원, 1인자영업(자영업클리닉), 시설 개선지원사업, 소상공인동행프로젝트, 관악상권르네상스, 상권혁신 아카데미, 소상공인홍보관
- 서울산업진흥원 : 자금, 기술R/D, 마케팅, 입주공간, 수출, 일자리, 창업 기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략개발, 지역순환경제조성지원, 지속성장지원, 가 치확산
- 한국스타트업지원센터 : 정책자금(창업, 운전, 시설), R/D지원사업, 사업화지원사업,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5개)
  * 금천구 :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의류봉제)
  * 종로구 : 서울봉익주얼리센터(귀금속)
  * 성북구 :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의류봉제)
  * 종로구 :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의류봉제)
  * 광진구 : 서울광진의류제조센터(의류봉제)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전통시장 명품점포육성지원 사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경기소상공인국내판로지원사업, 경기도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

→ 전통시장 :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경기도 상인동아리 지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경기전통시장매니저 육성, 경기도 명품점포 육성,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전통시장 화재 무인경비시스템 개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창업지원, 사업화지원, R/D지원, 바이오산 업지원, 마케팅 지원, 교육지원, 현장애로지원/인증, 지역특화지원, 정책연구원 지원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포천시 : 포천가구제조센터(가구제조)
* 고양시 : 고양장항인쇄센터(인쇄)
* 군포시 :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금속가공)
* 부천시 :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전기장비)
* 성남시 : 성남상대원식품제조센터(식료품)
* 시흥시 :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기타기계 및 장비)
* 안양시 : 안양전자부품제조센터(전자부품)
* 용인시 :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전자부품)
* 화성시 :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기타기계 및 장비)
* 화성시 : 화성동탄전자부품센터(전자부품)
* 시흥시 :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전기장비)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교육, 인천우리마을상인회 활성화, 상생협력상가조성지원사업, 도시형 소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 등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인천 동구 : 인천송림기타기계장비센터(기타기계 및 장비)
* 인천 연수구 :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기타기계 및 장비)

□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시장창출형로봇실증사업, 수요맞춤형서비스 로봇개발.보급사업, 제조로봇플러스사업,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사업, 로봇산업글로벌화, 로봇융합비즈니스지원사업, 유망기술사업화촉진 지원사업, 입주기업모집, 로봇규제개선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입주기업, 대관시설 이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대구 북구 : 대구노원안경제조센터(안경제조)
  * 대구 중구 :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의류봉제)
  * 대구 중구 : 대구성내주얼리센터(귀금속)

❍ 부산광역시

- 소상공인희망센터 : 소상공인 교육(유망업종 희망아카데미, 디지털 마케팅 실무교육), 컨설팅지원, 마케팅지원(온라인마케팅비용지원, 스마트오더비용지원), 행복안전망지원(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기타지원사업(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지원사업,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즈,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기획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운영,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제로페이, 상권정보시스템
- 부산경제진흥원 : 창업지원,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자금, 판매.홍보지원, 주요시설 예약, 창업기업 존, 청년두드림, 창업 카페
- 산업단지 지원시스템 : 기업지원사업, 산업단지 산업동향, 현황 입주기업체 검색
- 신발산업진흥센터 : SHOE마크 제품인증, 마케팅.판로지원, 생체역학적 성능평가, 제품개발컨설팅, 교육훈련 지원, 입주지원, 사업화지원, 신발디자인활성화지원
- 부산지식산업센터 ; 회의실 이용 예약, 입주지원, 입주기업 지원사업
- 메디컬ICT융합센터 : 의료기기 업체 입주 등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부산동구 :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의류제조)
  * 부산 부산진구 :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가죽, 가방, 신발)
  * 부산 부산진구 : 부산범천귀금속센터(귀금속)

❍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중장년지원센터, 대전창업온라인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대전 유성구 :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금형제조)
  * 대전 대덕구 : 대전오정기타기계장비센터(기타기계 및 장비)
  * 대전 동구 : 대전정동인쇄센터(인쇄)

❍ 광주광역시

- 소상공인 창업지원 컨설팅 센터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 광주서남인쇄센터(인쇄)

□ **광역자치단체 지역(경상, 충청, 전라, 제주, 강원지역)**

❍ 경상북도

- 경제진흥원 : 자금경영지원,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글로벌강소기업육성, 소상공인지원, 산업유산 및 향토뿌리기업육성, 기타

(소상공인분야) : 경북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 사업,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사업,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등

❍ 경상남도

- 경제진흥원 : 일자리지원, 노동복지, 소상공인지원, 경제기업정책

(소상공인분야) : 소상공인창업성공사다리 지원, 소상공인협업화지원, 제로페이활성화프로모션추진, 소상공인온라인입점지원, 소상공인골목 상권활력사업

- 창원산업진흥원 : 방위항공산업육성지원, 수소산업육성, 수출지원, 창업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인력양성(청년일자리 등)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경남 김해시 : 김해진례도자센터(도자기 제조)

❍ 충청남도

- 경제진흥원 : 중소기업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소상공인지원, 해외통상사무소(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충남 금산군 : 충남금산인삼센터(식료품(인삼))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 창업부터 경영안정화, 재기지원교육, 경영컨설팅 맞춤형 종합지원(2021. 7월14일 개소)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 자금/금융지원, 국내외판로지원, 컨설팅/교육,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마을기업지원, 일자리지원, 기업애로지원, 기업인예우시책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지식산업진흥원) : R/D지원, 교육지원, 네트워킹, 마케팅지원, 사업화지원, 지역특화지원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 청주중앙인쇄센터(인쇄)

❍ 전라남도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전남융합콘텐츠 산업환경조성, 기업생태계 조성, 융합콘텐츠 인력양성 생태계조성 변경,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활성화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전남 무안군 : 무안도자제조센터(도자기제조)

❍ 전라북도

- 소상공인희망센터: 소상공인보육지원, 소상공인 경영컨싱,소상공인 창업개선 교육, 스타소상공인육성, 우수소상공인프랜차이즈, 민생 현장 솔루션팀, 전북천년명가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전북 순창군 : 전북순창장류제조센터(식료품(장류))
  * 전북 전주시 :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금속가공)

❍ 제주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경영아카데미, 현장경영클리닉, 종합컨설팅, 사업정리지원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재기지원사업, 골목상권시설 개선 사업, 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포럼, 사업계획 체험 사업
- 경제통상진흥원 : 판로지원, 수출지원, 자금지원, 소상공인지원, 제품인증지원, 일자리지원, 디자인지원, 물류지원, 청년공간

❍ 강원도

-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 : 전통시장 지원업무
- 강원도 경제진흥원 : 자금, 마케팅, 지역발전, 지식재산, 인적자원개발, 관광융복합, 전통시장지원, E-비즈니스지원센터, GTI박람회 추진센터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원주시) : 기업지원, 마케팅지원
- 영월 산업진흥원(영월군) : 창업지원, 센터입주 및 장비대여, 창업보육 활성지원, 기업일자리 창출, 향토기업육성, 미래성장동력 발굴
-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정선군) : 특화지원,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홍천군) : 신사업 창업분야 교육 및 현장실습 및 모의창업, 창업지원

2. 코로나 전후 소상공인 지원실태조사 비교 분석

2.1 코로나전후 지원정책 재난 비교: 2015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2.1.1 메르스 사태 소상공인 지원현황

(자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23)]

- ❍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직후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20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방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평균 26% 감소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됨
- ❍ 특히 제조업보다 소상공인이 비중이 높은 생활형 서비스업에서 피해가 컸음
- ❍ 실제로 방문객·이용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계약취소·연기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63.3%에 달함
- ❍ 영업활동 차질(17.6%), 내부행사 취소(15.2%) 등 피해를 호소함
- ❍ 구체적인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 피해가 매출 37.3% 감소로 가장 큼
- ❍ 학원등록 및 수련회 등이 취소됨에 따른 매출타격이 있음
- ❍ 감염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외출·소비를 삼가면서 음식점업과 스포츠·오락 관련 서비스업 매출도 각각 36.6%, 33.9%씩 줄음
- ❍ 유동인구가 많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은 고객 수와 매출액이 50%까지 급감함
- ❍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판로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기업, 내수에 기반하는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입음

23)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직후 피해 조사

2.1.2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비교

❍ 메르스 피해 당시 소상공인 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3-3>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저리 정책자금 지원함 ▪ 지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직접피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종) (간접피해) 직접피해 외 지역에서 여행업, 전문휴양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오락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15.2분기 기준 2.64%) 대출한도-업체당 7천만원 한도 대출기간-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보 특례보증	▪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지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메르스 영향지역 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2.대표자가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대출금리-2.8%(일시상환,변동금리), 3.3%(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0.8%(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일 경우 0.5%) 보증기간: 5년이내 -일시상환대출:1년(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대출:5년(1년간 거치기간 포함) ▪ [지역신용보증재단]
메르스관련 관광기금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 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400억원/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포함시 총 720억원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대기업 제외) 메르스 관련 계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업체에 우선 배정, 지원 ▪ 신청요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로 운영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함*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등 17개업종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등 피해 입증서류 별도 제출 ▪ 지원조건: 대출금리 - 1.5%(변동금리)

	대출한도: 업체당 한도 적용 *일반 여행업 10억, 국내외여행업 2억, 호텔업 10억, 관광식당업 2억, 국제회의업 5억,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1억, 종합유원시설업 5억 이내 등 대출기간: 4년 이내(2년 거치 후 2년간 상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기타	▪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지금 융자 ▪ 은행권 만기연장 및 저리자금 융자 ▪ 새마을금고 긴급 신용대출 ▪ 피해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지역신보 특례보증 ▪ 납세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2.1.3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

❍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3-4>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착한 임대인 ▪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시, 인하분 50%,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정부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 중앙정부 : 임대요율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 ▪ 지자체: 임대요율 재산가액5%에서 최저1%로 인하 ▪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 코레일 인천공항 등 6개월간 임대료 20~35%인하
소상공인 금융지원	▪ 1.4% 초저금리대출 공급(총 3.2조원) ▪ 특례보증 10배 확대 (총 1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 4,200억원으로 확대 ▪ (0.02조원 → 1.42조원, 1.4조원↑) 및 대출금리 추가 인하(1.75% → 1.5%, △0.25%p) ▪ 소상공인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
창업지원사업 탄력적 운영	▪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기한 연장 ▪ 주요 사업별 평가 일정 및 방식 변경(오프라인→온라인) ▪ 사업설명회, 교육 등 오프라인 행사의 온라인 대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 (금리) 3년간 1.4%내외 ▪ (보증료) 1년간 0.7%p 감면 ▪ (심사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통상 2~3 영업일
우대금리 대출 12조원	▪ (금리) 통상 2%후반(일반대출 4%후반) ▪ (심사기간) 대출신청일부터 통상 5영업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20년 추가경정예산안 이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83억원 추가 지원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1. 화훼 소비 촉진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특수학교 '1교실 1꽃병' 지원 등 2. 식품·외식업체 지원 : 식품외식업 운영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인하 3. 농식품 수출지원 : 수출업체 원료구매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 **농식품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 개학 연기로 경영이 어려운 친환경 농가를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판로확보 등 지원 ▪ 코로나 피해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생산한 제철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생협, 유통업체, 농협 등 판촉 행사 개최 *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매장·농협몰 등 판촉행사 (3.6~4.1), 이마트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3.19~) 등 ▪ 중앙·지방 공무원 및 농업관련기관 대상 코로나 피해농가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캠페인 추진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	▪ -수산분야의 경제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업인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대책 마련 ①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② 수산물 소비 및 거래 활성화, ③ 어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④ 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

2.1.4.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표3-5>「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지원기관	규모	신청 창구
소상공인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소상공인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2.7조원	소진공 전국 지역센터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5.8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시중은행 이차보건 프로그램	시중은행 (14개)	3.5조원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신속전역보증 프로그램		신보 기보 지역신보	3조원	신보 기보 지역신보 영업점

2.2 코로나 19 소상공인 실태조사[24)]

<표3-6>소상공인 2019 조사개요

조사목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파악하여 정부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법적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실태조사)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일반통계(제920022호)
작성기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만개
조사연혁	2019년 제2회 조사(2020년)
조사기간	2020.7.6. ~ 8.14. (40일간)
조사대상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만개 ○ 조사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업종 **[조사포함**(11개 산업 대분류)]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I. 숙박·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업, N. 사업시설·지원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S. 수리·기타서비스업
조사방법	조사원 현장방문 면접조사
조사내용	소상공인 일반현황, 창업현황, 경영실적 등 30항목

❍ 2019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1.1%(3만개) 증가한 277만개, 종사자 수는 1.9%(12만명) 증가한 644만명

❍ (사업체수)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2.1%), 수리·기타서비스업(1.9%) 등에서 증가, 지역별로는 세종(13.7%), 제주(5.8%), 충북(2.2%) 등에서 증가

❍ (종사자수)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4.2%), 도·소매업(2.3%) 등에서 증가, 지역별로는 세종(12.8%), 제주(8.6%), 충남(4.9%) 등에서 증가

❍ 사업체당 창업준비기간은 전년대비 0.7개월 증가한 10.2개월,
창업비용은 전년대비 1.0%(-1백만원) 감소한 102백만원

❍ (준비기간) 1~2년 미만(3.5%p), 6~12개월 미만(1.5%p) 등은 증가,
3개월 미만(-3.4%p), 3~6개월 미만(-2.8%p)은 감소

* 사업체당 평균 창업준비기간(개월): ('18.) 9.5 → ('19.) 10.2(0.7↑)

❍ (창업비용) 수리·기타서비스업(8.6%), 교육서비스업(3.9%) 등은 증가,
도·소매업(-4.2%), 제조업(-2.6%), 숙박·음식점업(-0.2%) 등은 감소

❍ 사업체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0.2%(-0.4백만원) 감소한 234.7백만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0%(-1백만원) 감소한 33백만원

❍ (매출액) 교육서비스업(10.9%), 도·소매업(1.6%) 등은 증가, 수리·기타서비스업(-7.2%), 제조업(-0.4%) 등은 감소

❍ (영업이익) 교육서비스업(10.4%) 등은 증가, 수리·기타서비스업(-14.5%), 숙박·음식점업(-7.9%), 도·소매업(-2.7%) 등은 감소

24)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

□ 2019 전국 소상공인 조사 중 강원도 일반 현황

1) 성별 및 연령대

<표 3-7> 2019설문조사 강원도 성별 구분

성별	빈도	%
남	1,326	70.0
여	567	30.0
전체	1,893	100.0

❍ 강원도 소상공인의 성별 비율은 남성 70.0%, 여성 30.0%로 나타남

<표 3-8> 2019설문조사 강원도 연령대 구분

연령대	빈도	%
20대	31	1.6
30대	190	10.0
40대	546	28.8
50대	732	38.7
60대	306	16.2
70대	75	4.0
80대	12	0.6
90대	1	0.1
전체	1,893	100.0

❍ 강원도 소상공인의 연령대 비율은 50대 38.7%, 40대 28.8%, 60대 16.2%, 30대 10.0% 등이 순으로 나타남

2) 산업분류

<표 3-9> 산업분류별 사업종류

산업분류	빈도	%
제조업	815	43.1%
도매 및 소매업	185	9.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8	9.4%
건설업	156	8.2%
부동산업	104	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	5.2%
숙박 및 음식점업	94	5.0%
정보통신업	80	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	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1	3.2%
교육 서비스업	46	2.4%
합계	1893	100.0%

❍ 강원도 소상인 산업분류는 제조업 43.1%, 도매 및 소매업 9.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창업형태

<표 3-10> 시도별 창업형태

행정구역	신규창업 (현 사업체를 처음 설립)	인수창업 (현 사업체의 운영·소유권 인수)	가업승계 (현 사업체를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인수)	전체
서울	3,212(85.3%)	459(12.2%)	93(2.5%)	3,764(100%)
부산	2,387(86.1%)	323(11.7%)	61(2.2%)	2,771(100%)
대구	1,944(88.3%)	196(8.9%)	61(2.8%)	2,201(100%)
인천	1,756(86.3%)	247(12.1%)	32(1.6%)	2,035(100%)
광주	1,714(86%)	237(11.9%)	41(2.1%)	1,992(100%)
대전	1,583(87.7%)	179(9.9%)	44(2.4%)	1,806(100%)
울산	1,481(84.4%)	242(13.8%)	31(1.8%)	1,754(100%)
세종	964(90.9%)	78(7.4%)	19(1.8%)	1,061(100%)
경기	2,942(83.7%)	477(13.6%)	94(2.7%)	3,513(100%)
강원	1,575(83.2%)	232(12.3%)	86(4.5%)	1,893(100%)
충북	1,757(86%)	232(11.4%)	53(2.6%)	2,042(100%)
충남	1,929(86.2%)	241(10.8%)	69(3.1%)	2,239(100%)
전북	2,100(86%)	262(10.7%)	79(3.2%)	2,441(100%)
전남	1,774(85.2%)	237(11.4%)	72(3.5%)	2,083(100%)
경북	2,063(85.9%)	273(11.4%)	66(2.7%)	2,402(100%)
경남	2,287(85.4%)	322(12%)	69(2.6%)	2,678(100%)
제주	1,261(84.6%)	184(12.3%)	46(3.1%)	1,491(100%)
전체	32,729(85.8%)	4,421(11.6%)	1,016(2.7%)	38,166(100%)

❍ 전체 창업형태는 신규창업이 85.8%, 가업승계 2.7%, 인수창업 11.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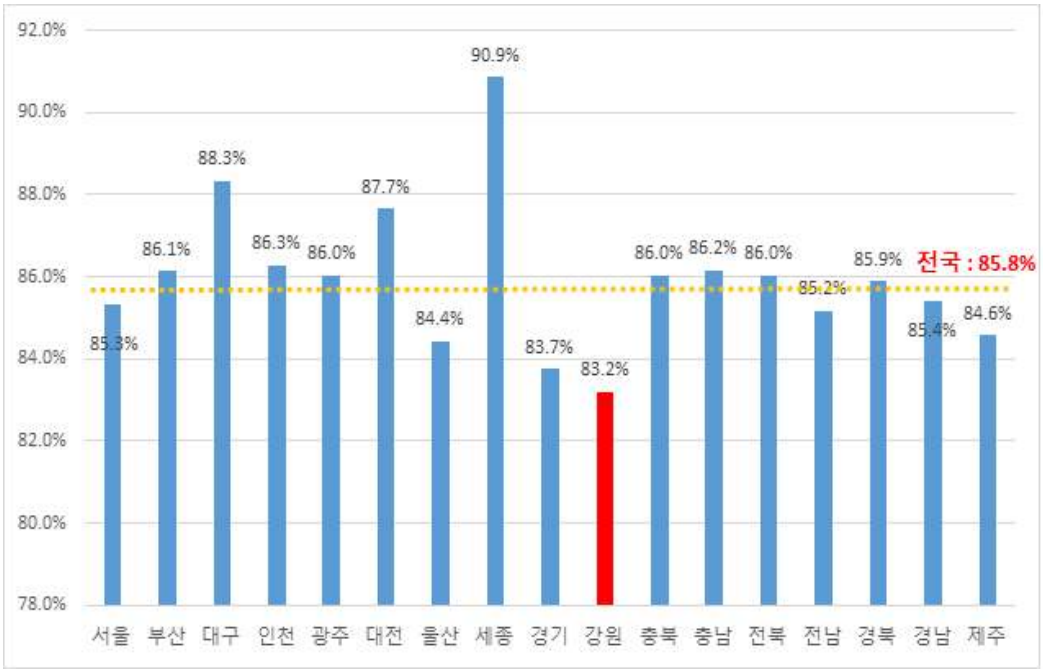

[그림3-1] 시도별 소상공인 신규창업비율

❍ 강원도 창업형태 중에서 신규창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8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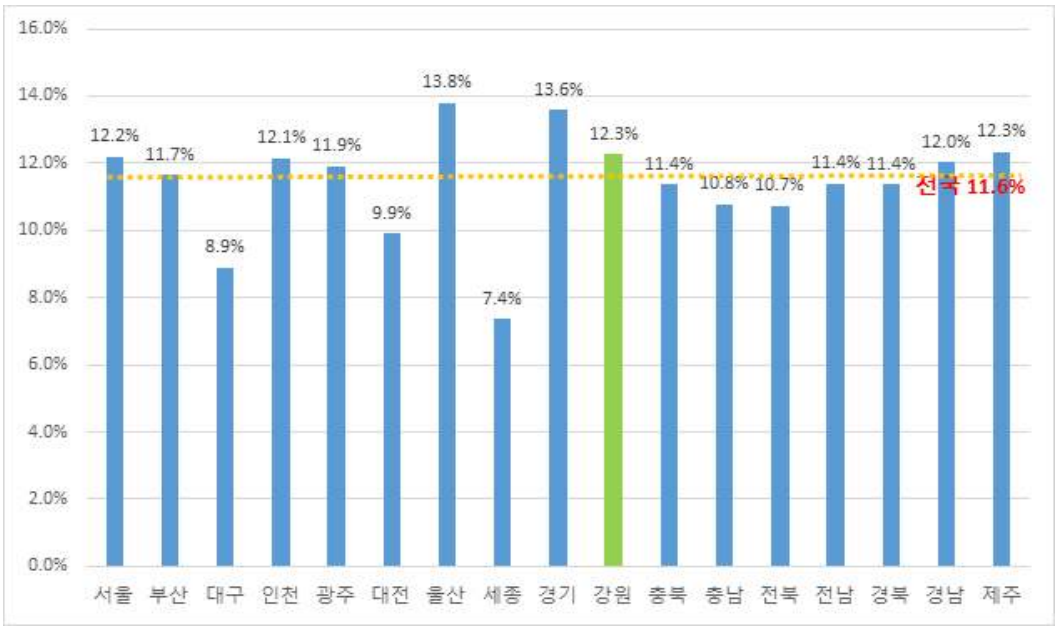

[그림 3-2] 시도별 소상공인 인수창업비율

❍ 강원도 창업형태 중에서 인수창업은 전국 11.6%보다 다소 높은 12.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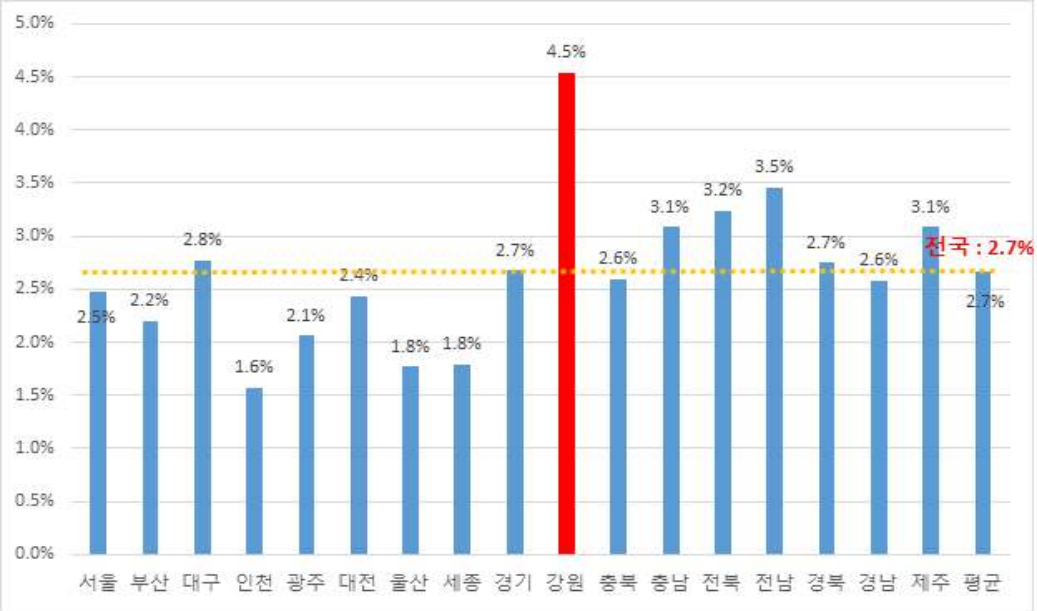

[그림 3-3] 시도별 가업승계 비율

❍ 강원도 창업형태 중에서 가업승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4.5%로 나타남

4) 사업장 이전 경험 및 사유

<표 3-11> 사업장이전 경험여부

행정구역	예	아니요	전체
서울	26.4%	73.6%	100.0%
부산	23.5%	76.5%	100.0%
대구	26.6%	73.4%	100.0%
인천	26.8%	73.2%	100.0%
광주	28.9%	71.1%	100.0%
대전	23.9%	76.1%	100.0%
울산	22.0%	78.0%	100.0%
세종	20.0%	80.0%	100.0%
경기	27.9%	72.1%	100.0%
강원	28.7%	71.3%	100.0%
충북	22.8%	77.2%	100.0%
충남	26.0%	74.0%	100.0%
전북	22.6%	77.4%	100.0%
전남	24.4%	75.6%	100.0%
경북	24.7%	75.3%	100.0%
경남	27.0%	73.0%	100.0%
제주	29.0%	71.0%	100.0%
전체	25.6%	7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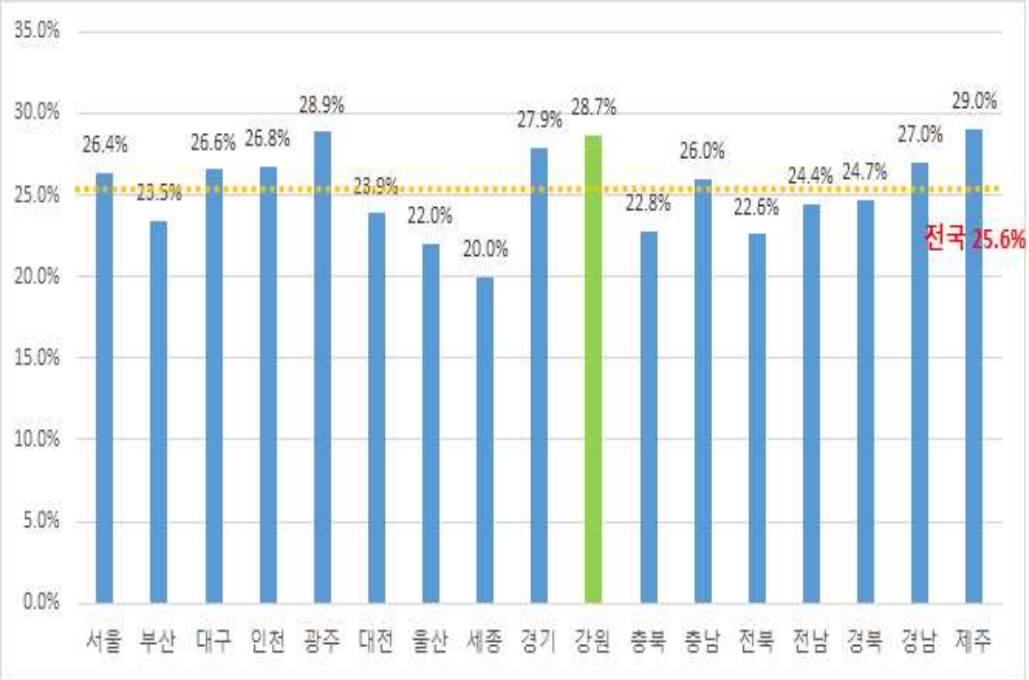

[그림 3-4] 시도별 사업장이전 경험 비교

❍ 강원도 소상공인의 사업장 이전을 경험한 경우는 전국 25.6%보다 높은 28.7%로 나타남

❍ 이는 제주 29.0%, 광주 28.9%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표 3-12> 사업장이전 사유

행정 구역	사업확장	상권쇠퇴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임대료 부담	철거, 재건축 등	기타	전체
서울	29.1%	9.9%	10.0%	35.0%	7.7%	8.4%	100.0%
부산	32.9%	10.6%	11.7%	26.6%	10.0%	8.2%	100.0%
대구	32.3%	10.1%	10.4%	32.6%	9.7%	4.8%	100.0%
인천	40.4%	11.2%	10.3%	24.4%	9.0%	4.8%	100.0%
광주	41.7%	10.6%	11.7%	25.2%	5.4%	5.4%	100.0%
대전	44.1%	11.1%	11.4%	22.7%	5.3%	5.3%	100.0%
울산	44.3%	15.8%	6.2%	27.2%	4.1%	2.3%	100.0%
세종	43.9%	11.8%	10.4%	21.2%	2.4%	10.4%	100.0%
경기	35.9%	10.3%	10.7%	26.9%	8.7%	7.5%	100.0%
강원	**47.7%**	**10.7%**	**5.9%**	**21.5%**	**7.0%**	**7.2%**	**100.0%**
충북	49.0%	9.7%	9.0%	24.5%	3.9%	3.9%	100.0%
충남	46.9%	10.8%	9.3%	21.5%	5.8%	5.7%	100.0%
전북	51.3%	8.5%	10.7%	18.3%	6.7%	4.5%	100.0%
전남	44.4%	12.8%	10.8%	21.2%	6.1%	4.7%	100.0%
경북	44.6%	12.5%	8.1%	24.1%	5.6%	5.2%	100.0%
경남	42.0%	9.8%	12.6%	23.5%	5.1%	7.0%	100.0%
제주	37.4%	8.3%	13.6%	27.5%	3.9%	9.2%	100.0%
전체	40.6%	10.7%	10.2%	25.6%	6.7%	6.3%	100.0%

❍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사유는 사업확장 40.6%, 임대료 부담 25.6%, 상권쇠퇴 10.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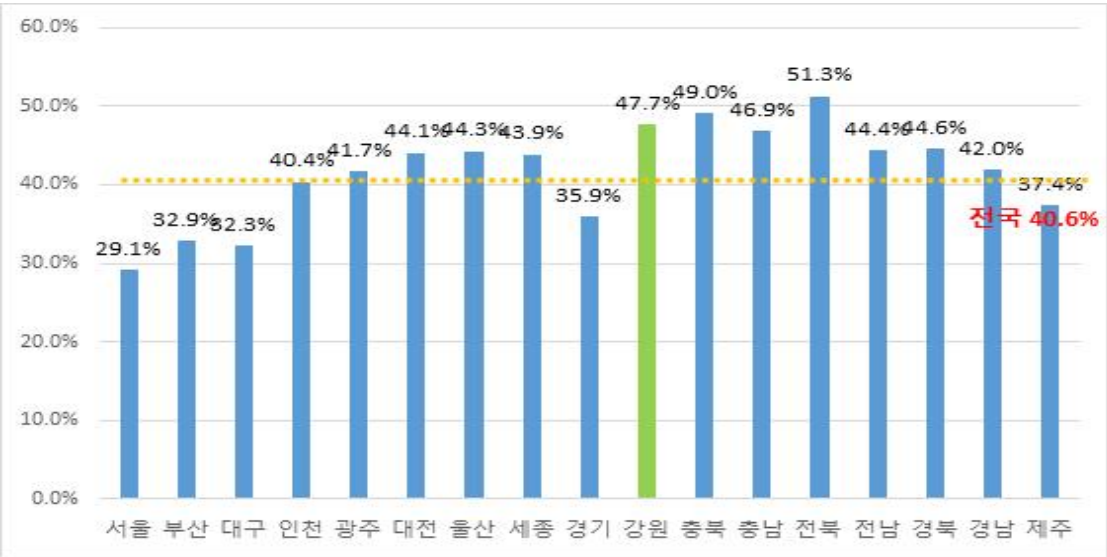

[그림 3-5] 소상공인 사업장이전 사유중 '사업확장'항목 시도별 비교

❍ 강원도 소상공인의 사업장 이전 사유 중에서 사업확장이 47.7%로 나타남

❍ 이는 전국 40.6%보다 높은 수치로, 전북 51.3%, 충북 49.0%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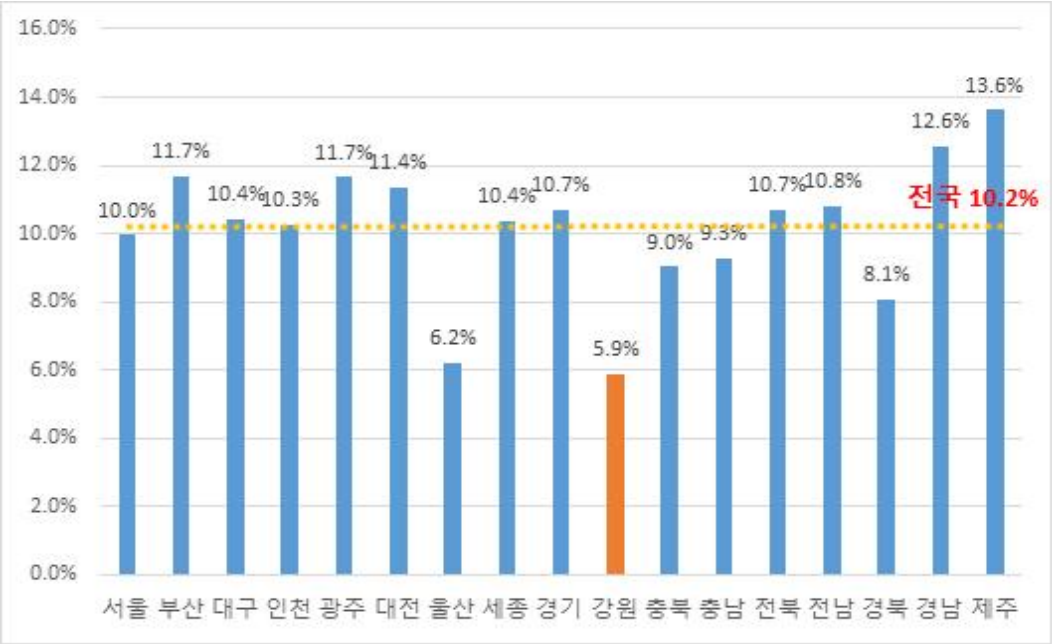

[그림 3-6] 소상공인 사업장이전 사유중 '임대료 부담'항목 시도별 비교

❍ 강원도 소상공인의 사업장 이전 사유 중에서 상권쇠퇴 5.9%로 전국에서 가장 낮는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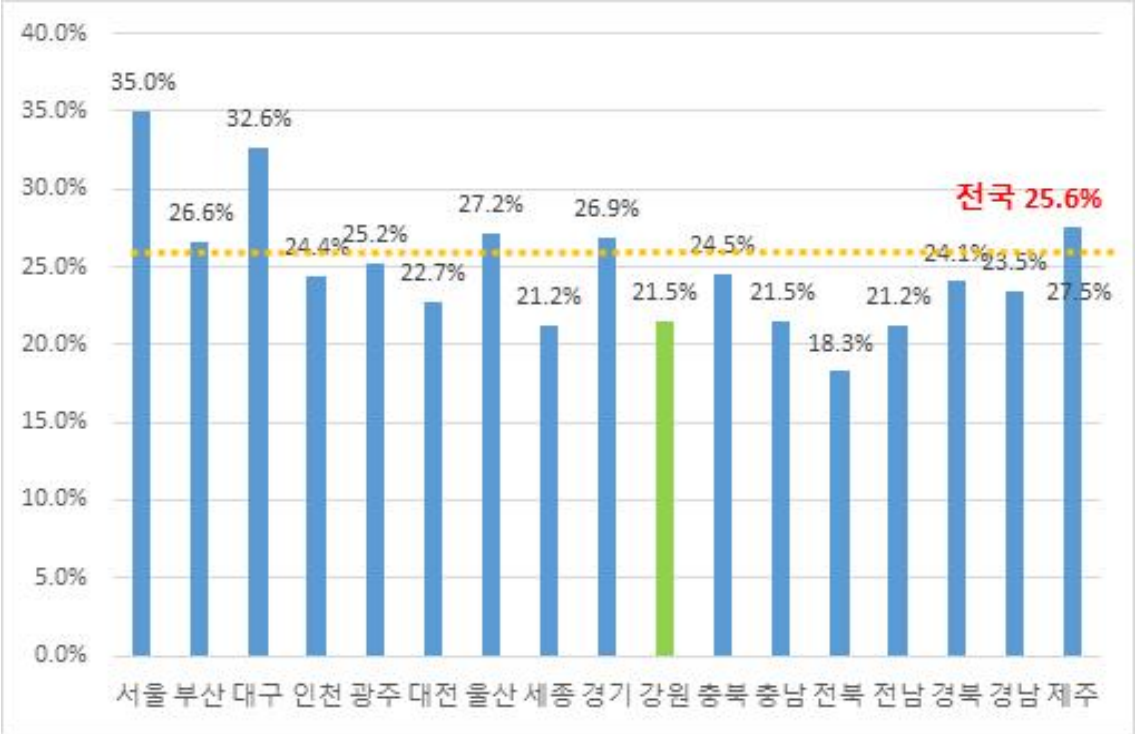

[그림 3-7] 소상공인 사업장이전 사유중 '사업확장'항목 시도별 비교

❍ 강원도 소상공인의 사업장 이전 사유 중에서 임대료 부담이 21.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25.6%보다 낮은 수치로, 전북 18.3%, 세종 21.2%를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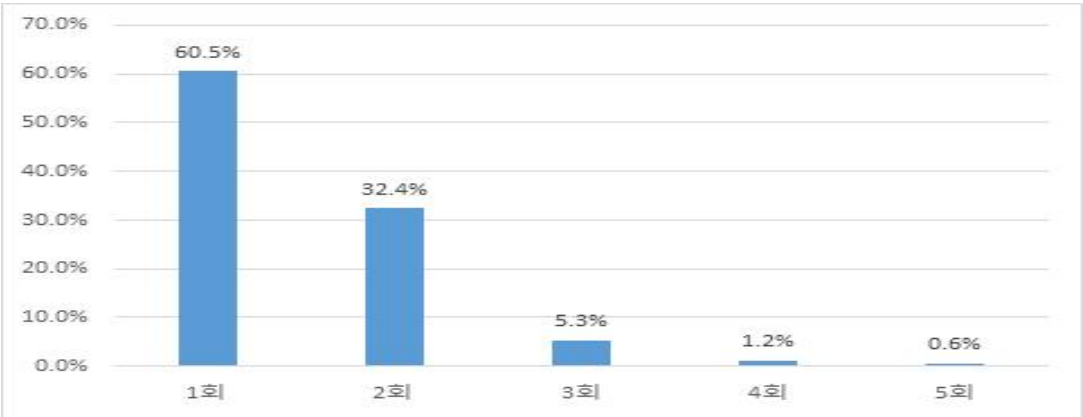

[그림 3-8] 창업횟수

❍ 강원도 소상공인의 창업횟수는 1회 60.5% 2회 32.4% 3회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3> 창업횟수별 사업장이전 사유

창업횟수 / 이전사유	1회	2회	3회	4회	5회	전체
사업확장	140(45.5%)	97(53.0%)	17(41.5%)	3(37.5%)	2(66.7%)	259(47.7%)
상권쇠퇴	28(9.1%)	21(11.5%)	7(17.1%)	2(25.0%)	0(0.0%)	58(10.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21(6.8%)	10(5.5%)	0(0.0%)	0(0.0%)	1(33.3%)	32(5.9%)
임대료 부담	75(24.4%)	31(16.9%)	9(22.0%)	2(25.0%)	0(0.0%)	117(21.5%)
철거, 재건축 등	25(8.1%)	10(5.5%)	3(7.3%)	0(0.0%)	0(0.0%)	38(7.0%)
기타	19(6.2%)	14(7.7%)	5(12.2%)	1(12.5%)	0(0.0%)	39(7.2%)
전체	308 (100.0%)	183 (100.0%)	41 (100.0%)	8 (100.0%)	3 (100.0%)	5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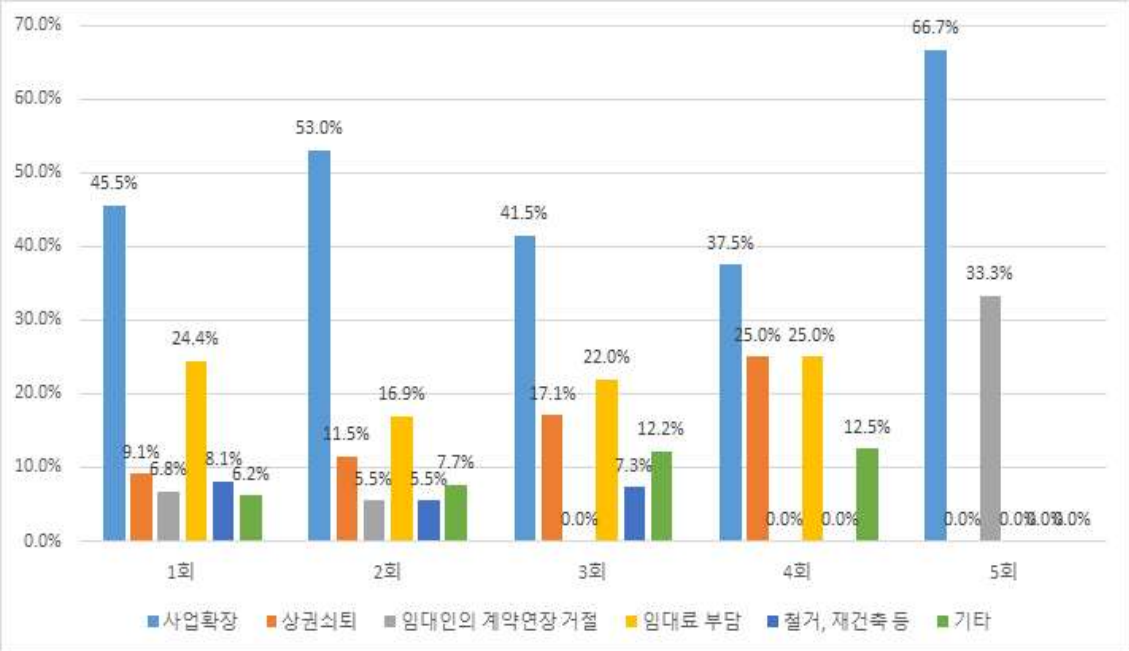

[그림 3-9] 창업횟수별 사업장이전 사유

❍ 강원도 소상공인의 창업 3회 이하인 사업장의 주요 사업장이전 사유에 대해서 사업확장, 임대료 부담, 상권쇠퇴으로 나타남

❍ 또한 창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이전 사유 중에 상권쇠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4회차와 5회차는 자료의 수로 인해 제외함)를 나타남

❍ 창업 회차별 세부적인 사업장이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창업 1회차의 경우는 사업확장 45.5%, 임대료부담 24.4%, 상권쇠퇴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2회차인 경우는 사업확장 53.0%, 임대료 부담 16.9%, 상권쇠퇴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창업 3회차인 경우는 사업확장 41.5% 임대료 부담 22.0% 상권쇠퇴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 창업 현황

1) 창업 동기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수입이 더 많을 거 같아서	기타	전체
19(2.8%)	442(65.1%)	200(29.5%)	18(2.7%)	67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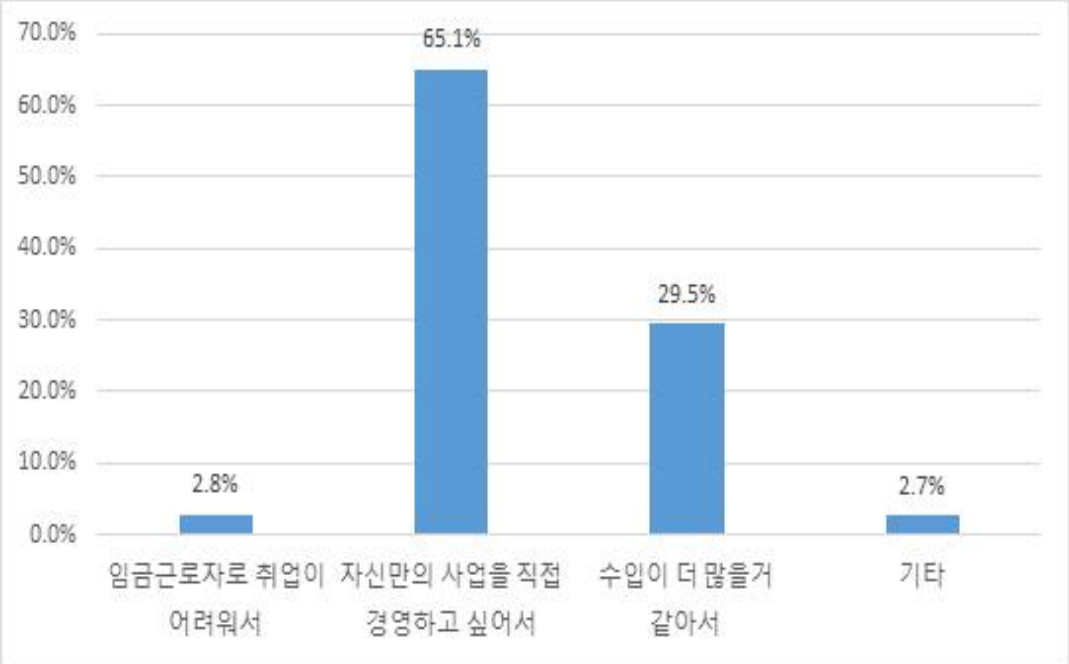

[그림 3-10] 창업 동기

❍ 강원도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65.1%, 수업이 더 많을 거 같아서 29.5%,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창업준비활동 여부 및 중요도

<표 3-14> 시도별 창업준비활동 여부

행정구역	사업계획서작성	시장조사	동종업종종사경험	창업교육
서울	687(53.1%)	928(71.7%)	913(70.5%)	376(29.0%)
부산	471(46.0%)	763(74.4%)	714(69.7%)	276(26.9%)
대구	401(49.2%)	567(69.6%)	561(68.8%)	221(27.1%)
인천	425(52.5%)	571(70.5%)	600(74.1%)	255(31.5%)
광주	340(42.3%)	512(63.7%)	494(61.4%)	219(27.2%)
대전	372(52.8%)	476(67.5%)	446(63.3%)	177(25.1%)
울산	322(48.6%)	447(67.4%)	411(62.0%)	192(29.0%)
세종	261(41.9%)	438(70.3%)	487(78.2%)	179(28.7%)
경기	630(44.9%)	946(67.5%)	944(67.3%)	353(25.2%)
강원	374(55.1%)	464(68.3%)	448(66.0%)	227(33.4%)
충북	372(44.2%)	535(63.6%)	560(66.6%)	202(24.0%)
충남	497(54.5%)	668(73.2%)	642(70.4%)	278(30.5%)
전북	441(49.7%)	623(70.2%)	598(67.4%)	306(34.5%)
전남	411(53.5%)	546(71.1%)	496(64.6%)	261(34.0%)
경북	433(49.7%)	610(70.0%)	556(63.8%)	202(23.2%)
경남	494(51.8%)	668(70.0%)	621(65.1%)	277(29.0%)
제주	277(43.4%)	401(62.9%)	377(59.1%)	168(26.3%)
전체	7,208(49.1%)	10,163(69.2%)	9,868(67.2%)	4,169(28.4%)

❍ 전국 소상공인의 창업준비활동에 대한 여부는 시장조사 69.2%, 동종업종종사경험 67.2%, 사업계획서작성 49.1%, 창업교육 28.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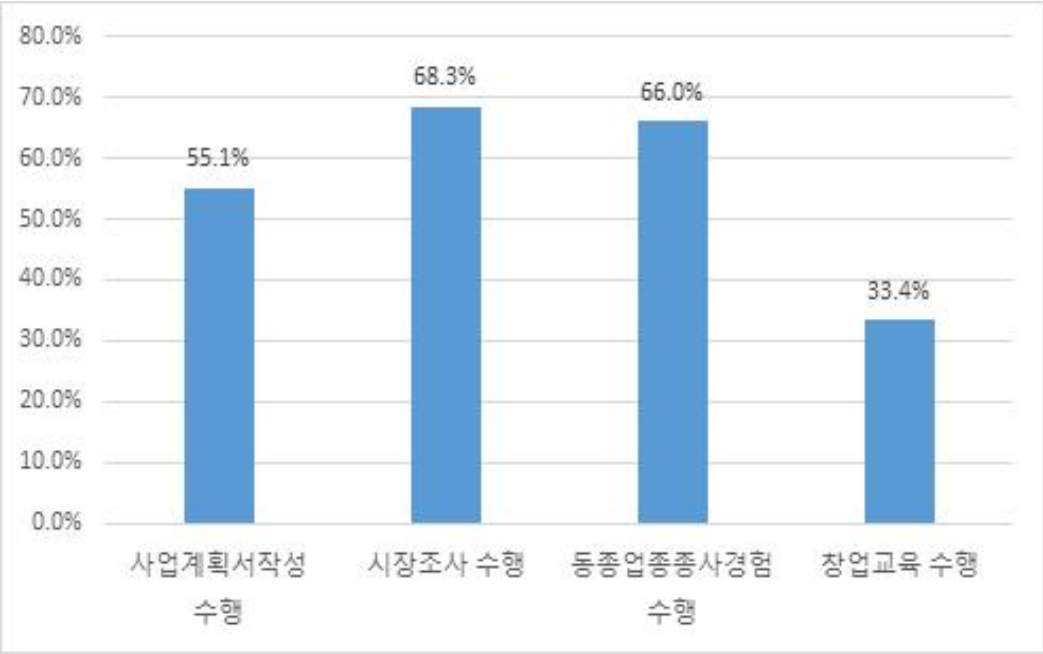

[그림 3-11] 창업준비활동 여부

❍ 강원도 소상공인의 창업준비활동에 대한 수행 여부는 시장조사 68.3%, 동종업종 종사경험 66.0%, 사업계획서작성 55.1%, 창업교육 33.4% 순으로 나타남

<표 3-15> 창업준비활동의 중요도

창업활동			중요도					전체
내용	평균	표준편차	0% (전혀중요하지않음)	25% (중요하지않음)	50% (보통)	75% (중요함)	100% (매우중요함)	
사업계획서작성	3.5	1.2	49(7.2%)	76(11.2%)	190(28.0%)	187(27.5%)	177(26.1%)	679(100%)
시장조사	3.9	1.1	29(4.3%)	39(5.7%)	144(21.2%)	200(29.5%)	267(39.3%)	679(100%)
동종업종종사경험	3.9	1.1	35(5.2%)	43(6.3%)	149(21.9%)	185(27.2%)	267(39.3%)	679(100%)
창업교육	3.1	1.2	88(13.0%)	124(18.3%)	221(32.5%)	148(21.8%)	98(14.4%)	679(100%)

❍ 강원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창업준비활동의 중요성을 5점 만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장조사 및 동종종사경험이 평균 3.9점, 사업계획서작성 3.5점, 창업교육 3.1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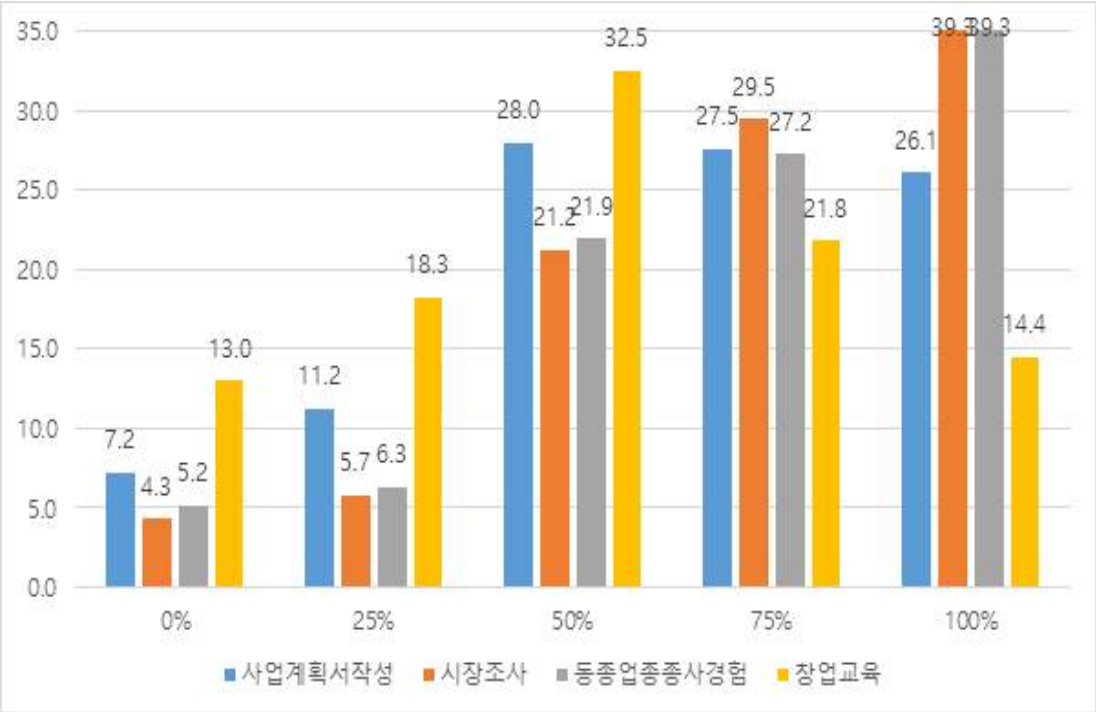

[그림 3-12] 창업준비활동의 중요도

❍ 강원도 소상공인이 각각의 창업준비활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매주 중요하다(100%)는 시장조사와 동종종사경험 39.3%, 사업계획서작성 26.1%, 창업교육 14.5%로 나타났으며, 중요하다(75%)는 시장조사 29.5%, 사업계획서작성 27.5%, 동종업종종사경험 27.2%, 창업교육 21.8%로 나타남

<표 3-16> 창업 시 어려운 점

(N=679)	창업 시 어려운 점						
	입지선정	업종선택	자금조달	기술확보	인력확보	행정절차	경영방법
평균	2.9	2.6	3.5	2.9	3.0	2.8	3.0
표준편차	1.2	1.2	1.2	1.3	1.3	1.1	1.1

❍ 강원도 소상공인이 창업 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자금조달 3.5점, 인력확보 및 경영방법 3.0점, 기술확보 및 입지선정 2.9점, 행정절차 2.8점, 업종선택 2.6점 순으로 나타남

3)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

<표 3-17> 시도별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

행정 구역	N	총 창업비용		창업 본인 부담금		총창업비용 대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총창업비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1,295	104.1	318.3	75.0	94.0	72.0
부산	1,025	119.7	217.5	80.9	108.4	67.6
대구	815	100.7	140.6	75.2	85.7	74.7
인천	810	123.5	328.4	87.9	143.2	71.2
광주	804	132.2	262.0	85.7	137.3	64.8
대전	705	103.1	123.0	77.2	86.5	75.0
울산	663	118.8	192.5	83.6	110.1	70.4
세종	623	156.0	444.4	112.0	242.7	71.8
경기	1,402	129.6	251.5	88.1	130.3	68.0
강원	679	148.6	294.9	98.3	184.4	66.2
충북	841	167.2	399.7	109.6	237.6	65.5
충남	912	130.2	344.1	90.2	222.4	69.3
전북	887	169.7	422.0	101.3	179.6	59.7
전남	768	149.5	316.2	95.9	160.7	64.1
경북	871	151.0	318.5	96.0	155.6	63.6
경남	954	158.8	301.4	96.6	144.8	60.8
제주	638	143.5	255.0	102.3	142.1	71.3
전체	14,692	134.5	302.4	90.5	155.3	67.3

❍ 총 창업비용 대비 본인 부담금은 전국 67.3%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74.7%, 부산 74.7%, 서울 7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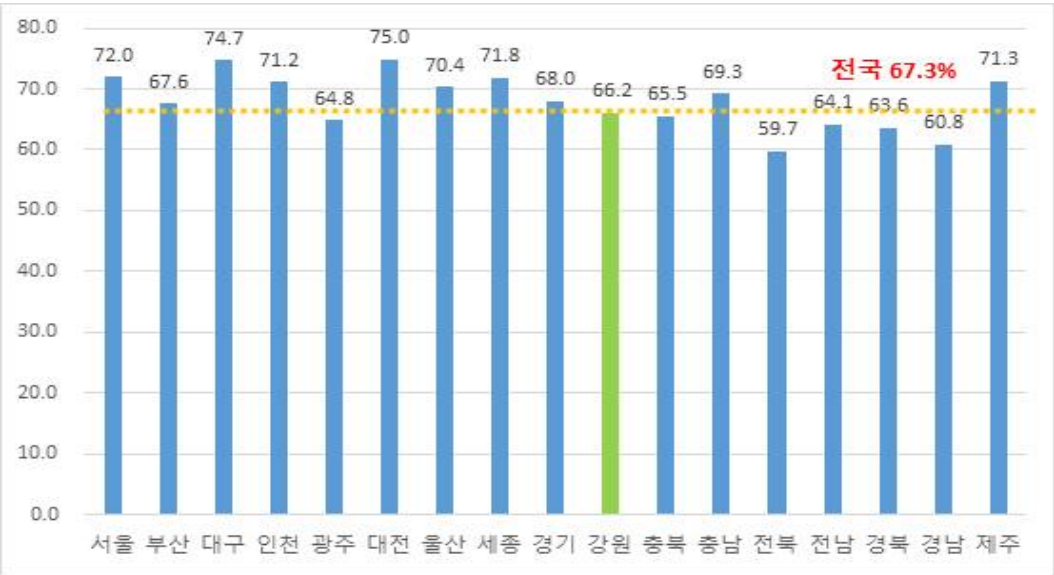

[그림 3-13] 시도별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

❍ 강원도 소상공인의 경우 총 창업비용 대비 본인 부담금이 66.2%로 나타나 전극 67.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소상공인 경영현황

1) 사업장 점유형태

<표 3-18> 시도별 사업장 점유형태

행정구역	소유	임차(전대차 포함)	전체
서울	439(11.7%)	3,325(88.3%)	3,764(100%)
부산	691(24.9%)	2,080(75.1%)	2,771(100%)
대구	565(25.7%)	1,636(74.3%)	2,201(100%)
인천	456(22.4%)	1,579(77.6%)	2,035(100%)
광주	579(29.1%)	1,413(70.9%)	1,992(100%)
대전	460(25.5%)	1,346(74.5%)	1,806(100%)
울산	477(27.2%)	1,277(72.8%)	1,754(100%)
세종	316(29.8%)	745(70.2%)	1,061(100%)
경기	796(22.7%)	2,717(77.3%)	3,513(100%)
강원	643(34.0%)	1,250(66.0%)	1,893(100%)
충북	693(33.9%)	1,349(66.1%)	2,042(100%)
충남	746(33.3%)	1,493(66.7%)	2,239(100%)
전북	953(39.0%)	1,488(61.0%)	2,441(100%)
전남	892(42.8%)	1,191(57.2%)	2,083(100%)
경북	970(40.4%)	1,432(59.6%)	2,402(100%)
경남	961(35.9%)	1,717(64.1%)	2,678(100%)
제주	453(30.4%)	1,038(69.6%)	1,491(100%)
전체	11,090(29.1%)	27,076(70.9%)	38,166(100%)

❍ 소상공인의 사업장 점유형태는 임차 70.9%, 소유 29.1%로 나타났으며, 소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전남 42.5%, 경북 40.4%, 전북 39.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임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서울 88.3%, 인천 77.6%, 경기 7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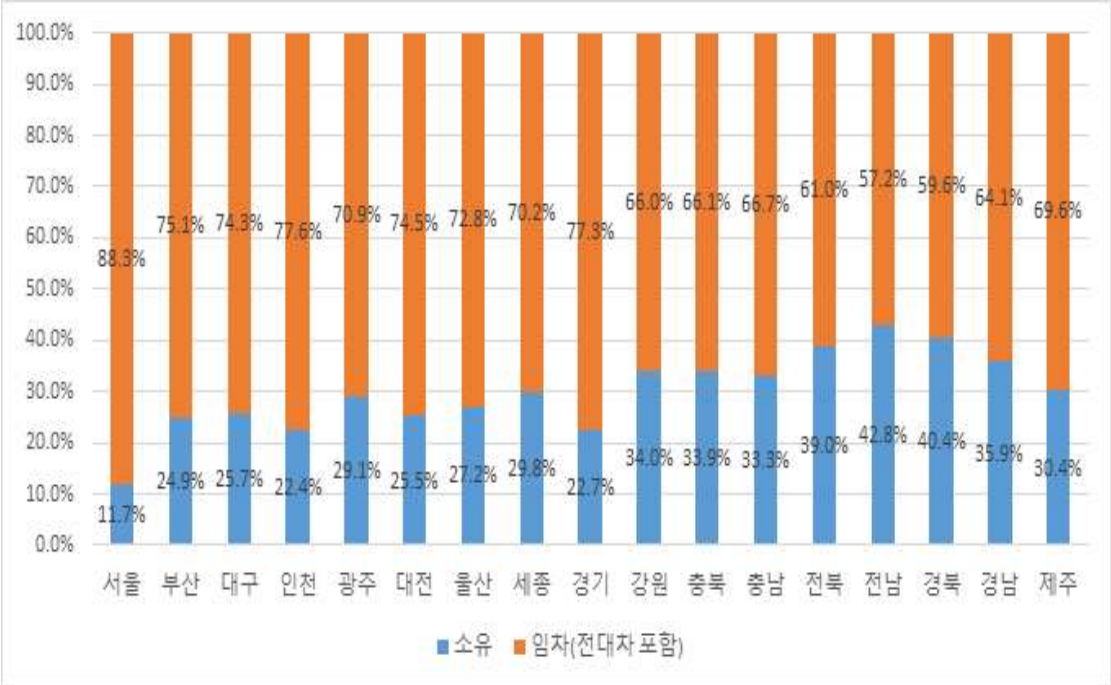

[그림 3-14] 시도별 사업장 점유형태

❍ 강원도의 소상공인의 사업장 점유형태는 소유 66.0%로 전국 70.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임대 34.0%로 전국 29.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2) 사업운영시 애로사항

<표 3-19>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 N(%)

상권쇠퇴	동일 업종 경쟁심화	원재료비·재료매입비	최저임금영향(인건비)	보증금·월세	부채상환	인력관리(채용의 어려움 등)	기타
662(35.0%)	828(43.7%)	534(28.2%)	394(20.8%)	150(7.9%)	289(15.3%)	299(15.8%)	52(2.7%)

[그림 3-15]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 N(%)

❍ 강원도 소상공인이 사업체 운영시 애로사항은 동일업종경쟁심화 43.7%, 상권쇠퇴 35.0%, 원재료비·재료 매입비 28.2%, 최저임금영향 20.8%, 인력관리 15.8%, 부채상환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 및 사업전환

1) 정부의 지원정책 경험여부 및 필요정책

지원받음	신청하지 않음	신청하였으나 지원 받지 못함	전체
1,034(54.6%)	799(42.2%)	60(3.2%)	1,89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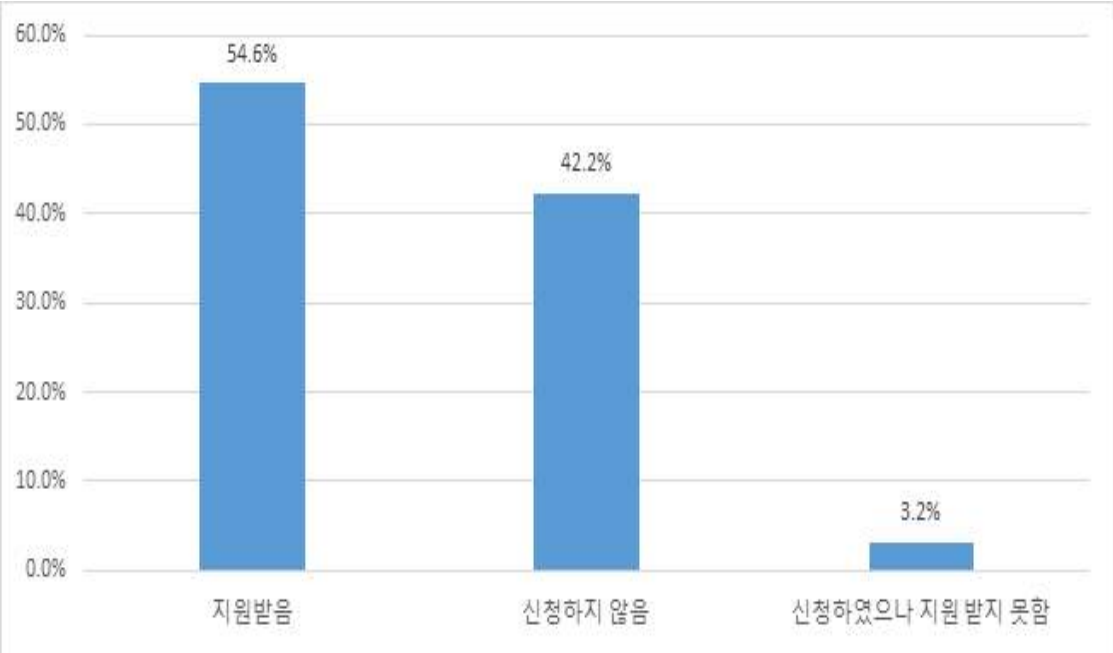

[그림 3-16] 정부지원정책 지원경험 여부

❍ 강원도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받은 경우 54.%, 신청을 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3.2%, 신청하지 않은 경우 42.4%로 나타남

<표 3-20> 정부의 지원정책 (다중응답) : N(%)

자금지원	인력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보화지원	퇴로지원	기타
1,368(72.3%)	308(16.3%)	987(52.1%)	73(3.9%)	359(19.0%)	152(8.0%)	47(2.5%)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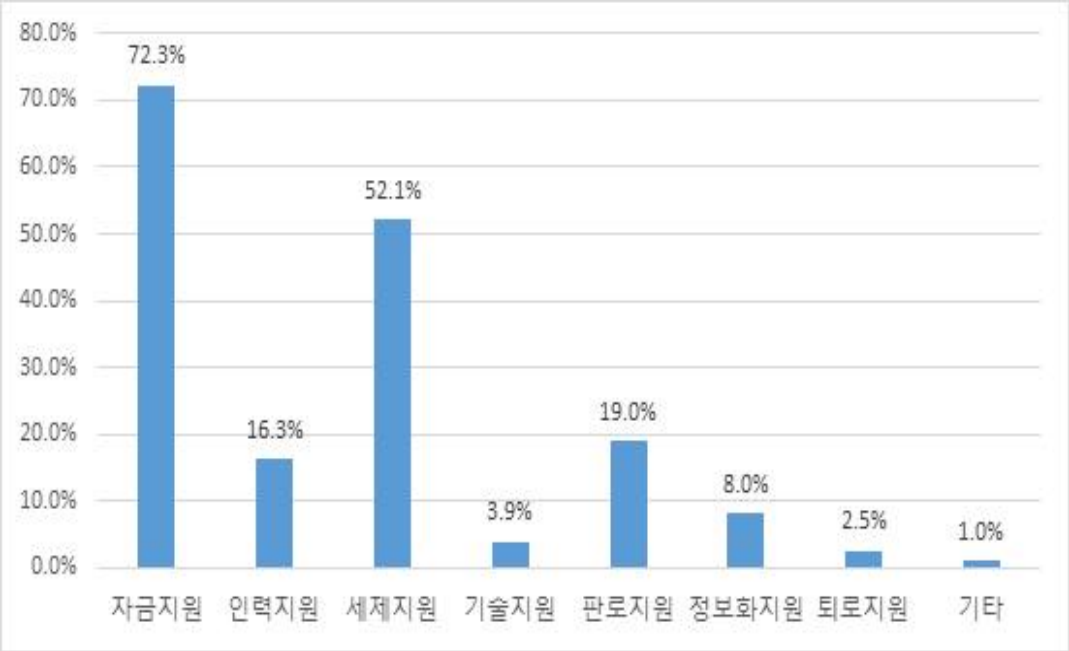

[그림 3-17] 정부의 지원정책 (다중응답) : N(%)

○ 강원도 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자금지원 72.3%, 세제지원 52.1%, 판로지원 19.0%, 인력지원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1> 창업형태별 정부의 지원정책

창업형태 / 지원정책	신규창업 (현 사업체를 처음 설립)	인수창업 (현 사업체의 운영·소유권 인수)	가업승계 (현 사업체를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인수)
자금지원	1131(71.8%)	171(73.7%)	66(76.7%)
인력지원	264(16.8%)	31(13.4%)	13(15.1%)
세제지원	823(52.3%)	125(53.9%)	39(45.3%)
기술지원	58(3.7%)	10(4.3%)	5(5.8%)
판로지원	299(19%)	33(14.2%)	27(31.4%)
정보화지원	131(8.3%)	17(7.3%)	4(4.7%)
퇴로지원	40(2.5%)	6(2.6%)	1(1.2%)
기타	16(1%)	1(0.4%)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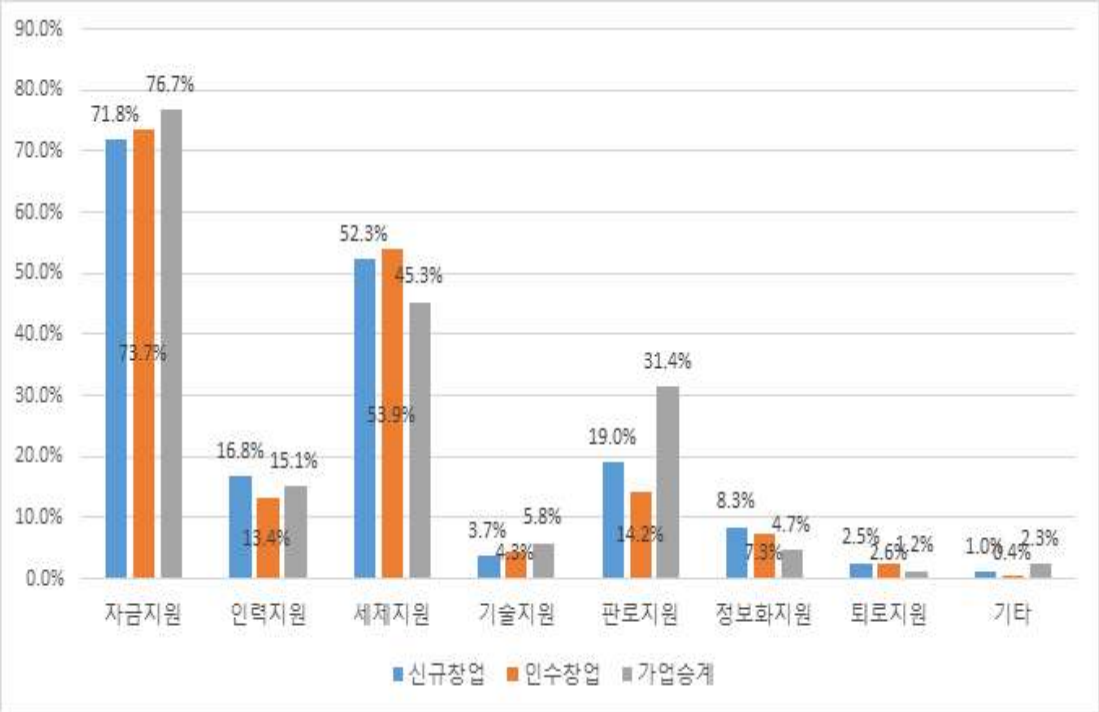

[그림 3-18] 창업형태별 정부의 지원정책

❍ 강원도 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창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신규창업의 경우는 자금지원 71.8%, 세제지원 52.3%, 판로지원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수창업의 경우는 자금지원 73.7%, 세제지원 53.9%, 판로지원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업승계의 경우는 자금지원 76.7%, 세제지원 45.3%, 판로지원 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지원과 판로지원의 경우 다른 창업형태(신규창업, 인수창업)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2) 노후준비

<표 3-22> 노후준비

노후준비내용	강원도 : N(%)	전체 : N(평균%)
연금(국민·공적·개인·퇴직연금 등)	1,370(72.4%)	25,677(67.3%)
부동산(토지, 건물 등)	418(22.1%)	6,930(18.8%)
투자(주식, 채권 등)	72(3.8%)	1,390(3.6%)
저축(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807(42.6%)	13,315(35.3%)
기타	2(0.1%)	63(0.1%)
없음	240(12.7%)	6,859(17.6%)

❍ 전체 소상공인의 노후준비는 연금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저축 35.3%, 부동산 18.8% 등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없는 경우도 17.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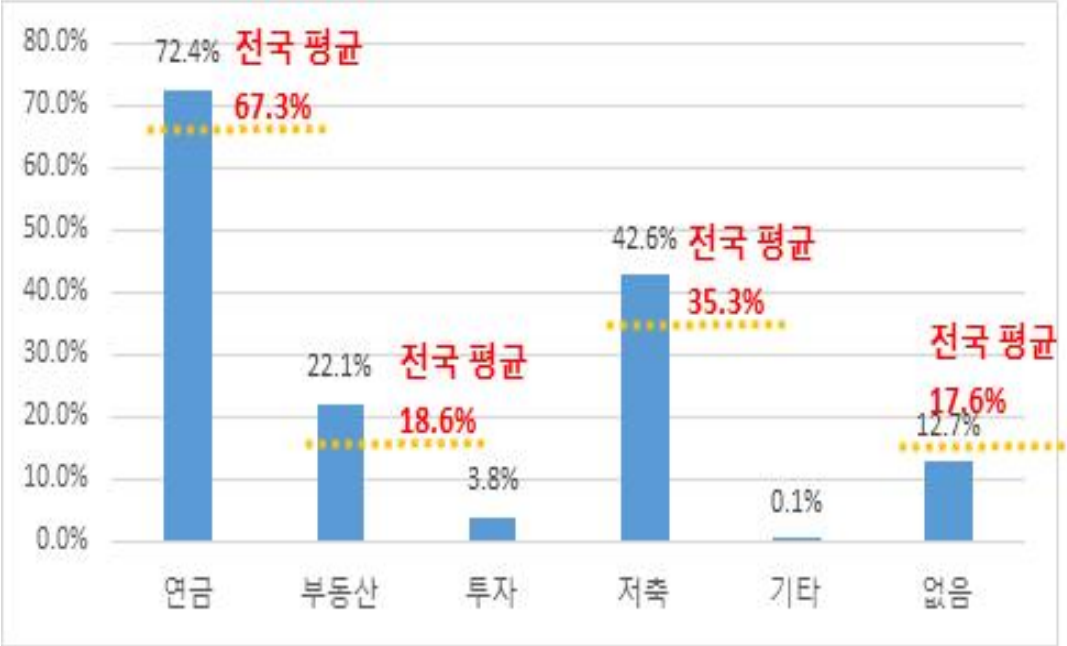

[그림 3-19] 노후준비

❍ 강원도 소상공인은 노후를 위해 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연금 72.4%, 저축 42.6%, 부동산 22.1%로 각각의 전국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12.7%로 나타남

2.3. 코로나 19 2020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시사점

<표 3-23 > 조사설계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국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광업, 제조업, 건설업 제외)
조사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정도가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
표본크기	1,018개 사업체
표본추출방법	임의추출(purposive sampling)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survey)
조사기간	2020년 10월 19일 ~ 11월 5일(18일간)

2.3.1 코로나19와 일상생활 영향 정도[25)]

❍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아주+약간) 받았다’ 95.6%, ‘(전혀+별로) 받지 않았다’ 1.0% 등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정도는 4.50점(5점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의 1.54배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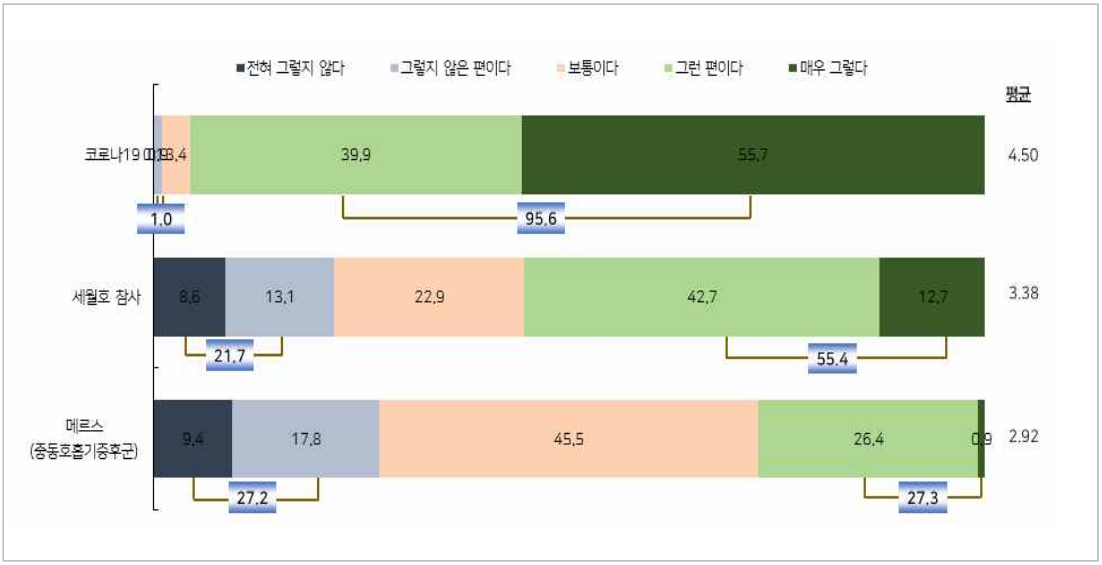

[그림 3-20] 타 재난 대비 코로나19 일상생활 영향 정도

25) 소상공인연합회 2020최종보고서 (실태조사)

2.3.2 코로나19와 일상생활 방해 정도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된다’(93.7%)거나 ‘사회/여가생활에 방해가 된다’(88.3%)는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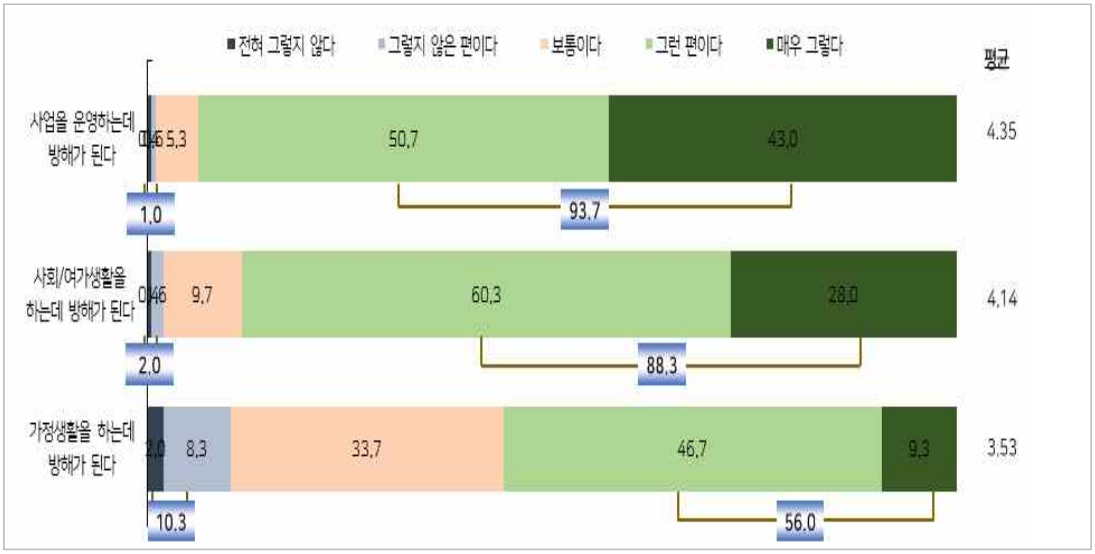

[그림 3-21] 코로나19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

❍ 한편, 일상생활 방해 정도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본 결과, 정상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집계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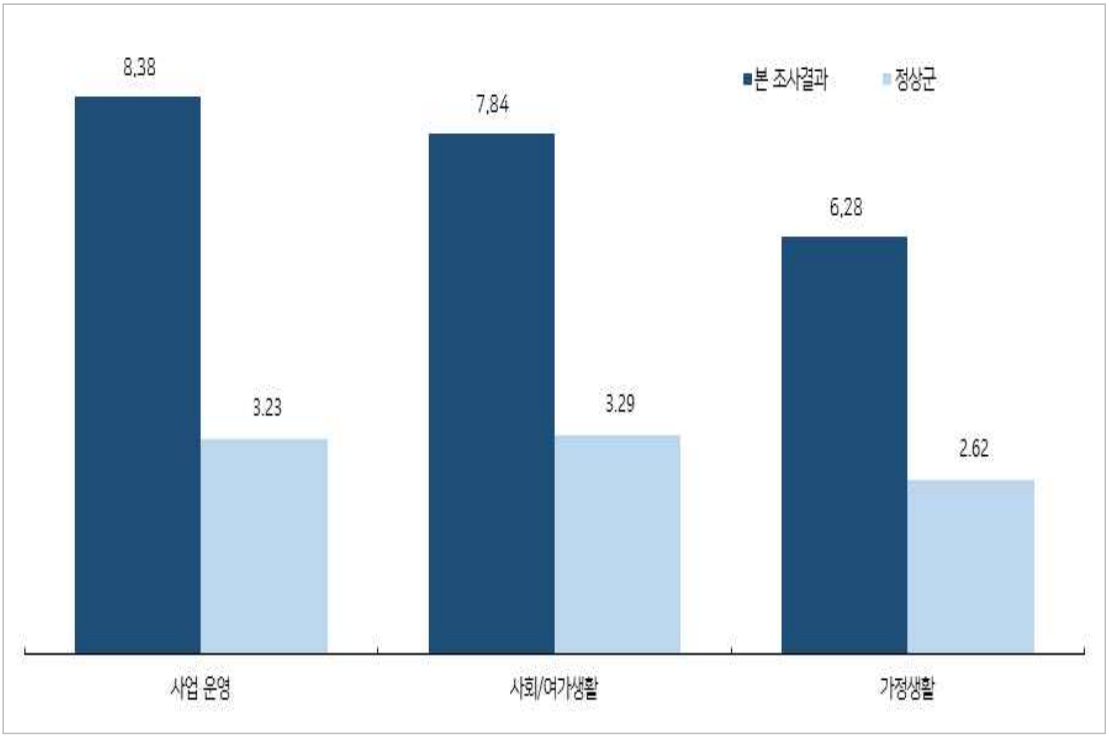

[그림 3-22]코로나19의 일상생활 방해 정도 비교

○ 일상생활 방해 정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 운영, 사회/여가생활, 가정생활 모든 측면에 대해 여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4> 코로나19와 일상생활 방해 정도 비교 (영향 받음 + 아주 많이 영향 받음)

(단위: 점)

구분		사례수	사업 운영	사회/여가생활	가정생활
전체		1,018	8.38	7.84	6.28
업종	도소매업	392	8.19	7.71	6.08
	숙박음식점업	270	8.64	8.06	6.86
	수리기타서비스업	160	8.37	7.72	5.92
	교육서비스업	103	8.16	7.69	6.04
	여가서비스업	93	8.71	8.13	6.38
지역	서울지역	247	8.50	7.98	6.42
	경인지역	181	7.95	7.41	6.37
	충청지역	90	8.33	7.13	7.39
	전라지역	121	9.28	8.70	6.89
	경상지역	279	8.20	7.84	5.68
	강원/제주	100	8.35	7.89	5.76

2.3.3 코로나 이후 측면별 피해 정도

□ **매출 변화**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대비 매출액 측면에서 증감 정도를 파악한 결과, 10곳 중 7개 업체(70.8%)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반응을 보임

○ 반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비율은 0.7%에 그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28.5%에 달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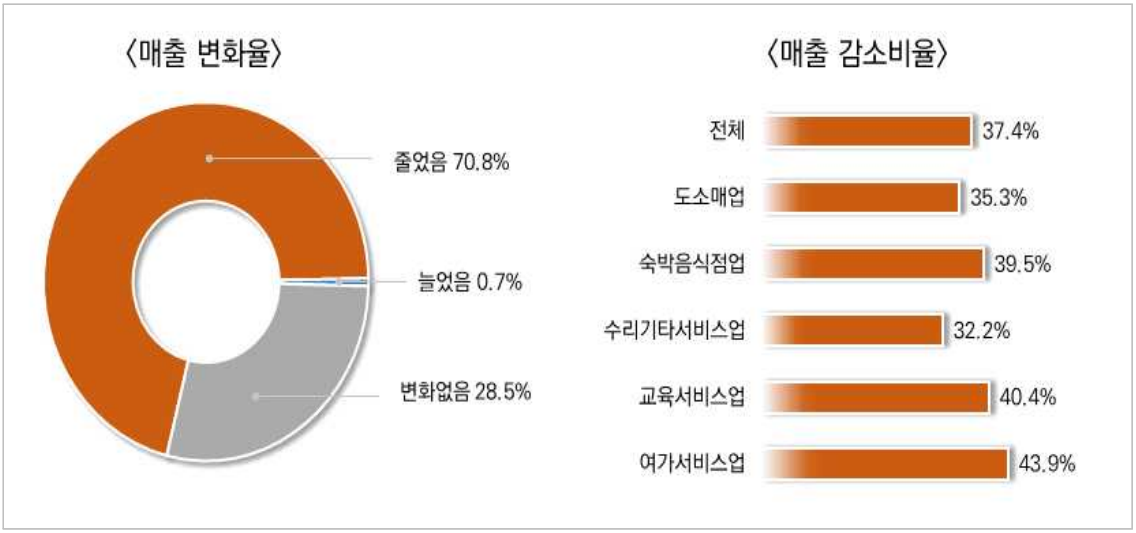

[그림 3-23]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화율 및 감소비율

□ **영업시간 변화**

○ 영업시간 변화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91.4%)에서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감소(8.1%)하거나 증가(0.6%)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매출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노동생산성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물질적 피해만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영업시간 감소 비율은 수리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48.7%)했다는 반응을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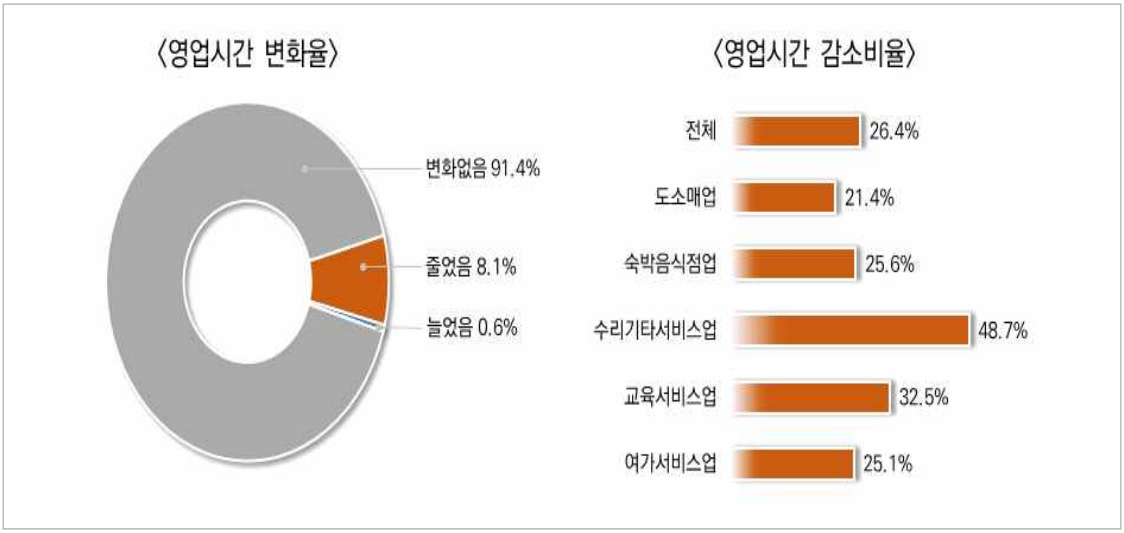

[그림 3-24]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시간 변화율 및 감소비율

□ 영업일수 변화 정도

○ 매출액, 영업시간에 이어 영업일수의 변화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94.9%)가 영업일수에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임

○ 즉,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볼 때 차이는 없으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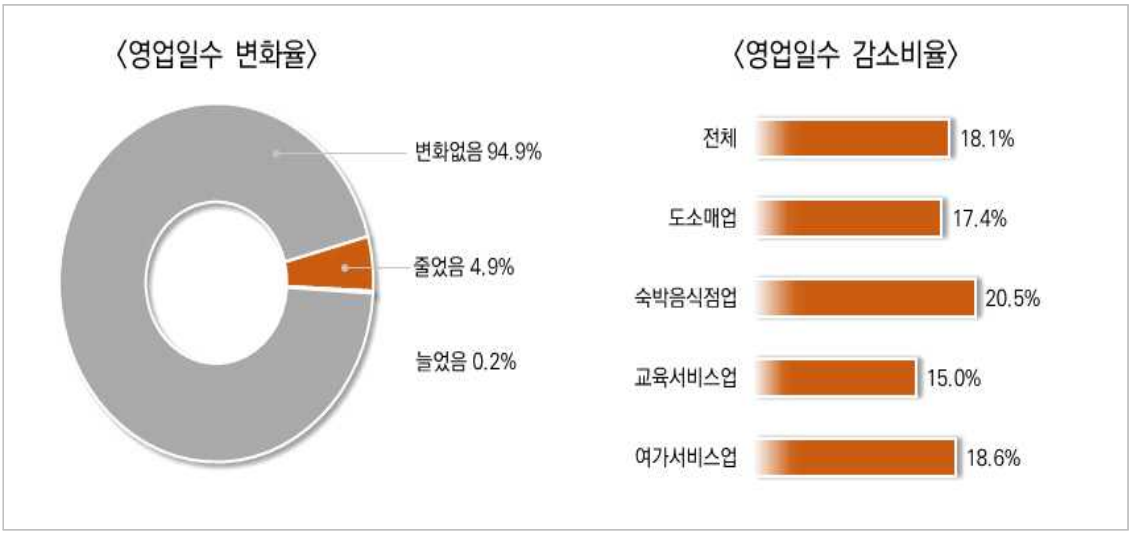

[그림 3-25]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일수 변화율 및 감소비율

2.3.4 사업체 운영

□ **사업체 운영 영향 시기**

❍ 코로나의 확산 주기에 따른 사업체 영향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2월 말 신천지 집단 감염이 7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8월 광복절 집회 등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53.1%로 나타남

❍ 코로나 발발 초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도 30.6%로 적지 않았음

❍ 이에 비해 5월의 이태원 클럽 발 영향(16.0%)이나 현 시점(12.5%)의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발발 초기의 피해 정도가 높은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하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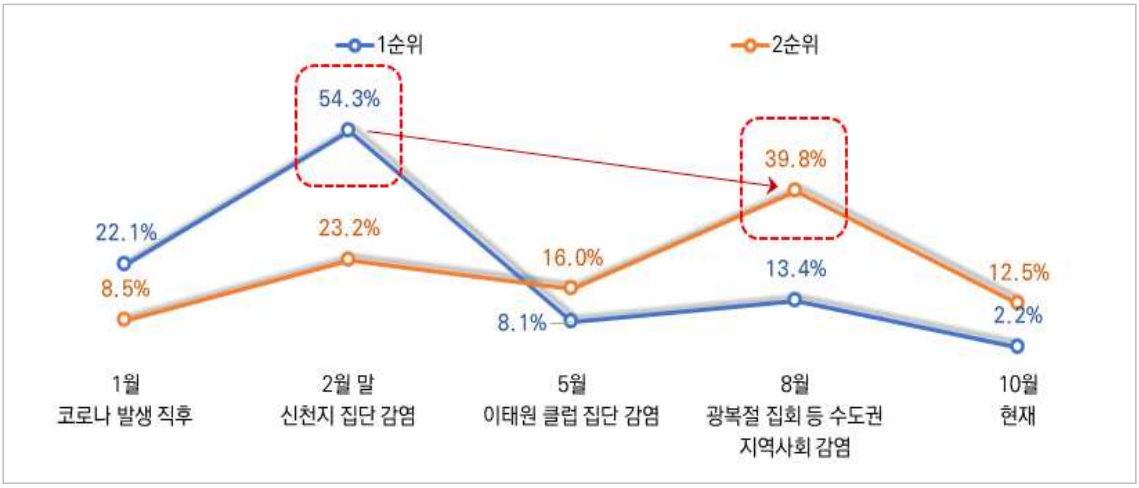

[그림 3-26] 코로나19가 사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친 시기_우선 순위

○ 코로나의 확산 주기에 따른 영향은 코로나 방역 대책의 강화 정도와 비례 경향을 보임

○ 즉 코로나 감염자 수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 조정과 방역 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양상은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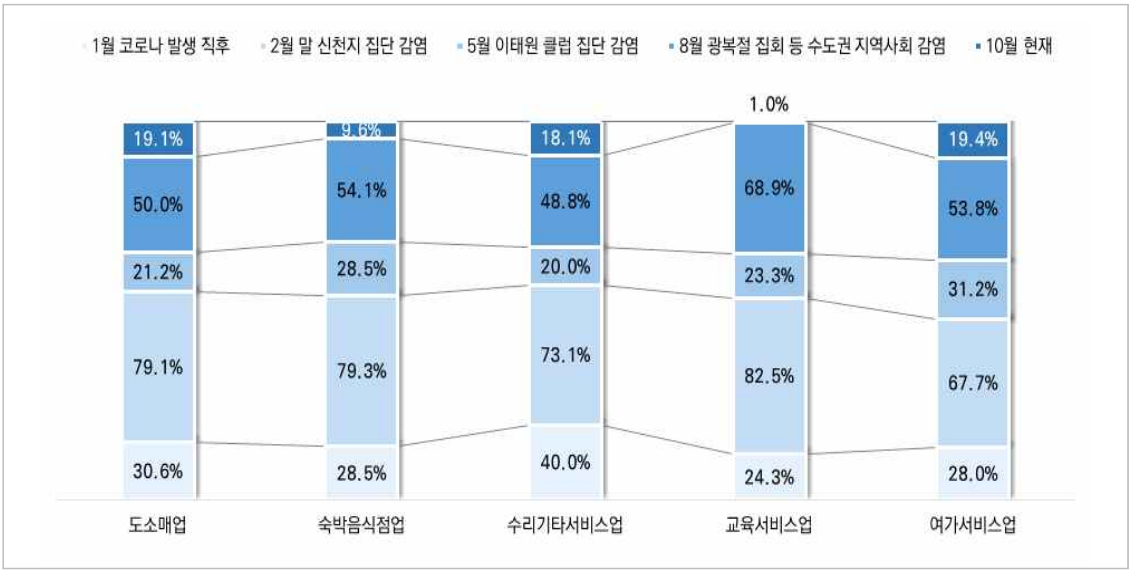

[그림 3-27] 업종별 코로나19가 사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친 시기_종합분석

□ 사업체 고정비용

○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을 질문한 결과, '임대료'가 6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인건비' 54.1%, '각종 세금' 50.6% 등 3개 항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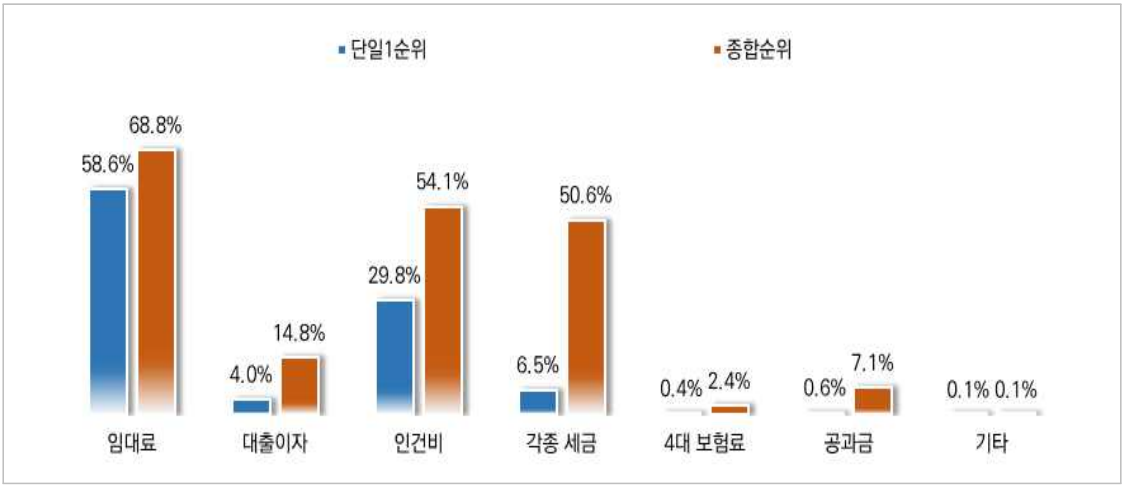

[그림 3-28]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부담이 큰 사업체 고정비용

2.3.5 코로나19 지원사업 신청 여부

□ **코로나19 지원사업 신청 경험**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지원사업 신청 유형과 관련해서는 신청자와 비신청자가 양분되는 양상을 보임

○ 지원사업 신청 사업체의 경우 '지원을 받았다' 43.8%, '지원을 받지 못했다' 10.2%로 지원 혜택을 받은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많음

○ 이에 비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음. 특히 '신청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44.1%에 달해 이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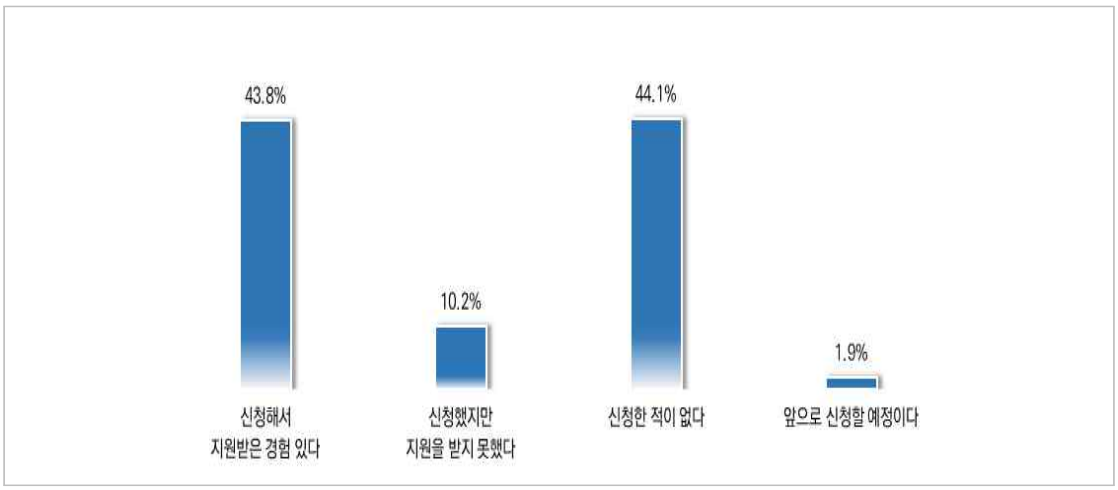

[그림 3-29]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경험

2.3.6 정부 지원정책 수준 평가

□ **지원수준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충분하다' 9.2%, '(전혀) 충분하지 않다' 53.5%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을 유보한 비율도 37.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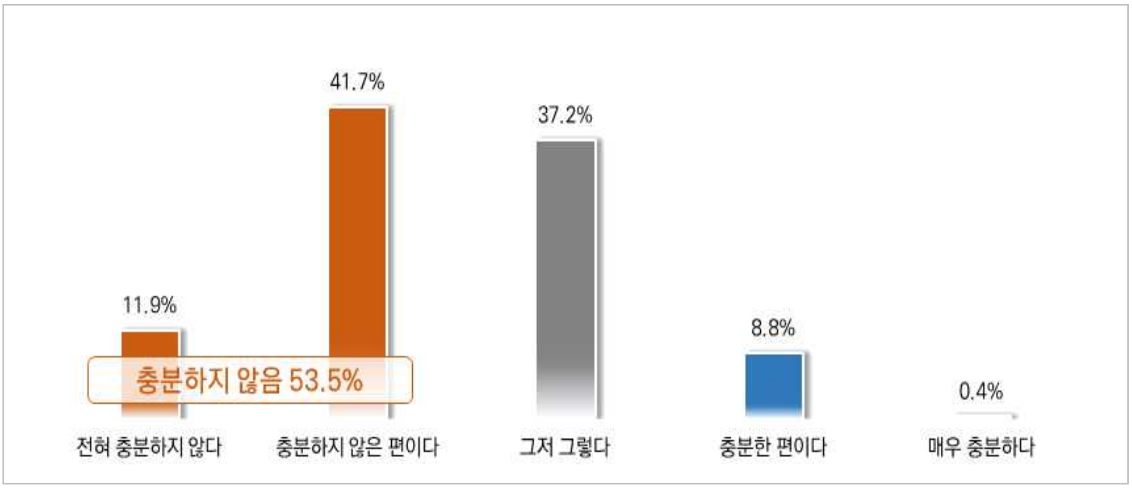

[그림 3-30]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 업종별 정부의 지원 수준은 교육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이나 전라지역의 사업체에서 지원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울지역이나 경상지역 사업체에서는 보통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차이를 보임

<표 3-25>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단위: %)

구분		사례수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		1,018	11.9	41.7	37.2	8.8	0.4
업종	도소매업	392	8.9	40.3	36.5	14.0	0.3
	숙박음식점업	270	17.0	43.7	35.2	4.1	0.0
	수리기타서비스업	160	12.5	29.4	50.6	7.5	0.0
	교육서비스업	103	6.8	62.1	22.3	5.8	2.9
	여가서비스업	93	14.0	39.8	39.8	6.5	0.0
지역	서울지역	247	6.9	34.4	49.4	8.9	0.4
	경인지역	181	9.9	48.1	36.5	5.5	0.0
	충청지역	90	15.6	64.4	13.3	3.3	3.3
	전라지역	121	38.0	42.1	17.4	2.5	0.0
	경상지역	279	0.4	37.6	48.4	13.6	0.0
	강원/제주	100	25.0	38.0	23.0	14.0	0.0

□ 효과적인 지원정책

- ❍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질문한 결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 56.5%, ‘임대료 지원’ 51.2%,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 혜택/감면’ 47.0% 등의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음
- ❍ 반면,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8.6%)이나 ‘소상공인 특화 경기부양 대책 수립’(9.8%)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들은 비교적 단기적 대책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장기적 대책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 ❍ 단기적 대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상당 부분 규모도 영세한 관계로 앞을 염두에 둔 활동보다는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을 더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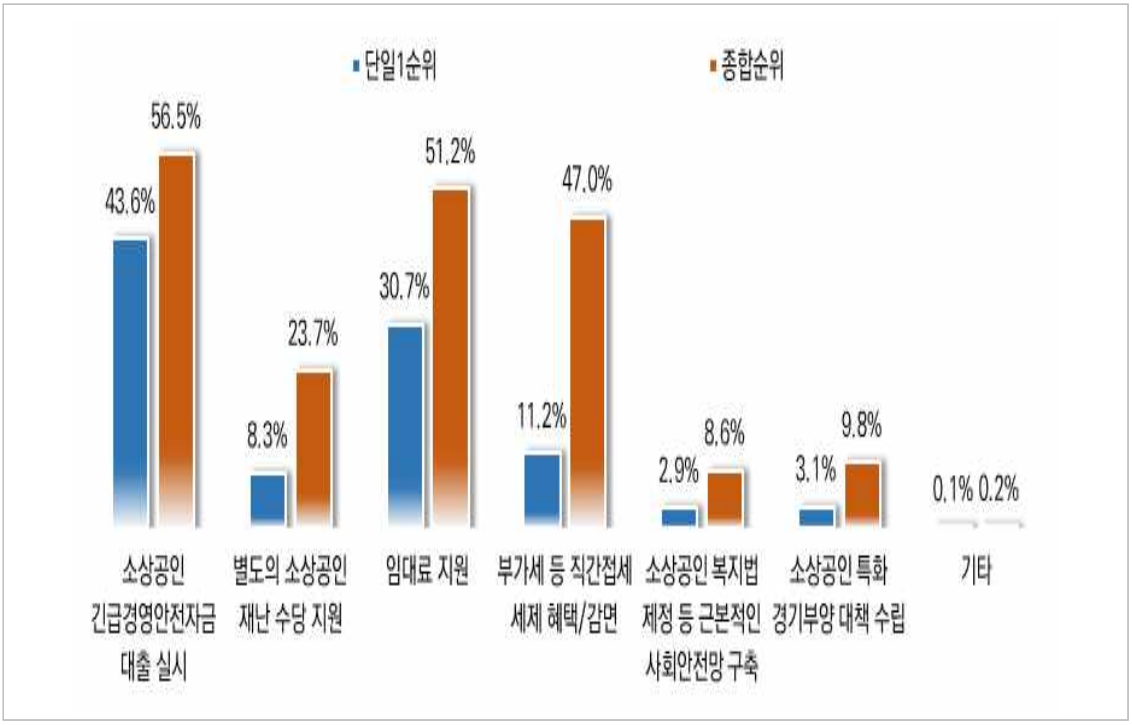

[그림 3-31]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우선 순위

❍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가서비스업은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라지역에서는 임대료 지원을, 경상지역에서는 직·간접세 세제 혜택/감면을, 충청지역에서는 소상공인 특화 경기 부양 대책 수립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26>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우선순위_1+2순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긴급 경영 안전 자금 대출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	임대료 지원	직간접세 세제 혜택/감면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특화 경기 부양 대책 수립	기타
전체		1,018	56.5	23.7	51.2	47.0	8.6	9.8	0.2
업종	도소매업	392	59.2	22.7	45.7	48.5	10.2	8.9	0.5
	숙박음식점업	270	58.9	20.0	48.9	50.7	8.9	11.1	0.0
	수리기타서비스업	160	53.1	20.0	59.4	42.5	9.4	12.5	0.0
	교육서비스업	103	54.4	28.2	52.4	50.5	2.9	9.7	0.0
	여가서비스업	93	46.2	39.8	65.6	33.3	6.5	5.4	0.0
지역	서울지역	247	47.4	30.0	60.3	35.6	13.0	5.3	0.0
	경인지역	181	60.2	23.8	50.8	42.5	11.0	8.8	0.6
	충청지역	90	57.8	38.9	37.8	27.8	6.7	27.8	0.0
	전라지역	121	43.0	38.8	68.6	32.2	3.3	13.2	0.8
	경상지역	279	64.5	6.1	38.7	76.3	6.1	7.9	0.0
	강원/제주	100	65.0	25.0	55.0	36.0	9.0	8.0	0.0

3. 시사점과 대응방향

3.1 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정책 수립[26)]

❍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1차 및 2차에 걸쳐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보증지원, 세액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 이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

❍ 따라서 향후 소상공인들의 지원방향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혜택과 정책 인지 및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 시행할 필요

-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차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2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에 대한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 이동통신비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7>2차 재난지원정책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

측면	내용	설명	주요 정책
1사분면	인지도 ↓, 도움정도 ↑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측면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2사분면	인지도 ↑, 도움정도 ↑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측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3사분면	인지도 ↓, 도움정도 ↓	지원사업을 재구성,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수정, 변경 필요 측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지원
4사분면	인지도 ↑, 도움정도 ↓	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	이동통신비 지원

26) 소상공인연합회 2020 최종보고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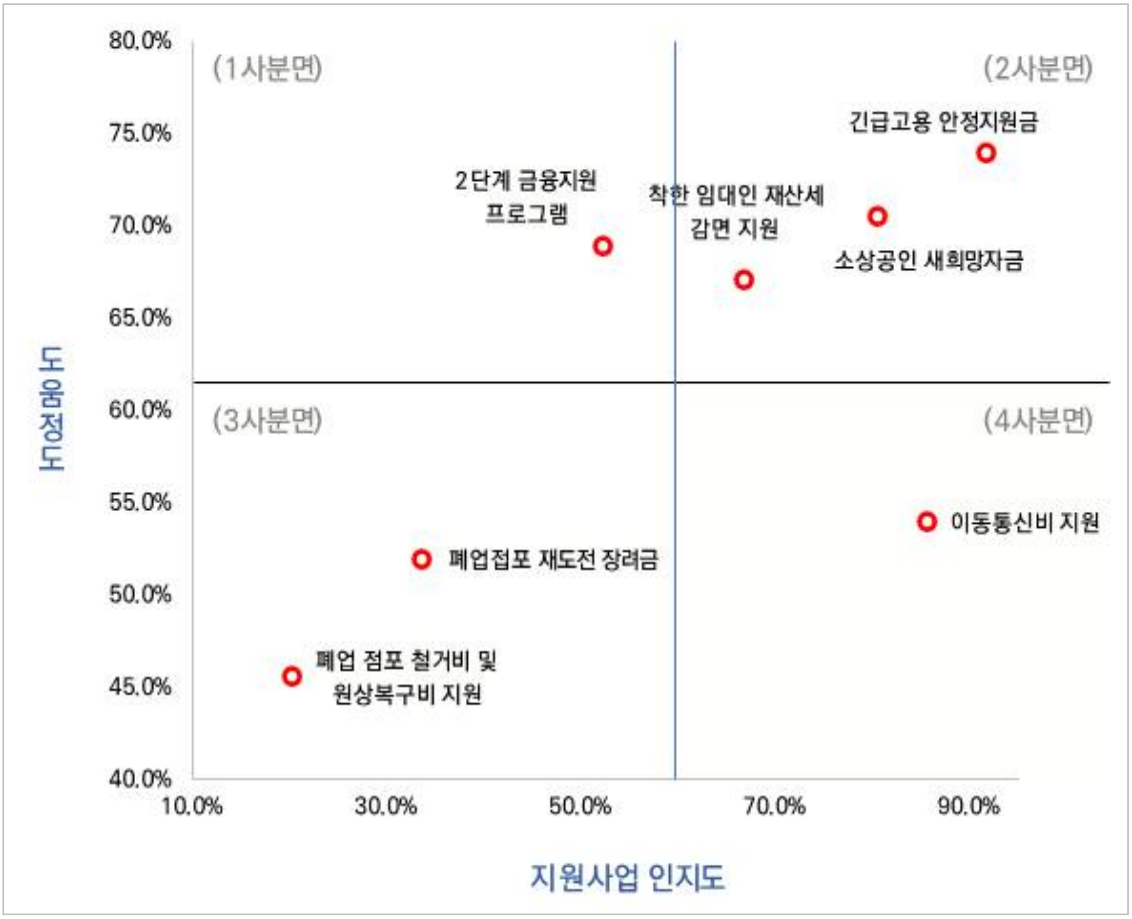

[그림3-32]2차 재난지원정책 Positioning Map 분석 결과

❍ 소상공인들 대상 지원의 확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요구됨

- 현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53.5%)이 충분하다는 인식(9.2%)보다 크게 높음

- 이는 일정 부분 지원사업 수나 금액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사결과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사업 수는 평균 1.3개이며, 지원금액은 152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음

(단위: 만 원)

[그림3-33]소상공인재난지원정책 지원금액

3.1 코로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본 요소

❍ 폐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 그 결과, 수도권 지역, 매출액 감소 폭이 클수록, 우울지수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소상공인의 기본 특성, 즉 설립년도, 대표자 성, 연령, 업종, 지역에 따른 폐업 강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이나 경인지역 등 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층에서 폐업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업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매출액, 영업시간, 종업원 수가 감소할수록 폐업의도는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를 보임

- 하지만 코로나19의 사업환경의 변화는 결국 매출액으로 대변되는 양상을 보여 다른 여러 변수들을 모두 투입했을 때는 매출액만이 폐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표3-28>폐업의도 관련 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β		β		β		β		β	
인구통계학적 변수										
설립연도	.095	**	.051		.048		.025		.021	
성	.049		.046		.044		.031		.031	
업종	.084	**	.062	*	.059	*	.052		.054	
지역	−.289	***	−.225	***	−.214	***	−.131	***	−.154	***
사업환경 변화										
매출액			−.200	***	−.224	***	−.172	***	−.175	***
영업시간			−.115	**	−.119	**	−.087	*	−.074	
영업일수			−.036		−.038		−.054		−.057	
종업원 수			−.087	**	−.093	**	−.054		−.051	
소상공인 지원정책										
금융지원					−.041		−.009		.005	
공과금 납부 유예/감면					.071		.082		.093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082	*	.069		.055	
고용유지/고용안정자금 지원					−.059		−.017		−.006	
심리 피해										
불안지수							.108	**	.078	
우울지수							.109	***	.163	***
정서적 스트레스										
상태불안									.021	
특성우울									.122	**
상태분노									.037	
특성분노									−.058	
특성불안									.001	
상태우울									.003	
설명력	R^2=.131		R^2=.215 △R^2=.084		R^2=.226 △R^2=.011		R^2=.273 △R^2=.047		R^2=.287 △R^2=.014	

❍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 즉 금융지원, 공과금 납부 유예 및 감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자금 지원이 폐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납부 유예나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은 폐업의도와 정(+)의 관계를 높이고 있었음

- 이러한 결과는 이와 같은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폐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경제적 대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피해는 폐업의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우울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치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임
- 우울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지속될 경우 일시적 상태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함
- 본 조사결과 특성우울이 심할수록 폐업의도도 증가하는 결과는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3.3 임대료 부담완화 정책 추진 필요

❍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진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필요

- 본 조사결과, 코로나19 지원사업의 주된 사용처로 임대료 납부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음
- 즉, 임대료 납부(47.3%), 인건비 지급(19.1%), 개인 생활자금(13.5%)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지원금액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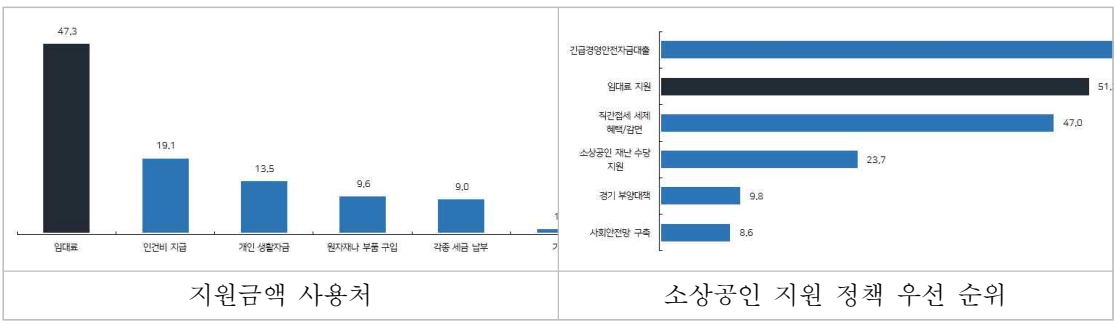

지원금액 사용처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우선 순위

[그림3-34]소상공인정책 지원금 사용처 및 지원 정책 우선 순위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위한 지원강화, 공적 영역의 직접적 인하, 지자체별 인하 지원방안 등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 있음

❍ 임대료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 완화를 실시한 임대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세제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임대료 인하 임대인('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 추진
- 세제나 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 마련

❍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

- 우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 연장
-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 유도
- 공공기관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연체료 경감을 포함하여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필요

-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 행안부가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

❍ 세부 지원정책이 수립되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추진도 요구됨

- 관련 법령 개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고시 개정,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도 신속히 추진
-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즉각 시행
-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 유도

❍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 강화

-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용 등을 상세히 홍보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 마련
-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여 전 지역 확산 유도

3.4 심리회복 지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 필요

❍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의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함
- 실제로 불안 정도나 우울 정도 또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정상 범위를 일정 부분 넘어서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감염병으로 인해 사람을 대면하거나 일상을 잃어버리고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며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소상공인들의 지원정책의 하나로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정부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을 목적으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재난 피해자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목적으로 함

- 재난 경험자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기적절한 치료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3-29>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

	구분	정의
1차	재난 피해자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사람
2차	재난 피해자와의 친구, 가족, 동료 등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지인
3차	재난 지원인력	재난 상황에 참여했던 재난업무종사자들로 구조 및 복구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관, 응급대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성직자 등
4차	지역사회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
5차	전국민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

자료: 국가트라우마센터(https://nct.go.kr/distMental/understand/understand01.do)

❍ 소상공인들의 정신건강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업종, 집단, 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은 지역, 연령대, 직업군 등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함
- 일반적으로 불안 및 우울 현상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상공인들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는 아님

❍ 특정 지역 및 집단을 비롯하여, 격리대상자, 의료인, 유가족 등 대상자별 조사와 연구 필요

-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심리정신 피해를 이해하기 위한 연령대, 세대별, 지역별, 대상자별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자원의 배분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들의 심리정신적 상태와 고통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즉,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감염병 재난을 일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정신건강은 안녕할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국민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소상공인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심리백신 프로그램 확장 필요

- 트라우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회복력은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대상자별 심리백신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책도 경제적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대응 심리 지원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적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예방적 관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재난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영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 직면 시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실제로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의 공동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경우 불안, 우울 등 각종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이므로 경제적,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을 통한 치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3.5 시·도별 특성화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확대 경향

○ 서울특별시는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스타트업 지원센터, 소공인지원센터(5곳)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는 시장상권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11곳)를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센터, 소공인센터(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비수도권지역인 대구광역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3곳)을 각각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부산광역시는 소상공인희망센터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부산지식산업센터, 메디컬ICT융합센터, 소공인센터(3곳)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컨설팅 센터, 소공인센터(1곳)를 두고 있음

○ 경북, 경남의 경우는 경제진흥원 운영 외 경남의 경우 창업산업진흥원, 소공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는 충청북소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201. 7월 14일 개소 운영을 시작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진흥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소공인지원센터(1곳)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제주도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경제통상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도 강원경제진흥원을 두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영월군이 산업진흥원, 정선군이 상권활성화재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 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해당지역 소규모 제조업을 위한 소공인 지원 기관으로 소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서울 5, 경기도 11, 대구, 대전 부산 각각 3, 충남북 2, 경남북 1 센터를 운영) 강원도는 현재 한곳도 소공인센터 운영을 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됨

❍ 대구광역시의 로봇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의 신발산업진흥센터, ICT융합지원센터, 소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국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 지자체들이 해당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별도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지원센터,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등)

-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가 도청, 강릉시, 속초시,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재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 금융 피해뿐 만 아니라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강원 도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 그 외에도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기업은행 2층) 삼성미소금융재단(원주), SK미소금융재단(동해, 강릉), 현대차미소금융재단(속초) 등에 위치, 소상공인 및 일반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광역지자체 산하 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 산업통상진흥원 또는 산업경제진흥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 소상공인지원 지역센터는 5곳(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센터)이 운영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직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지역이 넓고 인구수가 적어 인구밀집도가 낮으므로 센터 등 지원기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 및 지방의 지원기관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원기관 확대가 요구됨

<표3-30> 전국 광역시.도 운영 소상공인센터 및 소공인 센터 현황

지역별	소상공인센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비고
서울광역시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5개(의류봉제, 귀금속 등)	5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개	2개	
대구광역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개	3개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3개	4개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3개	2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창업지원컨설팅센터	1개	3개	
경기도	경기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1개	13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5개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1개	5개	
충청북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기업진흥원	1개	5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1개	5개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경제진흥원	1개	4개	
전라남도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경제진흥원	1개	5개	
제주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2개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	-	5개	

○ 강원도의 경우, 10인 이하 규모의 제조업 집적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소공인센터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진흥원의 기능 또한 18개 시.군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밀착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 강원지역 5곳(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기능 및 역할도 현장지원 업무에서 현장관리 업무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일선에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상담, 현장지도, 상권조사, 사업타당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교육 등 소상공인 밀착지원 기능을 하는 중간 역할의 지원 센터가 요구 됨

○ 지자체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 밀착지원 업무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관리업무가 상호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제4장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1. 기본방향
2. 코로나19상황 단기프로그램운영
3. 지역맞춤형 리빙랩 운영방안
4. 강원도 리빙랩 지역맞춤형 실용화 방안

1. 기본 방향

1.1 정부 소상공인 정책변화와 강원도 지원조직 기능 강화필요

- ❍ 일자리 사업은 국가사무로 분류되고 있어 중소기업벤처부는 근본적으로 현장 역량이 약한 편임
- ❍ 분권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분류하여 이양대상이기도 했었음
- ❍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등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 그렇지만 현장에 대한 지원 등 측면에서 자치단체와 협력없이 현장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처럼 대도시가 없고 백두대간, 폐광지역, 접경지역, 영동지역 등 지역특성이 다양한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업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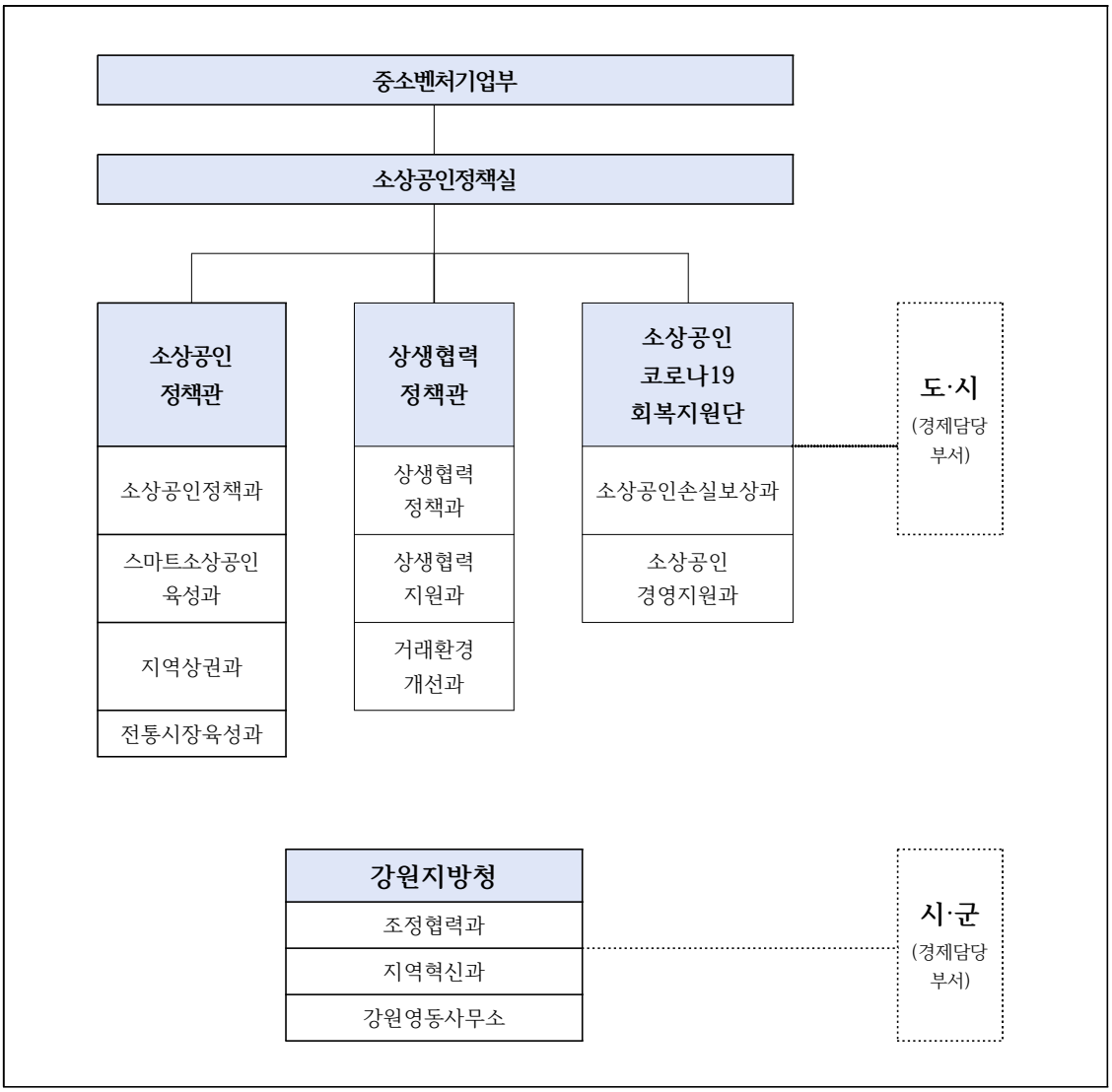

[그림4-1]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업무 조직도

[중소벤처기업부정원 : 1,393명 (소상공인정책실 93명)]

- ❍ 현재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서 전국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 1,393명중 9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소상공인정책관내 4개과(소상공인정책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육성과) 상생협력정책관내 3개과(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거래환경개선과), 소상공인 코로나 19회복지원단내 2개과(소상공인손실보상과,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이 운영되고 있음
- ❍ 중소기업벤처부 강원지방청이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형태임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업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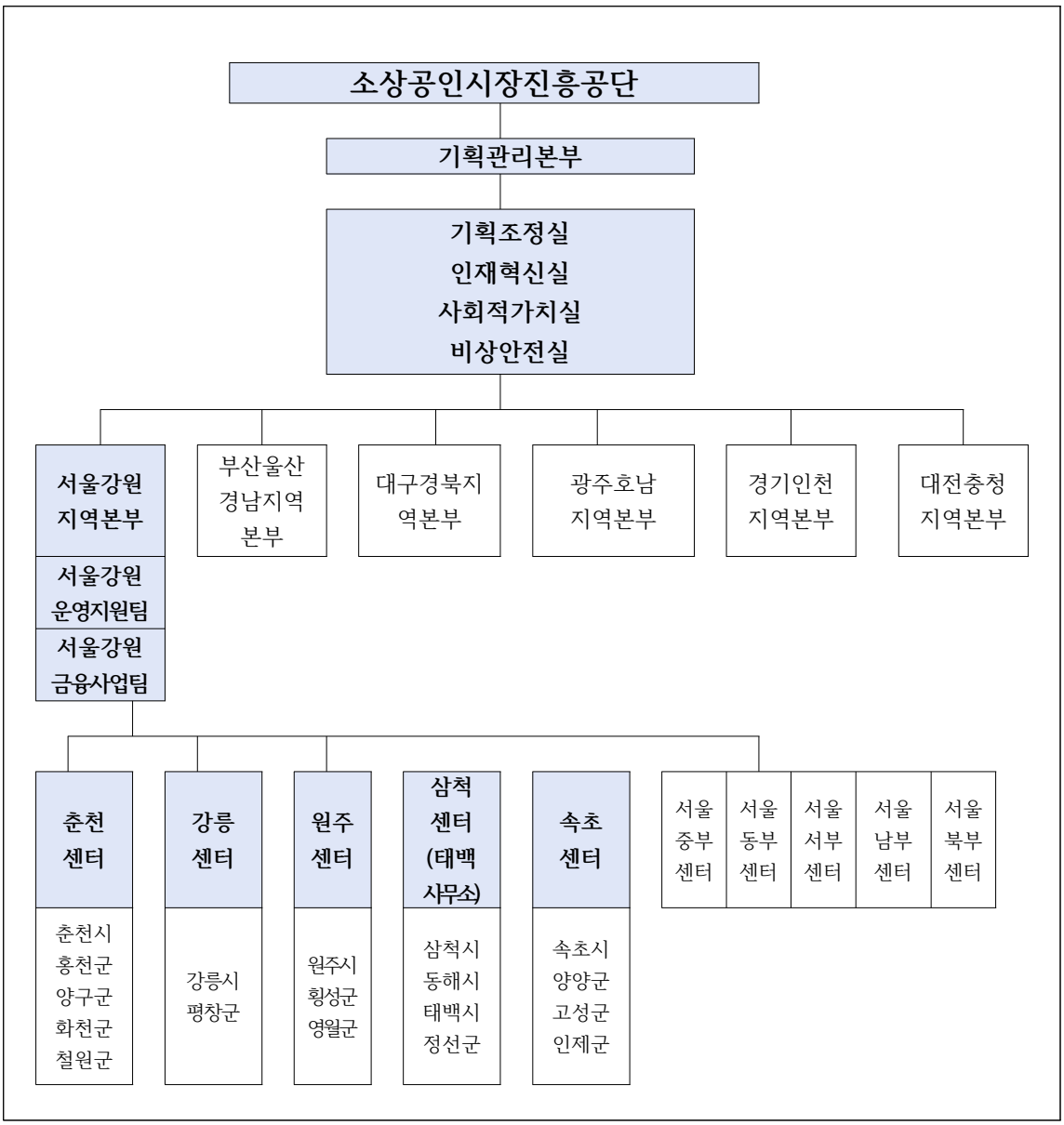

[그림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업무 조직도

❍ 소상공인 현장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내 강원도는 서울강원지역본부 내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각 센터별로 춘천은 춘천, 홍천, 양구, 화천, 철원 등 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어 실세 현장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도 관할센터) 업무 주요내용

❍ 춘천센터 (센터장 1명 외 4명)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교육, 전통시장, 제로페이, 불공정, 온누리상품권, 정책자금, 센터운영, 협동조합,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재기지원(부), 협업활성화, 직접대출 평가 및 심사, 리스크관리업무

❍ 강릉센터 (센터장 1명 외 5명)

: 직접대출, 리스크, 백년소공인, 사회공헌활동, 협동조합지원, 전통시장지원, 백년가게, 정책자금,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자금,보안,위험성,안전점검,소상공인 경영교육, 역량강화, 나들가게, 1인 고용보험료, 지개지원

❍ 원주센터 (센터장 1명 외 6명)

: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협동조합, 전통시장, 폐업지원, 전통시장지원사업, 백년가게, 정책자금, 컨설팅, 협업 활성화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조사, 성과관리, 경영교육, 사회공헌, 백년소공인, 예산·자산·기록물 관리, 희망리턴패키지, 스마트슈퍼,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일반 보안관리, 1인 고용보험료,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직접대출 접수,심사,약정,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

❍ 삼척센터 (센터장 1명 외 4명)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컨설팅, 백년가게, 1인고용보험료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전통시장, 제로페이, 대리대출, 직접대출(부), 희망리턴패키지(부), 태백출장소 업무. 경영교육. 재창업교육. 문서관리. 회계. 사회공헌

❍ 속초센터 (센터장 1명 외 4명)

: 안전지킴이,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자금(직접대출,대리대출), 협동조합, 전통시장, 불공정피해상담, 백년가게, 제로페이, 1인고용보험료,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컨설팅, 경영교육,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경영개선교육, 나들가게, 소상공인 역량강화,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전통시장지원(부), 경영교육(부), 사회공헌활동(부), 온라인 화상회의실 관리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업무 주요내용

○ ‘스마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독립된 정책영역 구축

○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

<표4-1>중소기업벤처기업부 디지털화 위기극복 업무

구분	내용
소상공인 디지털화	▪ 스마트상점·공방·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기반 구축[27)] ▪ 스마트슈퍼 1호점 : 일평균 매출 32.6%, 심야 매출(21시~07시) 53.1% 증가
소상공인 위기극복 대응	▪ 범부처 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개시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 ▪ 긴급대출 절차 간소화(4주에서 3일) 등 적극행정 구현
소비촉진 통한 자생력 제고	▪ 4조원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 - ‘대한민국 동행세일’(20.6월) - ‘크리스마스마켓’(‘19,‘20.12월)

27) ‘20.9’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내용

○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을 비전으로함

○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지원체계 마련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안정화 시스템 확충

<표4-2>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안정화 시스템 업무

구분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소상공인의 매출급감 등 긴급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금 4.1조원 신속지급
임차료 특별융자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저금리(1.9%) 융자 1조원 ▪ 집합제한 업종 23%대 융자 3조원 등 총 4조원 공급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 자발적 임대료 인한 세제지원 강화(50%→70%) ▪ 정책금융 융자 지원 *(현행) 부동산업은 지원대상 제외 →(개선) 착한임대인은 한시적으로 포함

○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한 피해 지원 적극 검토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적극 검토[28)]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지원

<표4-3>소상공인 안정망 확충,취업·재창업 지원

구분	내용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 폐업·재기단계 세무·법률 자문('21년 4천건)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폐업부담 경감
취업·재창업 지원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확충 ▪ 재창업자 사회화자금도 신설('21년 1,200명, 최대 1천만원) ▪ 예시) LH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등

○ 소상공인의 일터(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 추진

<표4-4>소상공인상권회복프로젝트 추진 주요내용

구분	내용
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화	▪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스마트상점)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본격확산('21년 2만개) -최신스마트기술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21년 1곳) ▪ (스마트슈퍼)

28)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 추진('21,상)

	-'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체계 확립 및 확산('21년 800개) ▪ (디지털전통시장)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 도입, 무선결제, VR지도 구축 등 지원('21년 100곳) ▪ (디지털상권르네상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복합 체험판매 라운지를 패키지로 지원 ('21년 1곳,'22년 2곳 선정)
내수 촉진 기반 확충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5→3조원, 본예산 기준) ▪ 「지역상권법」제정 ▪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소비촉진	▪ 동행세일,크리스마스마켓에 문화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대표 소비축제로 확장 *코로나19상황 등 고려, 별도계획 수립
구독경제 접목	▪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 후 정기 배송 (가칭)'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방안'마련('21년 3월)

1.2 지원 생태계 조성으로서 정부-지자체협력,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의 개념 변화와 특성

❍ 거버넌스(governance)의 사전적 의미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임

❍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며, 주로 정부(government)라는 뜻에 가깝게 사용되었음

❍ 1980~90년대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짐

❍ 정부 주도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한계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요구 해소를 위해 거버넌스는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범위가 확장됨

❍ 2000년대까지 거버넌스는 외연적으로 확정되었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버넌스는 참여의 수준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임

❍ 중앙 단위로 집중된 거버넌스가 지방 단위로 분산되었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와 논의 대상도 세분화됨

<표4-5> 거버넌스 개념의 변화

구분	거버넌스 개념
1970년대	▪ 정부와 같은 의미로 거버넌스를 이해 ▪ 국가 수준에서의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 ▪ 경제적 사회적 발전 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
1980년대	▪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증대 ▪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
1990년대	▪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협의형성 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 강조 ▪ NGO와 CBO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의 개발 필요성 강조
2000년대	▪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로 주목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강조
현재	▪ 중앙 거버넌스에서 지방 거버넌스(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로 개념 확장 ▪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참여방식

□ 캐나다 퀘벡 거버넌스 사례

❍ 상티에-퀘벡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1980년 세계적 자본 불황으로 퀘백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음

❍ 퀘벡은 연방재정적자로 인해 정부주도 발전전략의 한계에 부딪침

❍ 지역소상공인의 사회복지 지출도 줄어들고 기업들이 파산하며, 실업률을 치솟았음

❍ 1996년 집권한 부샤르 주 정부가 재정위기와 실업극복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 기구로 개최한 '고용과 경제에 관한 정상회의'를 1999년 상설기구로 전환하였으며,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은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상티에를 출범시킴

□ 퀘벡 주의 공동구축 정책

❍ 퀘벡 주는 자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보다 수평적인 파트너쉽 관계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을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조직드링 파트너 형태로 공동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공동의 목표를 수평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협력 참여 방식임을 알 수 있음

❍ Mendell은 퀘벡의 안정적인 파트너쉽 거버넌스의 정착의 조건으로서 통합적 혁신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 샹티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네트워크로 구성됨

-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보건, 돌봄, 교육, 문화 등
- 노조를 비롯해 정치조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사회적 경제 운동 조직
-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조직

❍ 이들 세 영역의 조직들은 각기 자기 영역에서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네트워크화됨

❍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정책들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함

❍ 퀘백 내 사회적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이들 간이 연대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금융기반 조성, 인재육성 및 훈련, 일자리 창출등과 관련해서 가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 출범시킴

❍ 샹티에는 복잡한 네트워크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정책 형성

❍ 다양한 인프라조직들이 샹티에를 지원하고 다시 샹티에는 이들을 활용하고 조정하여 지역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네트워크의 최종 조종자 역할을 함

❍ 따라서 샹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조직일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정책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기능을 수행함

1.3 소상공인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자치분권기능강화

□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은 자치분권차원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

❍ 지역개발에서도 중앙의 역할보다 지방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처럼 일자리 경제정책이 국가사무이지만 그 현실적 지원이 효율성을 갖게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거버넌스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임

❍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연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해 나갈 주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은 불가핌함

❍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새로운 혁신방안이 만들어져야 함

❍ 특히 소상공인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많고 홀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협력이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 동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과 개별 창업 혁신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함

❍ 지역사회의 여건을 연속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전략방향을 현장중심으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은 중앙보다 지방이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어 지방의 기능이 함께 강화되어야 함

□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정책 확대

○ 소상공인정책에서 정부의 의지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소상공인의 참여와 관심임

○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참여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한계와 소비자의 참여도 함께 필요함

○ 소상공인에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행정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책임과 권한을 나누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정책구성원들 간의 협력관계 형성이 강조되며 추진됨

1.4 소상공인거버넌스 운영주체, 소상공인지원 중간지원조직 설립필요

□ 강원도 소상공인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실태

○ 강원도의 소상공인관련 중간지원조직 현실

-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 전통시장 지원업무
- 강원도 경제진흥원 : 자금, 마케팅, 지역발전, 지식재산, 인적자원개발, 관광융복합, 전통시장지원, E-비즈니스지원센터, GTI박람회 추진센터

○ 강원도내 시군 소상공인관련 중간지원조직 현 운영 실태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원주시) : 기업지원, 마케팅지원
- 영월 산업진흥원(영월군) : 창업지원, 센터입주 및 장비대여, 창업보육 활성지원, 기업일자리 창출, 향토기업육성, 미래성장동력 발굴
-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정선군) : 특화지원,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기능 검토

○ 강원도와 시군별 소상공인관련 중간지원조직 통합운영으로 재편 필요

-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고 정부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아직까지 소상공인 전담 센터가 없음
- 강원도내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그 수가 적은 군 농촌단위는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로 소상공인 지원업무중 통합적 정보지원이 필요한 총괄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계획수입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영혁신지원과를 두어 신규창업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등이 혁신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그리고 공동마케팅과를 두어 골목상권, 동네 상권에 대한 마케팅과 브랜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시지역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방향과 설립시 재정지원을 해주는 등의 도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

□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업 중점내용

❍ 소상공인 정책 발굴 및 전략사업 개발

-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업지원체계 강화
- 강원도 소상공인 사업 홍보 및 DB구축·관리
- 동네, 마을의 긍정적 변화, 소상공인 복원 등의 정책적 효과 극대화

❍ 소상공인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육훈련 및 학습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핵심 주체로 성장 지원
- 소상공인 활동가 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운영 계획수립 지원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밀착 활동지원

❍ 연대와 협력체계구축 및 역량강화

- 강원도 소상공인 활동 확산과 협력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 시·군 단위 당사자와 수요 중심의 교육 및 실천과정 운영
- 소상공인 현장지원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 강원도 소상공인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마련

❍ 유형별 사업 운영 및 지원체계 확립

- 현장 수요에 입각한 소상공인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확장
- 소상공인과 함께 고민하고 기획·실천하는 강원도형 소상공인 주체형성
- 동네와 골목 소상공인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읍·면·동 협력체계 구축
- 질적 성장을 통한 소상공인 중심의 경영지원체계구축
- 동네 내부자원발굴 골목축제 지원으로 문화 형성과 개별소상공인 성장 기여

❍ 소상공인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사업 운영

-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 찾아가는 동네 골목 소상공인 계획 사업

- 동네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계획단에 참여하여 의제 발굴, 공적 의사 결정 참여, 민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네 골목을 중심으로 교육 연계사업 상생 지원

- 소상공인들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네 골목 중심의 소상공인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상생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 소상공인 관련 정보와 경영 전반/운영 상담

  : 정부사업관련 정보 일정, 내용, 신청서 작성 등

  : 정부지원사업 내용 실행계획서 작성, 진행 중 어려움, 회계 문의 등

- 찾아가는 컨설팅

  : 해당 소상공인의 독자적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사업의 단기적 성과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방향/분야별 컨설팅

: 소상공인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동행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유형에 맞는 동네 골목별 전문 컨설턴트 동행 컨설팅 지원

(ex_텃밭, 축제, 벽화, 조경,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공간조성, 아파트소상공인, 기타)

<4-6>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요약)

(가) 총괄기회	(가-1)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계획 총괄지원
	(가-2)	강원도 시·군 소상공인 맞춤 지원
	(가-3)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가-4)	컨설턴트 워크숍
	(가-5)	도·시·군 공무원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워크숍
	(가-6)	찾아가는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사업지원
	(가-7)	소상공인 현장지원 전문가 양성(전문인력 육성)

(나) 경영혁신 지원	(나-1)	사업 관련 자료집 기획·제작
	(나-2)	소상공인 사업 실태조사 및 DB구축
	(나-3)	소상공인 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나-4)	매년 소상공인 골목별 동네별 우수사례집 발간
	(나-5)	우수소상공인 마을 동네 혁신운영 사업 발표회
	(나-6)	소상공인 정책 발굴 및 전략사업 개발
	(나-7)	시·군 소상공인 중간지원조직 지원·확대

(다) 교육홍보	(다-1)	소상공인 활동가 아카데미 운영
	(다-2)	컨설턴트 양성 및 교육 운영
	(다-3)	홈페이지 DB구축, 뉴스레터 제작
	(다-4)	권역별 순회(사전)교육 및 사업설명회
	(다-5)	강원도 시·군 소상공인 맞춤 교육 및 간담회
	(다-6)	소상공인 지역별 현장교육
	(다-7)	포럼·워크숍·발표회 운영
	(다-8)	소상공인 지원생태계 구축 지원

(라) 운영지원	(라-1)	소상공인 지원센터 행정업무(예산, 회계 등)
	(라-2)	사업 기초자료 전수 조사
	(라-3)	사업 관련 자원 및 자료관리

2. 코로나19상황 단기 프로그램 운영

2.1 코로나19 심리상담코너 운영

-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2020년 10월 기준 5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건수는 51만건으로, 그중 확진자 관련 심리상담건수는 2만2,031건, 전체의 4.3%로 확진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불안해 하는 것으로 확인됨
- ❍ 최근 5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에 따르면, 불안장애의 상담건수는 올해 상반기 18,931건으로 유일하게 불안장애만 2020년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2019년에 비해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이후 코로나블루(우울)가 심각했음
- ❍ 정부는 8월 6일 코로나19 우울감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마성의 토닥토닥' 앱을 고도화하고 '마음프로그램' 앱을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마성의 토닥토닥'앱은 현재 누적다운로드가 1만7,268회로 지난 6월말에 비해 불과 2,663회만 추가됐고, '마음프로그램' 앱은 출시한지 일주일이 넘어섰음에도 누적다운로드수가 50회에 불과하는 등 코로나블루와 같이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홍보)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 ❍ 정부의 노력만으로 코로나 블루의 해결책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강원도 차원에서 전화상담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경영상담 통합 TF 운영과 사회혁신타운연계

- ❍ 소상공인지원사업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자금지원형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원도에서는 신규창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창업준비 지원을 위한 대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 특히 2023년 원주 우산동에 완공될 사회혁신타운내 소상공인관련 창업 등 사회혁신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창업·판로·R&D·네트워킹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계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년간 총 280억원이 투입됨
- ❍ 이번에 선정된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춰 강원 사회적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기회로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이 연계되도록 해야함
- ❍ 특히 이 기관이 완공되면 강원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 특화형 통합돌봄서비스(G-care)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킬 계획임
- ❍ 강원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농식품 상품·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2.3 폐업 소상공인 전직 훈련 프로그램 운영

- ❍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함(2021년도 6월 11일)
- ❍ 노사발전재단은 2021년 6월 10일 오후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폴리텍대 등과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함
- ❍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소상공인의 생애경력 설계부터 기술훈련 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급,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음

- ❍ 재단은 우선 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설정,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직업체험 등 실습을 지원한다. 재단 교육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직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음
- ❍ 공단과 한국폴리텍대는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을 운영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을 한 뒤 해당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제도을 운영함
- ❍ 이러한 사업이 수도권중심으로 운영되게 되면 강원도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내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지역맞춤형 리빙랩 운영방향

○ '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정책이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정책과 정보의 공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처방을 통한 해결책 제시 등이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져야 함

○ 단순히 몇몇 전문가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더 많은 전문가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대안과 교육, 처방이 이루어져야 함

○ 강원도는 특히 소상공인 창업비율이 낮고 경쟁력이 낮은 편이라 지역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으로 볼 때 수준 높은 상품개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여 이는 혁신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음

3.1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리빙랩 개념과 적용방향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대표하는 방법론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

○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및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

[그림4-3] 사회혁신주도 리빙랩 주요기능과 개념

3.2 강원지역 리빙랩 플랫폼 구축과 사업 추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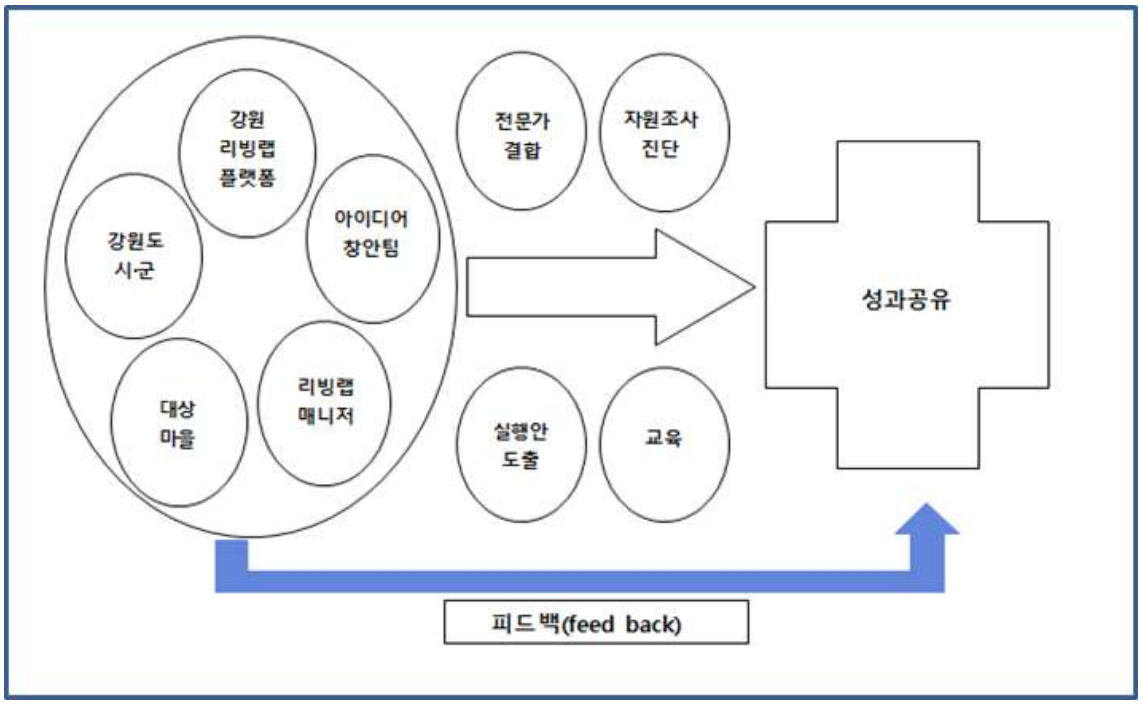

[그림4-4]이해관계자 구성 및 리빙랩 사업추진 흐름도

3.3 강원지역 리빙랩 사업 구상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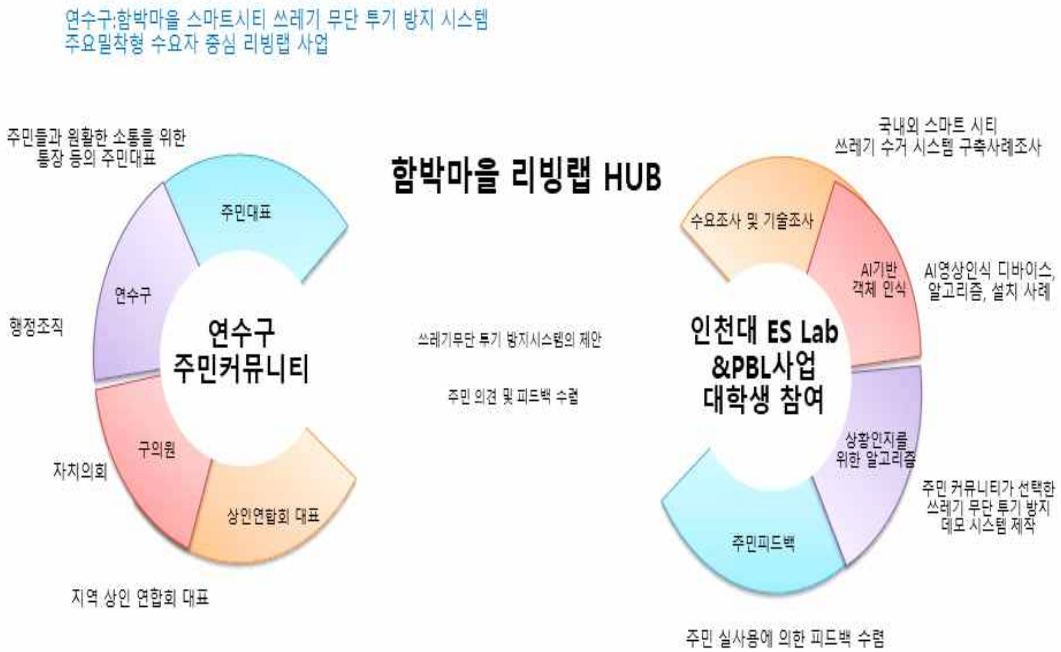

[그림4-5]시민참여 인천 스마트 도시 리빙랩 사업

3.4 강원지역 리빙랩 효율적 전략

❍ 단기간 진행되는 일회성, 단편적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리빙랩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지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혁신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 순환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리빙랩을 기초로 한 시민/민간/공공 파트너십 체계는 도시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적 고도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4. 강원도 리빙랩 지역맞춤형 실용화 방안

4.1 리빙랩 모델 도입에 의한 ICT 기반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방향

□ 소상공인 리빙랩(Living Lab) 모델 개념

❍ 리빙랩은 공공기관의 정책, R&D, 지역개발, 산업혁신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나 사용자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공유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중심·현장중심의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념

❍ 공급자 중심의 자원이나 설비의 투자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 실수요자의 문제 해결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방형 사업추진 모델.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기술 개발 사업 등과 같은 특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연구개발조직, 지자체, 지역 시민사회, 기업 등이 협력하는 개념

□ 사회 변화와 ICT 적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5G 등 최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됨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소비로의 패턴이 가속화되어, 이러한 ICT 기술의 활용이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지방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심화됨

❍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피해지원과 함께 '21년 9월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높이기로 함. 하지만 중소벤처연구원에서 '21년 6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 15.4%만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

으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소상공인도 29.7%에 지나지 않았음

□ **정부 사업에서의 리빙랩 모델 도입**

❍ 정부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확산방안 연구'는 통해 부처 간 협업, R&D 추진체제 혁신, 지역문제 해결 등에 있어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의 실질적 수혜자의 의견 반영과 현장 사전 적용을 위해 리빙랩 모델을 도입하여 현장 거주민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고 실생활과 연계를 고려하여 현장 적용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도록 함

❍ 지역마다 독특한 환경과 소비 특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ICT 기반 사업에서는 리빙랩 모델을 도입하여 ICT 기술 및 장비와 설비 구축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어야 함

❍ 소상공인들의 다수가 영세 소규모업체 운영자로 ICT 신기술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어 ICT 기반의 소상공인 사업 대한 수용성이 낮거나 관련 기기의 도입과 운용 등에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으며, 저학력 고령층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리빙랩 사업에서의 주요 문제점**

- 리빙랩이 정부 주도의 일회성 사업의 틀을 넘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지속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 정부 예산사업의 일환으로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사업 종료 후 축적된 자산, 네크워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망이 부족. 정부 예산 확보나 수익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
- 리빙랩 활동의 공통 비전과 각 사업의 연계가 부족.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 '공동창조',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시스템 전환과 전환실험' 등과 같은 리빙랩의 지향점과 비전에 대한 공유된 시각은 아직 부족
- 리빙랩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창조라는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의 틀에서 사업이 진행. 리빙랩 활동과 기존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은 미흡

□ **리빙랩 사업에서의 주요 문제 개선방안**

- ‘리빙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리빙랩의 지속성 확보. 공통의 비전을 형성과 리빙랩 관련 활동을 연계, 운영 경험의 축적과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된 네트워크 기반 확대
- 리빙랩 플랫폼의 영속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리빙랩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부구조 구축
- 리빙랩 운영 관련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와 시민사회, 최종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리빙랩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
- 리빙랩 활동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반 구축

❍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전환적 혁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빙랩(전환랩)을 운영
- 로컬차원의 개별적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리빙랩 확장

4.2 소상공인 리빙랩 도입을 위한 ICT 기반 소상공인

□ 리빙랩 모델 도입에 따른 ICT 기반 소상공인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인 소상공인들 간의 연결점으로써 리빙랩 개념을 도입하여 PPPP에 의한 연결점이 형성되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고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함

❍ ICT 기반 소상공인 사업에서의 ICT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므로 검증된 기술을 투입해야 함. 정부 주도의 사업에서 미래지향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여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나 연구 개발 단계인 기술을 사용하는 전시 행정적 접근은 피해야 함.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인 소상공인의 현장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고려해야 함

❍ 소상공인의 정보화 수준과 현장 맞춤형 디지털 전환사업 추진 필요

❍ 카톡과 같은 SNS 서비스나 줌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는 사업 수행 중 관계자들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ICT 기술임. 그러나 [표 1]의 사업내용에 언급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이용될 기술들은 아직은 보편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음.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의 도입과 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교육과 장비의 운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

❍ 고령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하는 유통환경 및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교육, 컨설팅 등 온라인 활용 역량 강화 및 온라인 쇼핑몰 진출 기반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함

□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현황과 시사점

❍ ICT 기반의 소상공인 사업을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리빙랩 도입에 의한 소상공인의 사업 전 과정에의 참여 시 성공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함

❍ 최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또는 디지털/스마트) 전환'이란 용어를 AI, IoT, AR, VR, Bigdata, Block-chain, 로봇, 무인결제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발굴, 경영, 서비스 등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대중화된 'ICT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 용어를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되, 정부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 '소상공인 디지털(또는 디지털/스마트) 전환'이란 용어를 사용·구분함

❍ 정부는 '17년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1.0'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성장·혁신 역량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

❍ '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향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및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진행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2021.06.14.)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

□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의 개념과 적용 범위

❍ 스마트(화)는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이 바탕이 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 관찰 : Sensing,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적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만드는 것

- 분석 :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넓고 깊은 통찰력을 얻는 것
- 개선 :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기술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운영 등에 적용하고 통제·관리하는 것

❍ 스마트화의 유형은 크게 디지털화, 지능화, 연결화로 구분됨

- 디지털화 : 현재의 생산·운영·영업방식에 ICT를 결합하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기, 센서와 장비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운영·영업에 적용하는 것
- 지능화 : 데이터의 수집·분석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최대한 능동적으로 생산·운영·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수행 환경을 구축하는 것
- 연결화 : 기술을 통한 제품과 공정의 연결, 서비스와 운영의 연결, 제품·서비스와 사람의 연결, 기업(소상공인)과 전·후방 산업과의 연결,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간 연결 등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는 것

❍ ‘디지털/스마트’ 개념 :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

- 공급자와의 거래활동 : 제조업, 도매업 등 공급자로부터 소상공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받는 것
- 고객과의 거래활동 :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도입, 신규 고객을 창출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의 제공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업환경을 구축하는 것
- 생산·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 :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체계 단순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생산성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것

❍ 적용 범위, 추진 방향 및 지원사업

- 디지털 전환의 범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구매활동 부문과 판매활동 부문에 대해 디지털화, 지능화, 연결화하는 것임. [그림 4-6]에 디지털/스마트화 적용 범위에 따른 사업 활동과 이를 위한 소요 기술들을 나타내었음

[그림 4-6]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적용범위

❍ 이러한 범주에서의 <표4-7>과 같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상권에 있어서의 디지털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디지털 교육과 상생문화 확산 등과 같은 디지털 생태계 조성,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간편결제 확산과 금융이나 법령, 인력 등의 지원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종사자를 위한 사업들과 예산 규모는 <표 4-8>과 같음

❍ 대부분 ITC 신기술의 현장 접목 사업이며, 경영난 지원사업이나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되고 있음

추진전략	세부과제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 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 소상인: 스마트상점 보급·확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 소공인: 스마트공방 보급·확산 ▪ 상권: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상생협력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디지털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간편결제 확산·보편화 ▪ 디지털 전환 지원 체계 강화 (금융, 법령, 조직 등)

<표4-7>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방안 추진 방향

사업명	개요	예산 (백만 원)	규모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 지원	50,000	5,000개사	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9,000	4,500건	소상공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금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AR·VR,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보급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지원	8,400	복합형 25곳 일반형 10곳	소공인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수작업 위주 소공인 작업 공정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	3,000	60개사	소공인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생산능률 향상 지원	4,500	900개사	소공인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전담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파견 지원	760	38곳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표 4-8>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시사점

❍ ‘17년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1.0’을 시작으로 ‘20년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ICT 기반의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703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디지털 현황 조사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 디지털 기술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율:15.4 %
-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소상공인 비율: 29.7%
-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 보통 이하(2.98점/5점)
  (이용 편의성 2.98, 습득 용이성 2.80)
- 정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 낮음(2.45점/5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은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낮아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이는 소상공인들의 대다수가 첨단 ICT 기술과의 접목이 어려운 업종이나 규모의 종사자이거나 ICT 기술을 교육받거나 습득한 연령층이 아닌 비교적 노년층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음

❍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된 영업 제한으로 경영난과 폐업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전환보다는 손실보상, 세제지원, 정책자금 대출이나 상황유예 등이 더욱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일 수 있음

❍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과 도출의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리빙랩 모델 도입)

□ 리빙랩 개념의 ICT 기반 사업 현황과 핀란드 사례와 시사점

- ❍ 핀란드의 Turku 지방의 리빙 랩(성지은외(2015))
- ❍ 2만여의 섬들로 이뤄진 Turku 제도 내의 산재해 있는 주민들은 인적 물적 교류와 역량 결집이 어려운 상태였음.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 모뎀(modem)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을 '94년 시작한 이후, 20'년 이후 WiMAX, 무선광대역망 등으로 확장하고, VoIP, IPTV, 화상회의 및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ICT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섬에 산재·거주하는 시민들의 역량 결집과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하게 됨.
- ❍ 초기에 모바일 직거래(Mobile Direct Sales)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농수산물 거래와 배송을 지원하여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전자민주주의 서비스(e-Democracy Tools)를 제공하여 지자체와 의회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지리적 난관을 극복하고 의사진행이 가능하게 됨.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해결, 도서지역 발전, 지역 커뮤니티 결성, ICT 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에 있어 성과를 나타냄(2000년대 우리나라의 '정보화 마을사업'과 유사).
- ❍ ICT 통신망 구축은 관련 설비의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모바일 직거래 서비스와 전자 민주주의 서비스 개발에는 주민, 이용자, 주민 커뮤니티, 지자체 지역 개발기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각종 설문, 아이디어 제안, 개발 프로토타입의 시험과 의견 피드백 등에 참여하고 성과 확산에도 기여

□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의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성지은외 2인(2020))

- ❍ 디지털성범죄방지, 소방훈련콘텐츠, 유해미디어 차단 등 공공·사회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5G, AI, VR/AR 등 핵심 ICT 기술개발과 지원을 목적으로 과기정통·행안·국방·복지부 등 관계부처 ICT 사회문제해결 R&D 정책협의회와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ICT 사회이슈발굴단'이 공동으로 수요발굴·기획 추진
- ❍ '18년 7월 ~ '22년 12월까지 631억 97백만원이 투입되는 43개 과제는 국민생활, 재난안전, 복지증진, 도시/환경 등 4가지 범주로 나뉘어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제 적용과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국민참여·실증형 R&D 평가·관리 체계가 도입되어 시연·실증을 거침

❍ 성과로는

- 사회문제 해결형 R&D 리빙랩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이슈 발굴과 핵심 모델의 창출·확산. 리빙랩 활동 관련 이슈: 리포트, 포럼 연2회 개최,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국내 사회혁신 조직들과의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한 리빙랩 네트워크 형성 촉진. 해외 국가와의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세미나 개최(네덜란드, 한-일 리빙랩연구교류회)

□ ICT 기반 지역 소상공인 사업 추진 사업 방향(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전략을 제안함. 즉, 디지털 인식이 부족하여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소상공인, 전환 인식은 있으나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

- 첫 번째는 Digitization(아날로그의 디지털화) 단계로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디지털화를 준비시키는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교육·컨설팅, 인식제고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 추진(<표 4-9>)

<표 4-9> 소상공인 Digitization 지원사업 예

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 디지털 매니저를 통한 컨설팅, 과밀업종 협단체 공동교육, 온라인 전용 교육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온라인쇼핑몰, O2O플랫폼, 구독경제 등 기존 플랫폼 입점 지원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 콘텐츠 전환	전문업체를 통한 제품/서비스 정보의 디지털화(시각화), 생산/운영 방식의 디지털 매뉴얼화, 고객/판매정보의 DB화 등 지원
점포경영 SW보급	'운영'이 아닌 '경영'을 위한 ERP/CRM/SCM 등 SW보급
소상공인 인식제고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인식/리터러시(literacy) 능력배양(교육)실시
고객 인식제고(홍보)	방송, YOUTUBE 등을 통한 정책홍보, 디지털 박람회 개최, 상권 및 전통시장의 스마트한 명칭변경 공모 및 캠페인 실시

- 두 번째는 Digitalization(디지털 Data 정보의 효과적 활용) 단계로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반을 갖추고자 하나, 스스로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은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활용능력을 고도화시키고,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환경에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온라인 판매·배송체계, 디지털 튜터링(tutoring) 등의 사업 추진(<표 4-10>)

<표 4-10> 소상공인 Digitalization 지원사업 예

사업	주요 내용
디지털 결제환경 조성	QR결제 등 다양한 결제 가능한 복합결제 단말기 보급 등 인프라 확대
스마트공방 표준모델	품질/생산성 향상(B2B), 생산자동화, 고객데이터 관리(B2C) 등
상권단위 온라인 판매/배송 체계 구축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모바일 앱을 통한 배송체계 구축 등
라이브커머스 활용촉진	가치삽시다 플래폼 등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방송송출 기능구축
디지털 튜터링	지역/상권별 디지털 튜터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에 서비스 제공되어, 점포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분야 진단, 전환 후 숙련을 위한 훈련
상권 내 디지털 청년 창업/협업 지원	상권 내 디지털 청년창업(빈점포): 상권 온라인홍보 및 쇼핑몰 운영, 소셜커머스/O2O, 협동조합(협업화) 등 지자체/상인회 위탁운영

- 세 번째는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단계로, 영업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적극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스스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영업방식을 촉진시키는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AR/VR 활용 D-Space 조성 등 사업을 추진(<표 4-11>)

<표 4-11> 소상공인 Digital Transformation 지원사업 예

사업	주요 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IoT, AR/VR, AI, 로봇 등 스마트상점/스마트슈퍼/스마트공방 확산
디지털 특화거리	스마트상점/슈퍼/공방을 집적시키고, CCTV/사이니지 설치 등
디지털 전환 지원자금	디지털화 자금, 스마트 장비자금, 스마트기술 이용기업 특례보증 등
업종 특화형 스마트 기기개발 및 보급	업종별 협단체와 스마트기술개발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보급형 스마트 모델 및 장비 개발, 소상공인에 저가 공급(정책자금 연계)
AR/VR 기술활용 D-SPACE조성	상권(시장)공간 전체를 AR기술로 덮고, 점포별 정보제공, 할인쿠폰, 스마트오더 등 서비스 실현, VR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방송홍보 등 *AR,Wifi 등 인프라 구축은 정부/지자체 매칭부담, 점포서비스는 민간자부담

❍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조직화·협업화 활용, 불공정 문제 발생에 대비한 보호장치 마련,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유도 및 역할부여 등 정책 인프라 구축 필요

제5장 결론

결론: 정책제안

□ **소상공인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

❍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서비스는 자금지원서비스와 교육지원서비스 및 컨설팅 지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정부 지원서비스가 매개효과까지는 아니지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김도이, 2021)

❍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매개효과까지 가져오려면 더 적극적인 지원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소상공인은 디지털기술의 확산으로 기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프라인방식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소상공인 연구 결과(신지민, 2021), 소상공인은 사업기간에 따른 차별적 지원책이 필요하고 디지털문해력(digital literacy)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부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설계하여 실행하여야 함

❍ 즉 소상공인의 학력, 사업체의 업종과 사업기간에 따라 디지털문해력 수준과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별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소상공인 대다수는 처음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경영성과보다는 창업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창업컨설팅, 디지털 문해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 소상공인 정책변화 적극대응**

❍ 정부의 소상공인관련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소상공인 생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행정필요

□ **자치단체 소상공인 적극행정추진 거버넌스 구축과 소상공인 재단설립**

❍ 민관학연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함

❍ 자분권차원에서 강원도내 일자리나 경제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가 관광재단, 일자리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대상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상권을 살리고 창업, 전직 등을 돕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재원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도 검토되어야 함

□ **소상공인업무 주관 중간지원조직 설립대응:**

❍ 소상공인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의 기능 확대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소상공인중심 현장중심 골목, 동네상권을 살리기 위한 신뢰기반 협력을 만들어 동네와 골목의 브랜드가 발전하도록 적극지원정책을 만들어가야 함

□ **소상공인 실시간 문제해결 리빙랩운영:**

❍ 리빙랩은 다양한 강원도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지혜가 만들어져야 함

□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 지원강화:**

❍ 강원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일과 소상공인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함

참고 문헌

[1]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

[3] 소상공인연합회, http://www.kfme.or.kr/home/homeIndex.do

[4] 호사카유지.(2020). 일본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고찰. 민족연구, 76(0), 62-94.

[5] 박성욱. (2020).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KIF금융분석 리포트, 2020(9), 1-34.

[6]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2020.09.).

[7]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0.11)

[8]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9] 김도이(2021),「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서비스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0] 김영순, 양인선, 이진우, 이연동. 2020. "소상공인 임대료 실태조사 및 부담 완화 대책".「중점정책연구 현안 연구」.

[11] 신지민(2021),「국내소상공인업체의 사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부산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2] 중소벤처기업부(2020),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2020. 7. 20.

[13]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 전략', 2021, 7, 14.

[14] 성지은 외 2인(2020.11.30),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확산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11. 30

[15] 성지은·박인용(2015),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로서 ICT 리빙랩 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5.

[16]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2020)

[17] *중앙사고수습본부 http://ncov.mohw.go.kr/-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8] 한겨레, 2021.10.05.일자.